

제21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4. 9. 15(월)】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포함)

#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목 차

<b>I. 안건현황</b> .....	<b>5</b>
가. 회계구분 .....	5
나. 심사경과 .....	5
<b>II. 결산 규모 및 개요</b> .....	<b>6</b>
<b>III. 전문위원 검토보고</b> .....	<b>9</b>
가. 세입결산 .....	9
1. 세입결산 총괄 .....	9
2. 일반회계 세입결산 .....	11
가) 지방세 세입 .....	11
1) 지방세 총괄 .....	11
2) 세목별 .....	13
3) 과오납반환액 .....	14
4) 미수납액 .....	14
5) 결손처분 .....	16
6) 다음연도 이월 .....	19
나) 세외수입 .....	21
다) 지방교부세 .....	23
라) 국고보조금 .....	27
마) 지방채 .....	29
3. 특별회계 세입결산 .....	31
가) 세입총괄 .....	31
나) 미수납액 .....	32
다) 세입 다음연도 이월 사유 .....	34

<b>나. 세출결산</b> .....	<b>35</b>
1. 세출결산 총괄 .....	35
2.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	38
3. 회계별 적자 결산 .....	40
4. 자금없는 이월액 .....	43
5. 다음연도이월 및 불용액 .....	45
가) 일반회계 .....	45
나) 특별회계 .....	49
6. 예산 이용·전용·이체 .....	54
가) 예산 이용 .....	54
나) 예산 전용 .....	56
다) 예산 이체 .....	61
7. 계속비 집행 .....	62
8. 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 .....	69
가) 명시이월 .....	70
나) 사고이월 .....	76
다) 계속비이월 .....	81
9. 예비비 지출 .....	82
<b>다. 기금결산</b> .....	<b>87</b>
1. 기금결산 총괄 .....	87
2. 조성 규모 현황 .....	90
3. 기금별 운용 현황 .....	92
가) 통합관리기금 .....	92
나) 남북교류협력기금 .....	93

다) 시립대학발전기금 .....	94
라) 재난관리기금 .....	95
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	96
바) 농어촌진흥기금 .....	97
사) 중소기업육성기금 .....	98
아) 에너지사업기금 .....	99
자) 식품진흥기금 .....	100
차) 여성발전기금 .....	101
카) 사회복지기금 .....	102
타) 지방채상환기금 .....	103
파) 재해구호기금 .....	104
하) 지방세발전기금 .....	105
<b>라. 채권·채무 결산 .....</b>	<b>106</b>
1. 채권 결산 .....	106
2. 채무 결산 .....	108
<b>마.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b>	<b>110</b>
1. 공유재산 증감 현황 .....	110
2. 물품 증감 현황 .....	112
<b>IV. 심사결과 .....</b>	<b>114</b>
가. 중점심사내용 .....	114
나. 토론요지 .....	116
다. 심사결과 .....	116
라.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118

## 가. 회계구분

- 1) 소관부서 : 인천광역시
- 2) 회계구분
  - 일반회계(세입·세출)
  - 특별회계(세입·세출)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 예비비 지출
  - 기금, 채권 및 채무
  - 공유재산 및 물품

## 나. 심사경과

- 1) 제출일자 : 2014. 7. 2.
- 2) 제출자 : 인천광역시장
- 3) 회부일자 : 2014. 9. 4.
- 4) 상정일자 : 2014. 9. 5.
  - 제안설명 : 안전행정국장 조 동 압
  - 검토보고 : 수석전문위원 임 조 순
  - 질의 및 토론
  - 원안승인

## II

## 결산 규모 및 개요

-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예산액은 8조 3,644억 원으로 이는 직전회계연도(2012회계연도) 최종예산액 7조 5,386억 원보다 11.0%, 8,258억 원 증가한 규모임
  - 최종예산액 8조 3,644억 원에 직전회계연도 이월액 9,359억 원을 합한 201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직전회계연도 예산현액인 8조 3,203억 원보다 11.8%(9,801억 원) 증가한 9조 3,004억 원 규모임.
  
- 다음으로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19.8%(1조 4,597억 원) 증가한 8조 8,364억 원으로 일반회계 5조 8,709억 원과 특별회계 2조 9,655억 원임
  
- 세출결산액의 경우, 전년대비 17.8%(1조 2,196억 원) 증가한 8조 619억 원으로 일반회계 5조 6,087억 원과 특별회계 2조 4,532억 원임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세계잉여금)은 전년(5,344억 원)보다 2,401억 원 증가한 7,745억 원임
  
- 세계잉여금중 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 5,455억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4억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236억 원으로 일반회계 886억 원과 특별회계 1,349억 원으로 나타남

### <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차인잔액 (A-B)	이 월 처 리		
2 0 1 3 회 계 연 도	총 계	9,300,367 <small>(예산현액대비 비율)</small>	8,836,410 <small>(95.0%)</small>	8,061,906 <small>(86.7%)</small>	774,504 <small>(8.3%)</small>	채무상환 -	명시이월 59,930
	<div style="text-align: center;">[2013최종]</div>	8,364,426				사고이월 47,313	계 속 비 438,234
	<div style="text-align: center;">[2012이월]</div>	935,941				보조금잔액 5,435	순세계잉여금 223,592
2 0 1 3 회 계 연 도	일 반 회 계	5,852,804 <small>(예산현액대비 비율)</small>	5,870,867 <small>(100.3%)</small>	5,608,675 <small>(95.8%)</small>	262,192 <small>(4.5%)</small>	채무상환 -	명시이월 16,139
	<div style="text-align: center;">[2013최종]</div>	5,676,349				사고이월 32,001	계 속 비 120,824
	<div style="text-align: center;">[2012이월]</div>	176,455				보조금잔액 4,580	순세계잉여금 88,649
2 0 1 3 회 계 연 도	특 별 회 계	3,447,563 <small>(예산현액대비 비율)</small>	2,965,543 <small>(86.0%)</small>	2,453,230 <small>(71.2%)</small>	512,312 <small>(14.9%)</small>	채무상환 -	명시이월 43,791
	<div style="text-align: center;">[2013최종]</div>	2,688,077				사고이월 15,312	계 속 비 317,411
	<div style="text-align: center;">[2012이월]</div>	759,486				보조금잔액 855	순세계잉여금 134,943

※ 금액(단위)은 반올림으로 계산하여 일부 끝자리 합이 불일치 할수 있음 - 이하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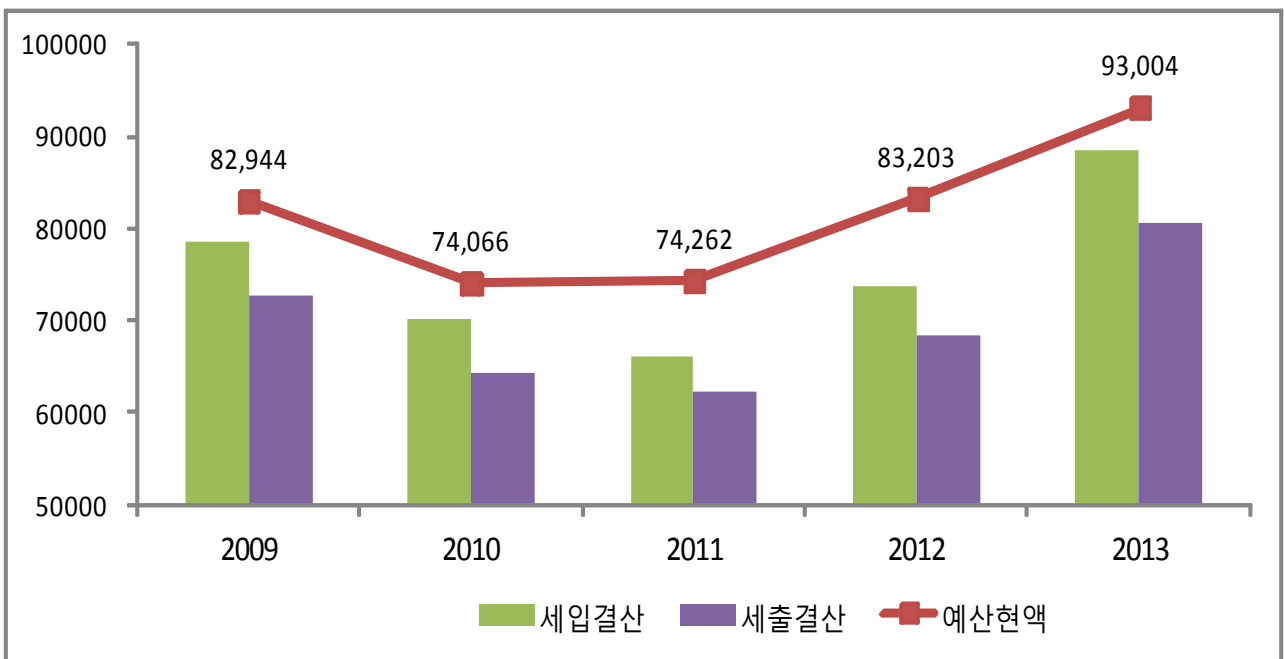
### 〈 연도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년도별	예산현액			세 입			세 출		
	금 액	전년도 대 비	증감 율	결산액	전년도 대 비	증감 율	결산액	전년도 대 비	증감 율
2008	6,661,994	5,757	9.5	6,463,527	4,810	8.0	5,827,141	8,219	16.4
2009	8,294,365	1,632,371	24.5	7,857,861	1,394,334	21.6	7,258,997	1,431,856	24.6
2010	7,406,639	△887,726	△10.7	7,012,100	△845,761	△10.8	6,419,640	△839,357	△11.6
2011	7,426,151	19,512	0.3	6,606,292	△405,808	△5.8	6,228,865	△190,775	△3.0
2012	8,320,263	894,112	12.0	7,376,696	770,403	11.7	6,842,325	613,460	9.8
2013	9,300,367	980,104	11.8	8,836,410	1,459,714	19.8	8,061,906	1,219,581	17.8

### 〈 인천시 연도별 세입·세출 결산 추이 〉

(단위 : 억원)





## 가. 세입결산

### 1. 세입결산 총괄

- 세입(歲入)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채 및 차입금으로 세입을 구성하고 있음
- 2013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5조 8,708억원)와 특별회계(2조 9,655억원)를 합한 8조 8,364억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19.8%, 1조 4,597억원 대폭 증가된 것임
- 2013회계연도의 경우, 당초 징수결정액(9조 4,006억원)보다 5,642억원이 미수납됨으로써 지난 회계연도 보다 미수납액이 641억원 감소하였고 수납액비율도 2012회계연도 92.2%보다 1.8% 높아진 94.0%로 나타내고 있어 이는 그동안 세수확보 및 세입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임
- 2012회계연도와 비교하면 미수납액 규모나 수납비율 모두 증가하였다고 할수 있으나, 그 이전인 2009회계연도부터 2011회계연도의 미수납액 및 수납액비율과 비교해 보면 미수납 규모나 수납액비율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미수납액에 대한 발생원인과 대응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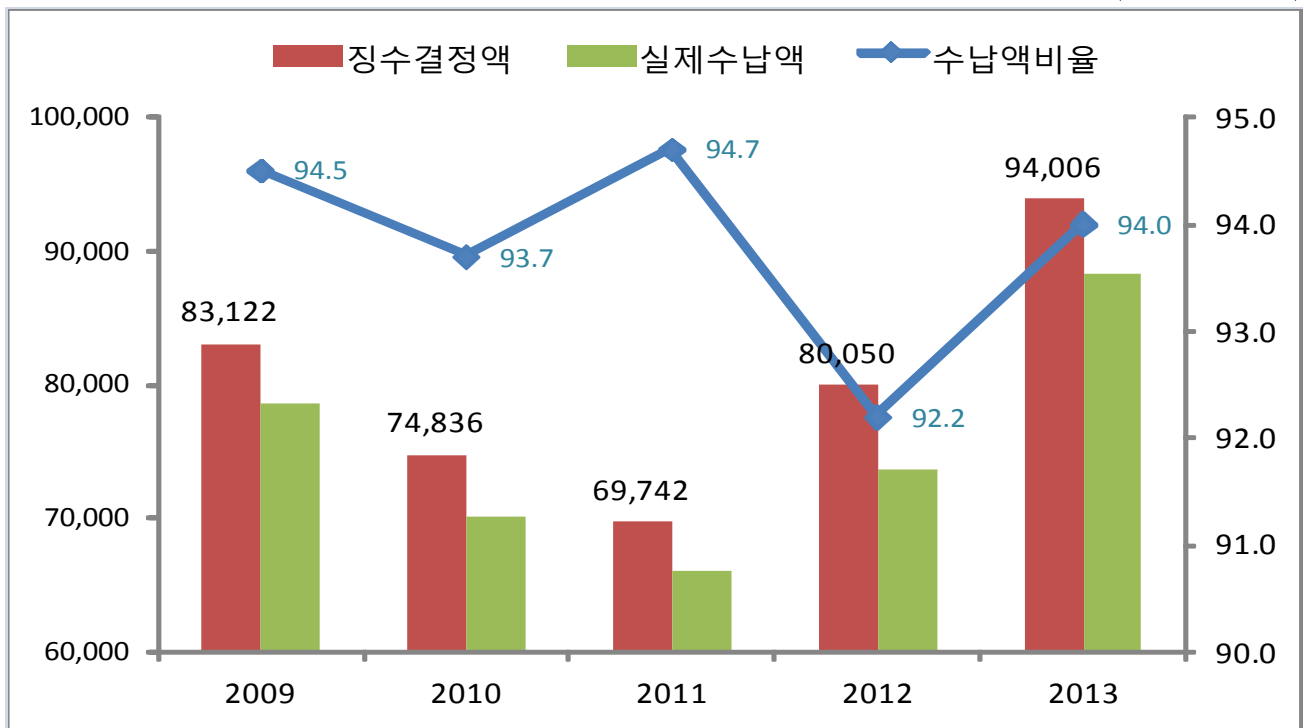
### < 세입결산중 미수납 현황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비율
2009	8,294,365	8,312,178	7,857,861	454,317	94.5
2010	6,941,440	7,483,561	7,012,100	471,461	93.7
2011	7,426,151	6,974,166	6,606,292	367,874	94.7
2012	8,320,263	8,005,022	7,376,696	628,326	92.2
2013	9,300,367	9,400,617	8,836,410	564,207	94.0

### < 세입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 추이 >

(단위 : 억원)



## 2. 일반회계 세입결산

### 가) 지방세 세입

#### 1) 지방세 총괄

-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결산액은 2012회계연도 2조 1,434억원보다 3.4%, 734억원 증가한 2조 2,168억원으로 징수 결정액(2조 5,794억원) 대비 85.9%가 수납되었음
- 지역경제의 성장에 따라 실제 수납 규모는 연평균 2.1%씩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 징수율은 연평균  $\Delta$ 1.7%씩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의 징수율이 감소하는 것은 시 재정운용에 커다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미수납액에 대한 발생원인과 대응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아울러 미수납액은 2009회계연도에 1,800억원에서 2013회계연도에 3,625억원으로 5년사이에 규모면에서 배가 넘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결손처분의 경우는 2012회계연도에 380억원에서 2013회계연도에 539억원으로 42.1%인 160억원이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도 7.3%로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다음연도 이월의 경우 2009회계연도에 1,393억원에서 2013회계연도에 3,086억원으로 5년사이에 121.6%가 증가하여 연평균 22.0%의 가파른 증가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이월액 사유와 대책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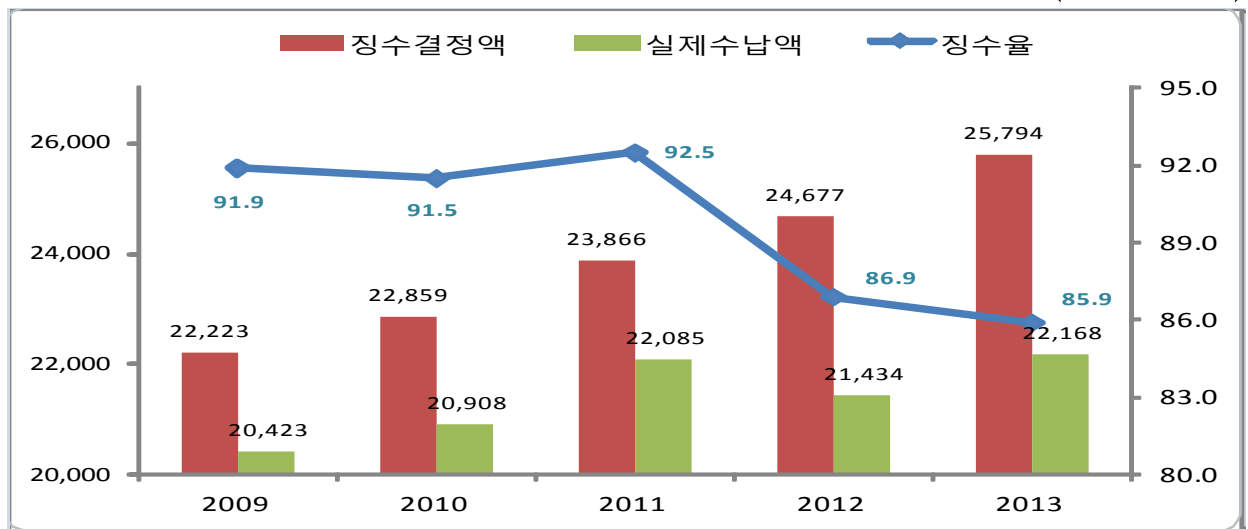
< 지방세 세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예산현액	2,146,567	2,366,532	2,370,996	2,071,794	2,118,693	△0.3
징수결정액 (A)	2,222,327	2,285,944	2,386,649	2,467,663	2,579,381	3.8
실제수납액 (B)	2,042,326	2,090,804	2,208,461	2,143,418	2,216,838	2.1
징수율 (B/A)	91.9	91.5	92.5	86.9	85.9	△1.7
미수납액 (A-B)	180,002 (8.1)	195,140 (8.5)	178,188 (7.5)	324,244 (13.1)	362,543 (14.1)	19.1
결손처분	40,716 (1.8)	31,032 (1.3)	44,726 (1.9)	37,959 (1.5)	53,945 (2.1)	7.3
다음연도 이월	139,286 (6.3)	164,108 (7.2)	133,463 (5.6)	286,286 (11.6)	308,598 (12.0)	22.0

< 지방세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 추이 >

(단위 : 억원)



## 2) 세목별

-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중 지방세 결산액(실수납액)은 2조 2,168억원으로 이중 취득세가 전체의 42.0%인 9,321억원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자동차세 15.9% 3,526억원, 지방소득세 14.9% 3,312억원, 지방교육세 12.5% 2,782억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 2013회계연도 지방세 세목별 수납현황 >

(단위 : 백만원, %)

세 목 (비 중)	징수결정액 ①	수납총액 ②	과오납반환액 ③	실수납액 ④=②-③	미수납액 ⑤=①-④	과오납반환/ 수납액 ③/②
합 계	2,579,381	2,319,881	103,043	2,216,838	362,543	4.4
취 득 세	955,832 ( 37.1 )	981,336 ( 42.3 )	49,271 ( 47.8 )	932,065 ( 42.0 )	23,767 ( 6.6 )	5.0
등 록 면 허 세	3,005 ( 0.1 )	3,017 ( 0.1 )	20 ( 0.0 )	2,996 ( 0.1 )	8 ( 0.0 )	0.7
주 민 세	10,706 ( 0.4 )	9,181 ( 0.4 )	9 ( 0.0 )	9,173 ( 0.4 )	1,533 ( 0.4 )	0.1
자 동 차 세	372,447 ( 14.4 )	355,325 ( 15.3 )	2,735 ( 2.7 )	352,590 ( 15.9 )	19,857 ( 5.5 )	0.8
레 저 세	20,683 ( 0.8 )	20,683 ( 0.9 )	- ( - )	20,683 ( 0.9 )	- ( - )	-
담 배 소비 세	147,146 ( 5.7 )	147,146 ( 6.3 )	- ( - )	147,146 ( 6.6 )	- ( - )	-
지 방 소비 세	94,189 ( 3.7 )	94,189 ( 4.1 )	- ( - )	94,189 ( 4.2 )	- ( - )	-
지 방 소 득 세	355,384 ( 13.8 )	338,468 ( 14.6 )	7,275 ( 7.1 )	331,193 ( 14.9 )	24,191 ( 6.7 )	2.1
지 역 자 원 시 설 세	50,664 ( 2.0 )	48,436 ( 2.1 )	30 ( 0.0 )	48,406 ( 2.2 )	2,258 ( 0.6 )	0.1
지 방 교 육 세	290,588 ( 11.3 )	284,069 ( 12.2 )	5,878 ( 5.7 )	278,191 ( 12.5 )	12,397 ( 3.4 )	2.1
도 시 계 획 세	315 ( 0.0 )	310 ( 0.0 )	- ( - )	310 ( 0.0 )	6 ( 0.0 )	-
지 난 년 도 수 입	278,420 ( 10.8 )	37,721 ( 1.6 )	37,826 ( 36.7 )	△105 ( △0.0 )	278,526 ( 76.8 )	100.3

### 3) 과오납반환액

- 과오납반환액 현황을 보면 전체 과오납반환액 1,030억원중 취득세가 493억원(47.8%), 지난해도수입 378억원(36.7%), 지방소득세 73억원(7.1%), 지방교육세 59억원(5.7%) 등을 차지하고 있음.
- 이중 취득세의 경우 지난해 있었던 정부의 ‘8. 28 전월세 대책’<sup>1)</sup>으로 인한 취득세율 인하<sup>2)</sup>에 따른 환급으로 부득이한 측면이 있으나,
- 지난해도 수입의 경우는 징수결정액이 2,784억원인 반면, 미수납액이 2,785억원으로 수납액 대비 과오납반환 비율이 100.3%로 징수결정액보다 미수납액이 오히려 더 많게 나타나고 있고, 또한 수납총액은 377억원이고 과오납반환액이 378억원으로 실제수납액이 △1억원으로 나타남

### 4) 미수납액

- 미수납액은 총 3,625억원으로 이중 지난해도수입의 미수납액이 2,785억원으로 전체의 76.8%를 차지하고 있어 어려운 시 재정 운용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어 지난해도 수입의 미수납액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징수결정액 규모는 2009회계연도에 2조 2,223억원에서 2013회계연도에 2조 5,794억원으로 연평균 3.8% 증가한 반면, 미수납액 규모는 1,800억원에서 3,625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도 19.1%로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

1)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마련(2013.8.28일 발표)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유도 - 취득세율 인하 등      ·전월세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서민·중산층 전월세부담 완화 - 소득공제한도 확대 등 · 가을 이사철 임차인 애로 해소 등

2)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항 제8호 개정

[당초]

·9억원 이하의 1주택자의 경우 : 2%

·9억원 초과 주택이나 다주택자의 경우 : 4%

[변경]

·6억원 이하 주택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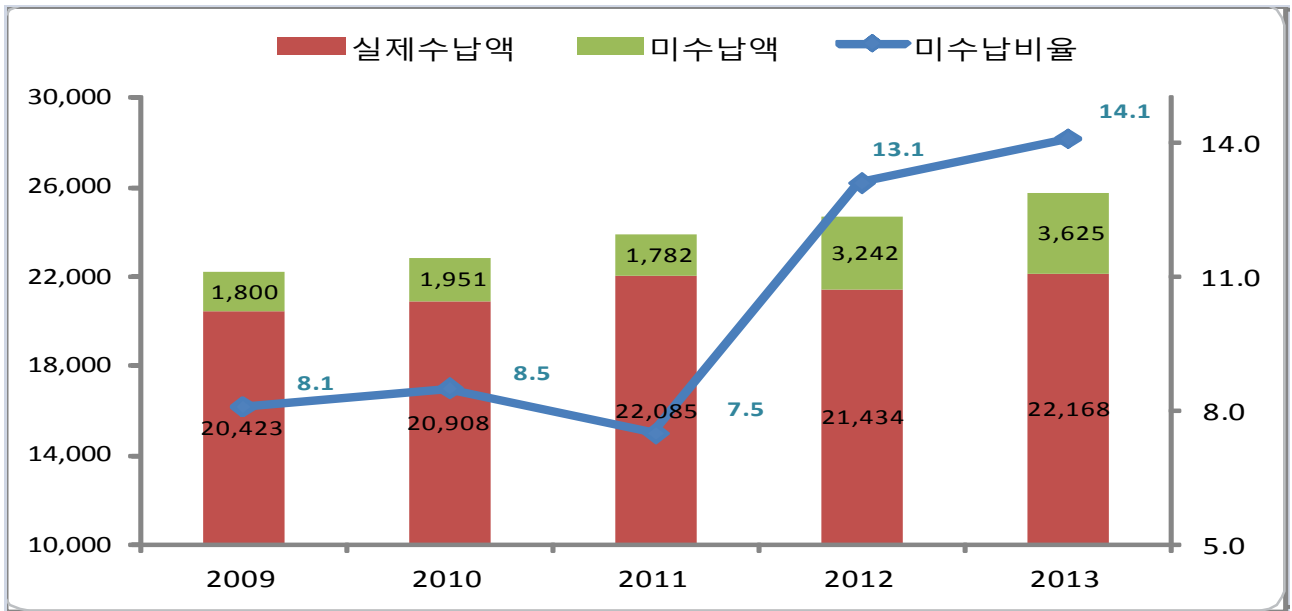
·6억원 ~ 9억원 이하 주택 : 2%

·9억원 초과 주택 : 3%

-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비율은 연평균 증가율이 △1.7%로 점점 감소하는 반면, 징수결정액대비 미수납액비율도 8.1%에서 14.1%로 증가하고 있어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이 절실한 실정임

< 지방세 수납 및 미수납액 추이 >

(단위 : 억원)



< 지방세 수납액 및 미수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징수결정액	2,222,327	2,285,944	2,386,649	2,467,663	2,579,381	3.8
실제수납액	2,042,326	2,090,804	2,208,461	2,143,418	2,216,838	2.1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비율	91.9	91.5	92.5	86.9	85.9	△1.7
미수납액	180,002	195,140	178,188	324,244	362,543	19.1
징수결정액대비 미수납액비율	8.1	8.5	7.5	13.1	14.1	14.8

## 5) 결손처분

- 미수납액은 납세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부족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sup>3)</sup>하는 경우와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징수유예,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의 사유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경우가 있는데
- 결손처분의 경우 규모면에서는 연평균 7.3%로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지방세 미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재산조회 및 징수노력에 힘입어 미수납대비 결손처분비율은 연평균 △9.9%로 감소하고 있으나, 결손처분은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것은 물론 시의 징수권까지 잠정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결손처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 < 미수납액 결손처분 및 다음연도이월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미 수 납 액	180,002	195,140	178,188	324,244	362,543	19.1
결 손 처 분	40,716	31,032	44,726	37,959	53,945	7.3
미 수 납 대 비 결 손 처 분 비 율	22.6	15.9	25.1	11.7	14.9	△9.9
다 음 연 도 이 월	139,286	164,108	133,463	286,286	308,598	22.0
미 수 납 대 비 다 음 연 도 이 월 비 율	77.4	84.1	74.9	88.3	85.1	2.4

#### 3) 지방세기본법 제96조(결손처분)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특히 결손처분으로 인해 인천시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성실 납세 자들과의 조세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결손처분을 한 이후에도 소멸시효<sup>4)</sup> 전까지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재산조회 및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여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결손처분 사유별로 살펴보면 시효소멸은 연평균 △22.9%로 대폭 감소하고 있는 반면, 무재산 6.0%, 행방불명 25.4%, 배분금액 부족 19.8%, 기타 9.2%로 배부분 큰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바, 사유별 원인과 징수 사례들을 검토하여 적극적인 징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됨

**< 지방세 미수납액중 결손처분 사유별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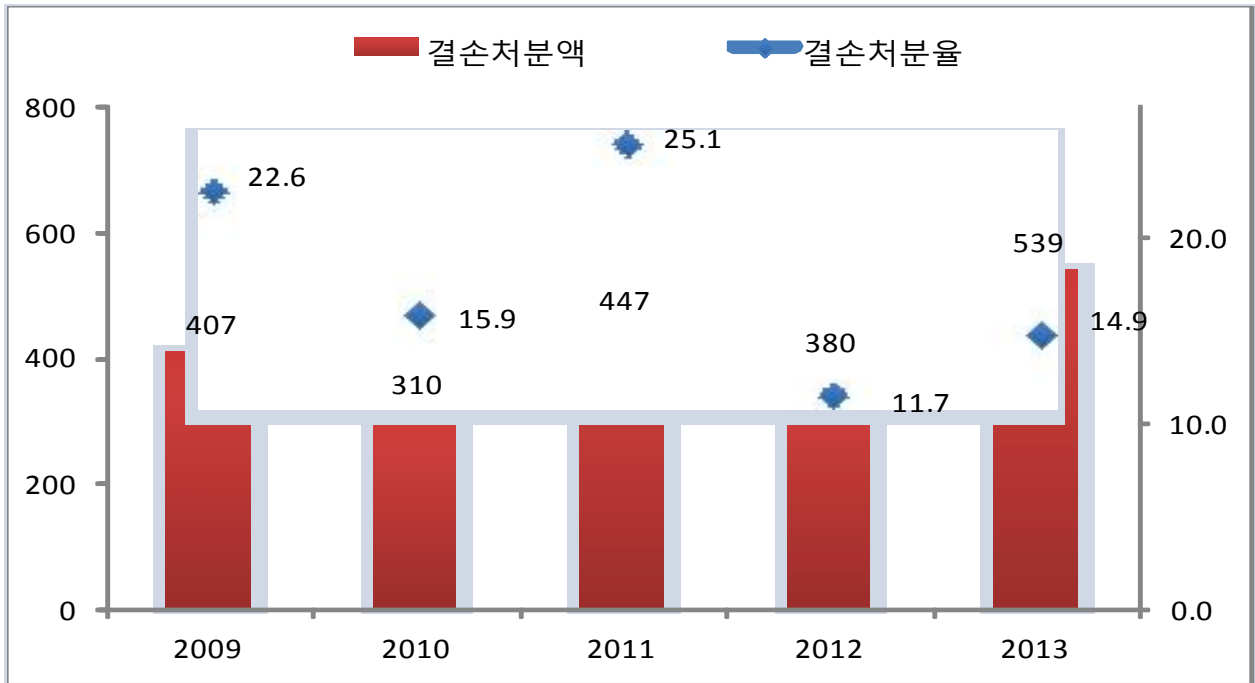
구 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총 액	154,433	40,716	31,032	44,726	37,959	53,945	7.3
무 재 산	78,595	16,881	16,169	26,355	19,190	21,309	6.0
	(50.9)	(41.5)	(52.1)	(58.9)	(50.6)	(39.5)	(△1.2)
행 방 불 명	2,691	534	1,126	483	548	1,319	25.4
	(1.7)	(1.3)	(3.6)	(1.1)	(1.4)	(2.4)	(15.9)
시 효 소 멸	5,445	1,966	1,079	1,830	570	694	△22.9
	(3.5)	(4.8)	(3.5)	(4.1)	(1.5)	(1.3)	(△28.2)
배 분 금 액 부 족	454	374	80	-	-	771	19.8
	(0.3)	(0.9)	(0.3)	( )	( )	(1.4)	(11.7)
기 타	67,247	20,961	12,578	16,057	17,651	29,852	9.2
	(43.5)	(51.5)	(40.5)	(35.9)	(45.5)	(55.3)	(1.8)

4)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지방세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 추이 >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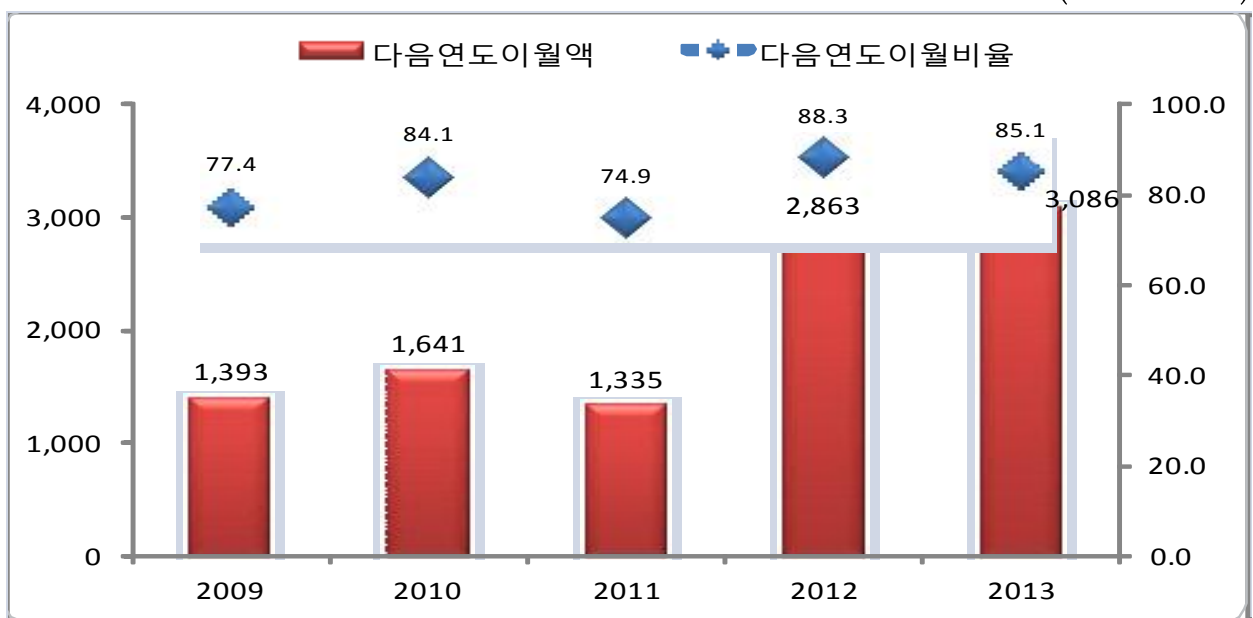


## 6) 다음연도 이월

- 다음연도 이월은 미수납된 시세 세입중 당해연도에 징수하지 못하여 다음해부터 장기간에 걸쳐 미수납액을 징수하는 것으로써 다음연도 이월 규모가 2009회계연도에 1,393억원에서 2013회계연도에 3,086억원으로 5년만에 2배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연평균 증가율도 22.0%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지방세 체납은 체납액 징수를 위한 행정력 낭비는 물론, 조세 형평을 고려하여 체납자들의 지능적인 조세회피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체납징수 방법 및 다양한 재산 추적방안을 마련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 감소를 위해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 미수납액 다음연도이월액 추이 >

(단위 : 억원)



○ 특히 전체 지방세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 사유중 행방불명 (27.5%, 847억원)과 납세태만(9.3%, 286억원) 등 다음연도 이월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133억원은 적극적인 재산추적으로 시효 소멸을 중단할 수 있는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가 가능한 바,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로 시의 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미수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로 조세형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응책 마련 등 징수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세 미수납액중 다음연도이월 사유별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증가율
총 계	1,031,741	139,286	164,108	133,463	286,286	308,598	22.0
무 재 산	101,227	12,393	16,142	12,964	59,728	12,316	△0.2
	(9.8)	(8.9)	(9.8)	(9.7)	(20.9)	(4.0)	(△18.2)
행 방 불 명	272,732	3,580	101,473	74,969	92,710	84,731	120.6
	(26.4)	(2.6)	(61.8)	(56.2)	(32.4)	(27.5)	(80.8)
납 세 태 만	239,891	35,095	43,774	38,179	122,843	28,570	△5.0
	(23.3)	(25.2)	(26.7)	(28.6)	(42.9)	(9.3)	(△22.1)
징 수 유 예	1,699	28	39	1,244	388	49	15.0
	(0.2)	(0.0)	(0.0)	(0.9)	(0.1)	(0.0)	(△5.7)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6,801	7	44	5,126	1,624	173,165	1,154.1
	(0.7)	(0.0)	(0.0)	(3.8)	(0.6)	(56.1)	(927.9)
기 타	100,792	88,182	2,637	981	8,992	9,767	△42.3
	(9.8)	(63.3)	(1.6)	(0.7)	(3.1)	(3.2)	(52.7)

## 나) 세외수입

-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액은 당초 징수결정액보다 58억원이 미수납된 1조 2,813억원이 실수납되어 징수율이 99.6%로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자주재원의 근간을 구성하는 주요 세입원이지만 경기변동이나 시 정책방향에 따라 변동이 심하여 재원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연도별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을 보면 2010회계연도와 2011회계연도에는 각각 5,590억원과 4,593억원인데, 2012회계연도와 2013회계연도에는 각각 1조 2,550억원과 1조 2,813억원으로 규모면에서 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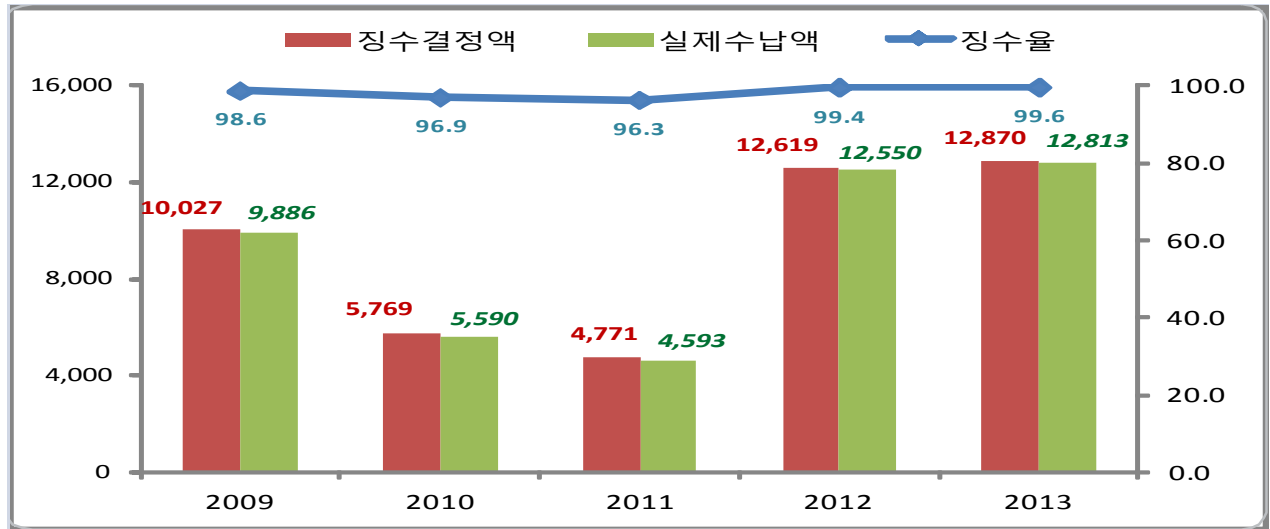
### < 세외수입 세입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예산현액	1,049,767	567,231	601,427	1,500,320	1,398,907	7.4
징수결정액 (A)	1,002,710	576,939	477,082	1,261,871	1,287,043	6.4
실제수납액 (B)	988,636	558,955	459,329	1,254,950	1,281,279	6.7
징수율 (B/A)	98.6	96.9	96.3	99.4	99.6	0.3
미수납액 (A-B)	14,074 (1.4)	17,984 (3.1)	17,753 (3.7)	7,221 (0.6)	5,764 (0.4)	△20.0
결손처분	408 (0.0)	299 (0.1)	2,405 (0.5)	487 (0.0)	296 (0.0)	△7.7
다음연도 이월	13,666 (1.4)	17,685 (3.1)	15,347 (3.2)	6,734 (0.5)	5,468 (0.4)	△20.5

<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 추이 >

(단위 : 억원)



○ 그러나 지난해 11월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sup>5)</sup>에 따르면 2014년 이후에는 세외수입, 특히 임시적세외수입이 연평균 △49.6%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시의 재정운용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세외수입이 지방세와 함께 자주재원의 근간으로 시의 주요 재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바, 신규 세원 발굴 및 누락되는 세외수입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일반회계 세외수입 향후 수입전망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가율
세 외 수 입	1,024,711	635,791	158,135	152,956	130,904	△40.2
경 상 적 세 외 수 입	73,278	62,188	67,633	68,586	69,511	△1.3
임 시 적 세 외 수 입	951,433	573,603	90,502	84,370	61,393	△49.6

※ 인천광역시 2013~2017 중기지방재정계획 발취

5)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념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

## 다) 지방교부세

- 국고보조금과 더불어 대표적인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의 결산액은 2009회계연도에 1,436억원에서 2013회계연도에 3,102억원으로 5년 사이에 1,666억원이 늘어나 116%의 증가를 보였고, 연평균 증가율도 21.2%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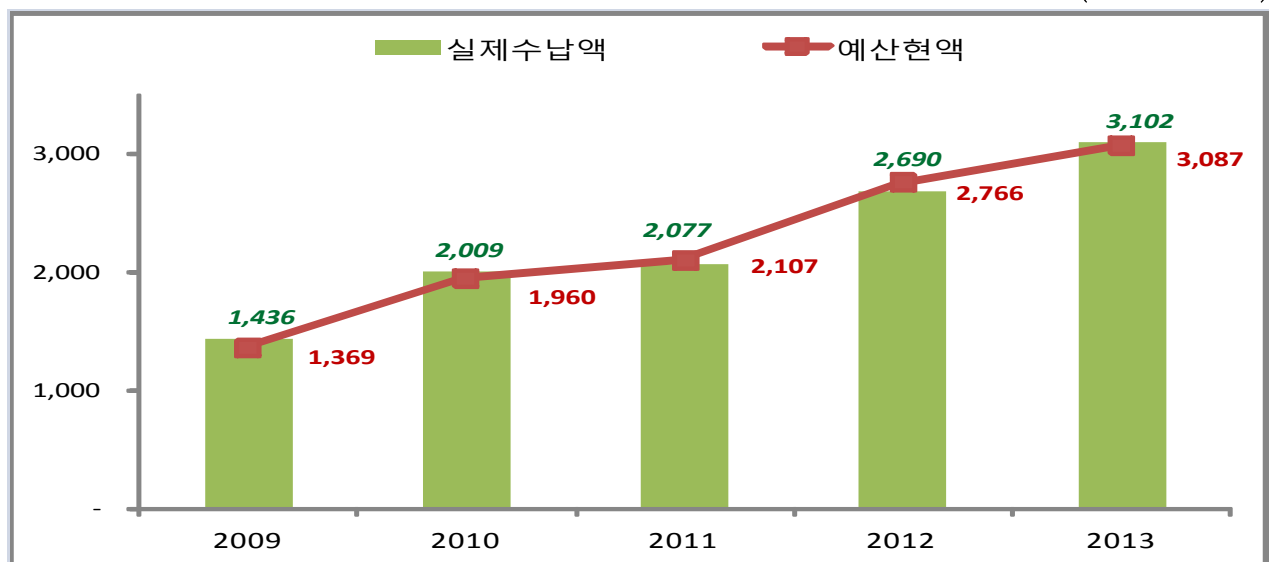
### < 지방교부세 세입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예산현액 (A)	136,850	195,988	210,708	276,602	308,687	22.6
징수결정액	143,579	200,907	207,722	269,001	310,247	21.2
실제수납액 (B)	143,579	200,907	207,722	269,001	310,247	21.2
징수율 (B/A)	104.9	102.5	98.6	97.3	100.5	△1.1

### < 지방교부세 예산현액 및 실제수납액 추이 >

(단위 : 억원)



- 지방교부세 중에서 교부세 총액의 약 97%<sup>6)</sup>를 차지하면서도 재원의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보통교부세의 경우 지자체의 일반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특히 최근 부채증가 등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로서는 매우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 보통교부세 배분내역 >

(단위 : 억원, 명,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전국 시도	보통교부세 <sup>7)</sup>	63,913	72,628	84,353	89,550	11.9
	인구수 <sup>8)</sup>	50,515,666	50,734,284	50,948,272	51,141,463	0.4
	1인당 보통교부세액(천원)	126.5	143.2	165.6	175.1	11.4
인천	보통교부세	2,009	2,077	2,690	3,102	15.6
	(전국대비 구성비)	(3.1)	(2.9)	(3.2)	(3.5)	
	인구수 <sup>9)</sup>	2,758,296	2,801,274	2,843,981	2,879,782	1.4
	(전국대비 구성비)	(5.5)	(5.5)	(5.6)	(5.6)	
	1인당 보통교부세액(천원)	72.8	74.1	94.6	107.7	13.9
	(전국대비 비율)	(57.6)	(51.8)	(57.1)	(61.5)	

※ 구성비 : 전국시도 대비 인천시 구성비율

6) 지방교부세법 제4조(교부세의 재원) 제2항 제1호

1. 보통교부세

(해당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 정산액 - 분권교부세액) × 100분의

97

7) 재정고 참조 - 광역시·도 연도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당초 산정내역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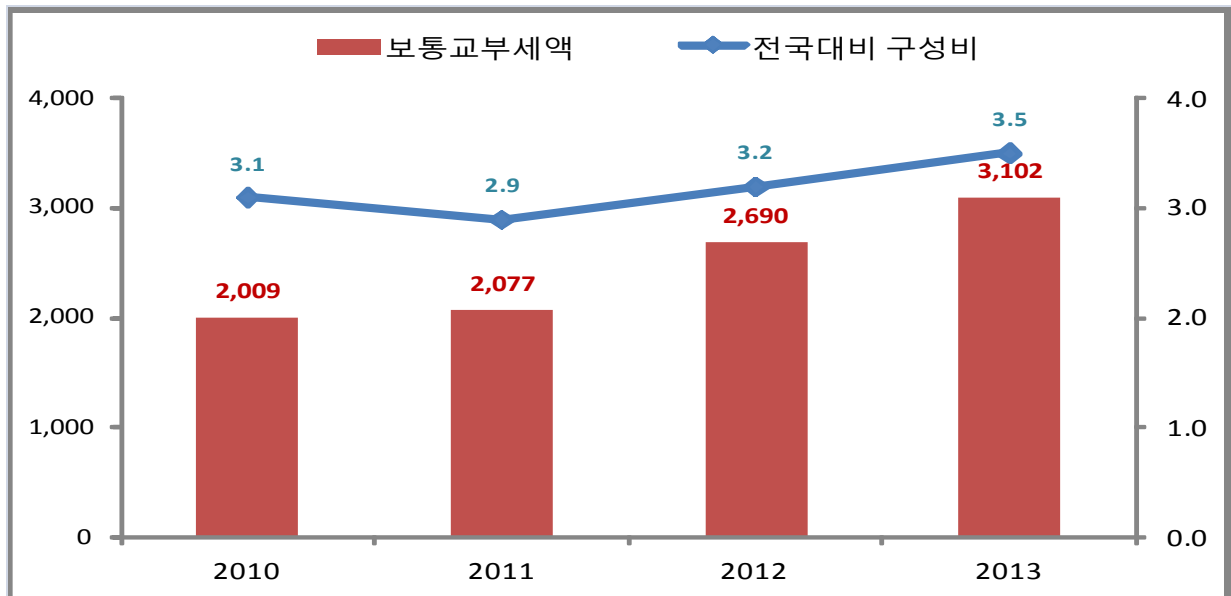
8)9) 매년 말일기준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현황



- 보통교부세 연도별 교부내역을 보면 2010회계연도에 2,009억원에서 2013년 3,102억원으로 50%가 넘게 증가하는 등 연평균 15.6%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또한, 전국 시도 전체에 대한 보통교부세에서도 시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0회계연도에 3.1%에서 2013회계연도에 3.5%로 증가하는 등 시의 보통교부세 배분은 규모면이나 비중면에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보통교부세 증가추이 및 전국대비 구성비 >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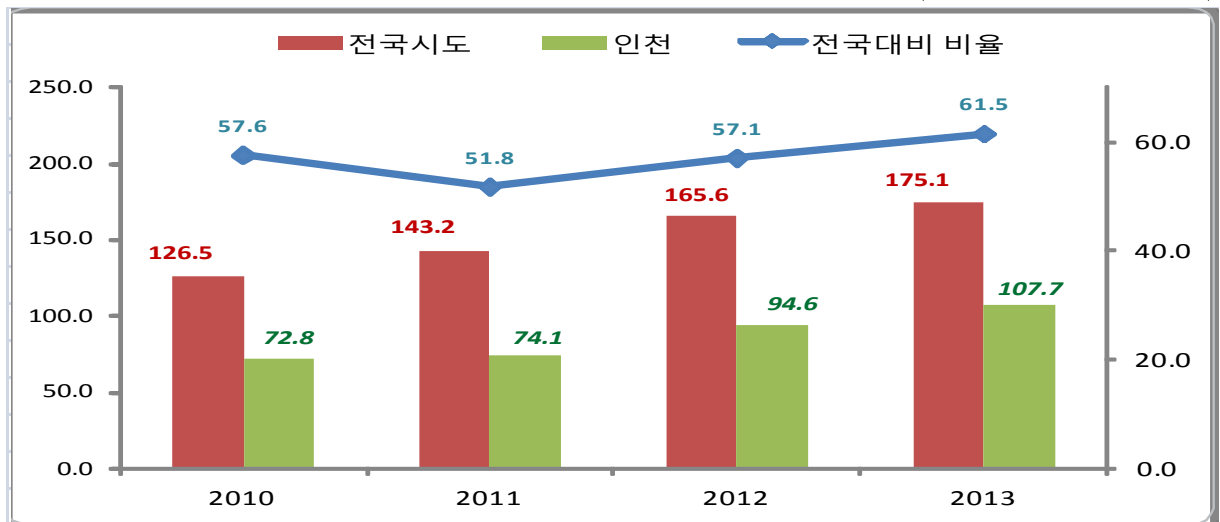


- 하지만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인구수와 비교해 보면 2013회계연도에 전국평균이 175.1천원인 반면, 인천은 107.7천원으로 전국평균 대비 61.5%에 불과한 실정임
- 또한 인천의 인구는 전국의 5.6%에 달하지만 보통교부세 배분은 3.5%에 그치고 있어 인천이 타시도와 비교해서 매우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보통교부세 산정시 기준이 되는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의 차액인 재정부족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보통교부세 산정에 기준이 되는 측정단위, 산정방식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로 인천시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더 나아가 전국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sup>10)</sup>가 2014년 본예산 기준으로 50.3%인 점을 감안할 때, 나머지 49.7%는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인 19.24%의 확대도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1인당 보통교부세액 및 전국대비 비율 >

(단위 : 억원, 명, %)



10) 재정자립도(일반회계) = (지방세 + 세외수입) / 자치단체 예산규모 × 100

- 지방세 : 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 : 경상적세외수입 + 임시적세외수입

- 자치단체 예산규모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보조금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재정자립도 의미 :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서 일반회계의 세입중 지방세(교육세 제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추정하며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정수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

## 라)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달리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대하여 그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비의 용도를 지정해서 교부하는 재원으로
  - 2009회계연도에 9,273억원에서 2013회계연도에 1조 1,798억원으로 연평균 6.2%의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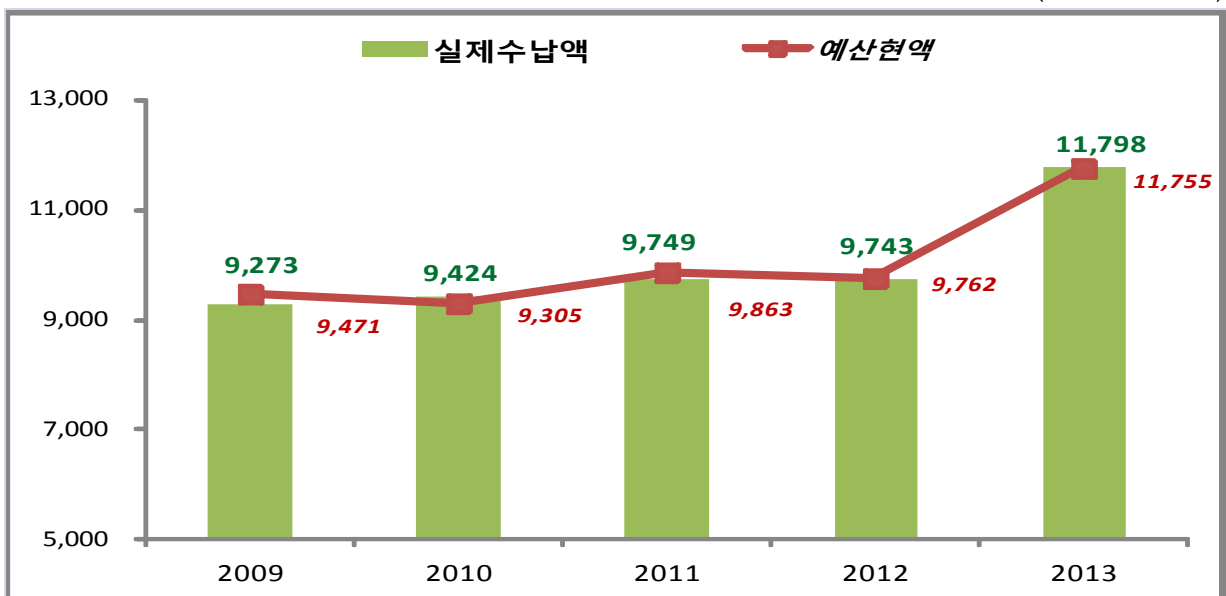
### < 국고보조금 세입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예산현액 (A)	947,097	930,488	986,299	976,241	1,175,537	5.6
징수결정액	927,255	942,400	974,871	974,258	1,179,822	6.2
실제수납액 (B)	927,255	942,400	974,871	974,258	1,179,822	6.2
징수율 (B/A)	97.9	101.3	98.8	99.8	100.4	0.6

### < 국고보조금 예산현액 및 실제수납액 추이 >

(단위 : 억원)



- 또한 2013회계연도의 예산현액 1조 1,755억원 대비 실제징수액이 43억원 더 많은 1조 1,798억원이 수납되어 징수율이 100.4%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추가 확보했다고 할 수 있지만, 국비확보에 따른 시비 매칭 문제, 예산에 미반영된 사업 추진 및 그에 따른 사업 추진시기 및 규모의 적정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바, 국고보조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하지 않거나, 시비 미매칭, 사업시기 지연 및 수요예측 등의 오류로 국고보조금이 미교부되어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바, 어렵게 확보한 국고보조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13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주요 미교부 현황 >**

(단위 : 백만원 / %)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수납액	미교부액	미교부율	미교부사유
합계		36,677	13,460	23,217	63.3	
농축산통과	FTA 피해보전 직불금	844	385	459	54.4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비 미교부
도시철도건설본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역장선 건설	15,000	10,000	5,000	33.3	국비에 대한 시비 예산 비율 미반영
경제청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지원사업	10,858	3,075	7,783	71.7	사업지연 및 사업기간에 따른 국비 미신청
"	송도68공구 기반시설 8-1공구 건설공사	1,000	0	1,000	100.0	국비배정 지연
"	잡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	8,975	0	8,975	100.0	국비배정 지연

\* 예결위 요구자료 P647 ~ P663 참조

## 마) 지방채

- 지방채는 지자체가 투자지출이나 재해복구사업 등을 위해 재정이 필요한데 재정수입이 부족한 경우, 필요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조달하는 부채로
  - 2012회계연도에 206억원을 발행한 반면, 2013회계연도에는 지난연도의 42.8배가 넘는 8,827억원(고금리 차환채 7,010억원 포함)을 발행하는 등 매년 발행규모가 큰 폭의 변화를 보이고 있음
  - 2013회계연도의 경우 지방채 발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2014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준비를 위한 경기장 건설 등으로 부득이한 측면이 있으나
  - 사회간접자본은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이 길어 그 편익이 장기간에 걸쳐게 되므로 현세대뿐만 아니라 장래세대까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는바, 매년 큰 폭의 변화 보다는 지방채 발행에 따른 부담이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방채 발행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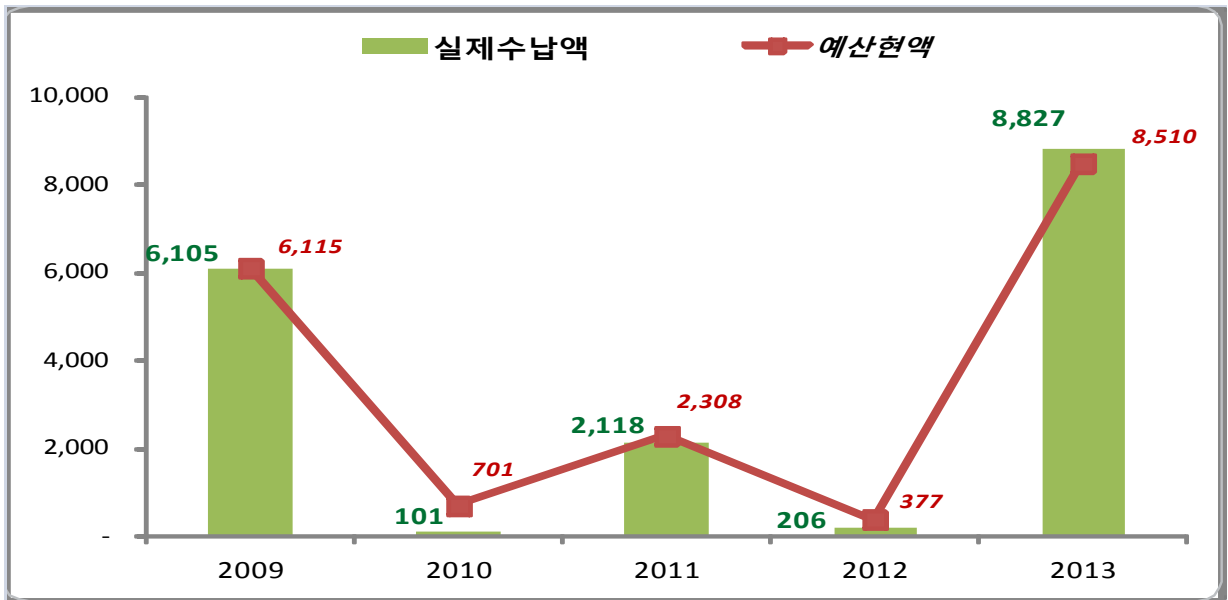
### < 지방채 세입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예산현액 (A)	611,470	70,053	230,800	37,700	850,981	8.6
징수결정액	610,490	70,053	211,800	20,600	882,681	9.7
실제수납액 (B)	610,490	70,053	211,800	20,600	882,681	9.7
징수율 (B/A)	99.8	100.0	91.8	54.6	103.7	1.0

< 지방채 예산현액 및 실제수납액 추이 >

(단위 : 억원)



- 한편 지방채의 예산현액이 8,510억원인 반면, 실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8,827억원으로 차액이 무려 317억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지역개발채권 등 매출공채 발행에 따라 부득이한 측면이 있으나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 해야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발생원인과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예결위 요구자료 : 지방채 발행 및 운영 현황( P719 ~ P722) 참조

### 3. 특별회계 세입결산

#### 가) 세입총괄

- 2013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012회계연도 2조 7,148 억원보다 9.2% 2,508억원이 증가한 2조 9,655억원으로 징수결정액 3조 1,614억원 대비 93.6%의 징수율을 나타내는 등 전년도에 비해 수납액 규모 및 징수율이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또한 미수납액도 2009회계연도에 2,602억원에서 2013회계연도에 1,959억원으로 연평균 △6.9%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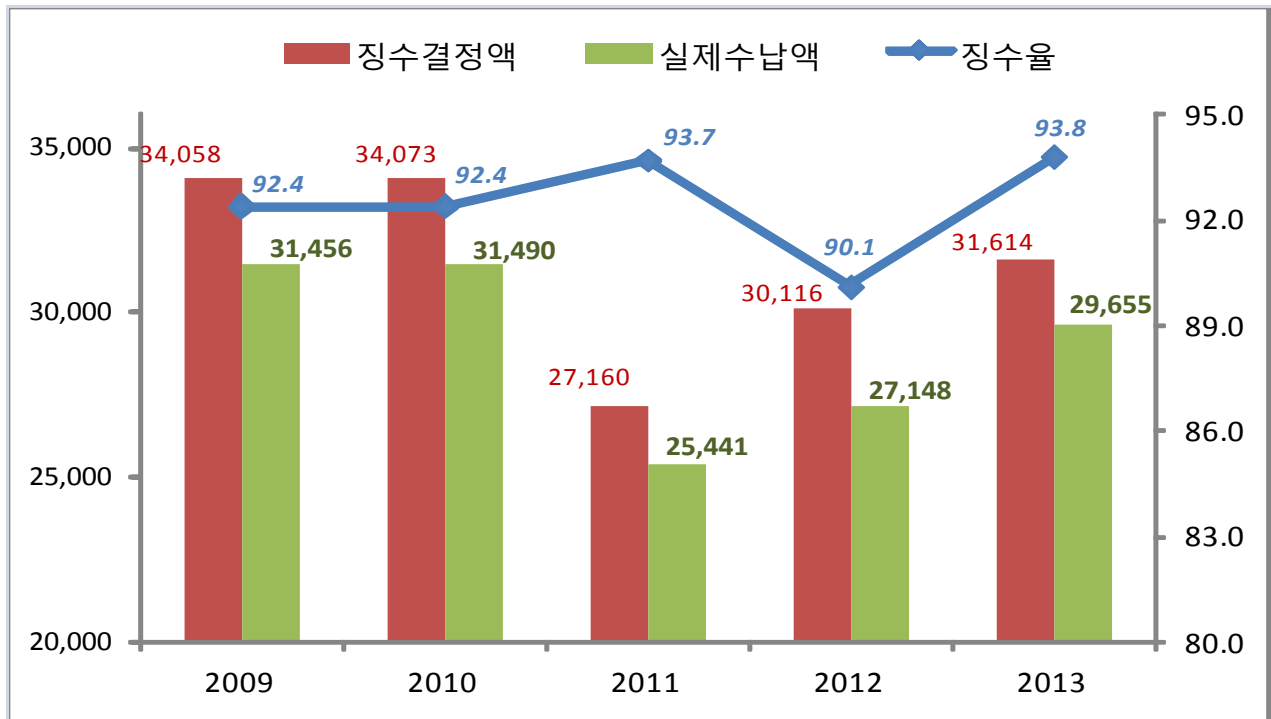
#### < 특별회계 세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예산현액	3,402,615	3,376,348	3,025,921	3,457,606	3,447,563	0.3
징수결정액 (A)	3,405,817	3,407,319	2,716,042	3,011,630	3,161,442	△1.8
실제수납액 (B)	3,145,576	3,148,982	2,544,110	2,714,769	2,965,543	△1.5
징수율 (B/A)	92.4	92.4	93.7	90.1	93.8	0.4
미수납액 (A-B)	260,241 (7.6)	258,337 (7.6)	171,933 (6.3)	296,860 (9.9)	195,900 (6.2)	△6.9
결손처분	306 (0.0)	4,097 (0.1)	909 (0.0)	3,576 (0.1)	297 (0.0)	△0.7
다음연도월 이	259,936 (7.6)	254,241 (7.5)	171,024 (6.3)	293,285 (9.7)	195,603 (6.2)	△6.9

<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 추이 >

(단위 : 억원)



나) 미수납액

○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대비 미수납율은 6.2%이고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음. 이월액 1,956억원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1,609억원, 기타특별회계가 347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특히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부동산경기 침체로 2014년도 예산편성시 지방채를 발행<sup>11)</sup>하는 등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 이월액의 70%가 넘는 1,436억원이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하고 있어 미수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11) 2014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지방채 발행 : 1,700억원

① 송도 6·8공구 기반시설 공사 : 700억원

② 송도 11공구 매립공사 : 1,000억원



○ 아울러 기타특별회계중 도시교통사업과 광역교통사업은 징수결정액대비 각각 16.6%와 29.4%가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등 당해연도 세입의 미수납율이 매우 높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수립·추진하여 사업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2013회계연도 특별회계 미수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율 (%)
			계	결손처분	이월액	
합 계	3,161,442	2,965,543	195,900	297	195,603	6.2
공기업특별회계	1,964,974	1,534,060	160,913	54	160,860	9.5
상수도사업	344,960	339,546	5,414	35	5,379	1.6
하수도사업	159,947	148,109	11,837	-	11,837	7.4
경제자유구역사업	825,480	681,818	143,662	19	143,643	17.4
기타특별회계	1,466,469	1,431,483	34,986	243	34,743	2.4
인천대학교	16,015	14,520	1,495	-	1,495	9.3
도시교통사업	72,769	60,669	12,100	243	11,857	16.6
광역교통시설	71,940	50,758	21,181	-	21,181	29.4
도시개발	11,946	11,776	170	-	170	1.4
기반시설	2,409	2,369	40	-	40	1.7

※ 미수납액 발생 특별회계만 발체

다) 세입 다음연도 이월 사유

- 특별회계 미수납액중 다음연도이월액에 대한 사유별 현황을 보면 무재산이 51.4% 178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납세태만 18.7% 64억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8.8% 31억원, 행방불명 0.9% 3억원 및 기타로 20.3% 70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월사유가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인 경우가 8.8% 31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91.2%가 행정조치가 없다고도 볼 수 있는바, 무재산일 경우에는 지속적인 재산추적으로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납세태만이나 행방불명, 기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재산조회 및 추적으로 미수납되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예결위 요구자료 : P723 ~ P731 참조

〈 기타특별회계 세입 미수납액중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사유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징수유예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기 타
기타특별회계	34,743	17,853 (51.4)	306 (0.9)	6,489 (18.7)	- (-)	3,055 (8.8)	7,040 (20.3)
인천대학교 운 영	1,495	- (-)	- (-)	- (-)	- (-)	- (-)	1,495 (100.0)
도시교통사업	11,857	1,136 (9.6)	- (-)	2,713 (22.9)	- (-)	2,543 (21.4)	5,465 (46.1)
광역교통사업	21,181	16,716 (78.9)	306 (1.4)	3,638 (17.2)	- (-)	441 (2.1)	80 (0.4)
도 시 개 발	170	- (-)	- (-)	98 (57.6)	- (-)	72 (42.4)	- (-)
기 반 시 설	40	- (-)	- (-)	40 (100.0)	- (-)	- (-)	- (-)

※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 특별회계만 발체

## 나. 세출 결산

### 1. 세출결산 총괄

-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5조 6,087억원)와 특별회계(2조 4,532억원)를 합한 8조 619억원으로 이는 전년도 6조 8,423억원보다 17.8% 1조 2,196억원이 증가한 규모임
- 예산현액대비 지출액 비율도 2012회계연도에 82.2%에서 다소 큰 폭인 86.7%가 증가된 86.7%를 나타내고 있음
- 한편 연도별 세출 추이를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연평균 2.9% 증가한 반면, 지출은 2.7%로 다소 낮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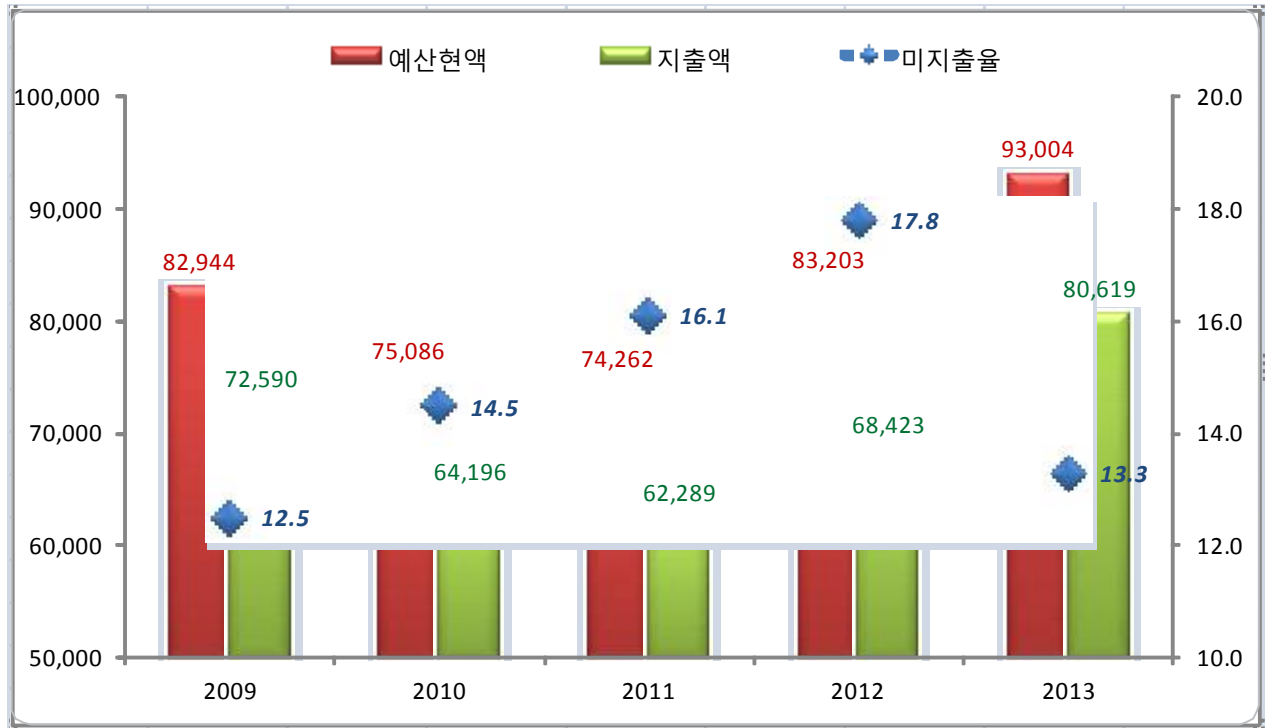
#### < 연도별 지출 결산액 및 미지출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예산현액 (A)	8,294,365	7,508,639	7,426,151	8,320,263	9,300,367	2.9
지출액 (B)	7,258,997	6,419,640	6,228,865	6,842,325	8,061,906	2.7
	87.5	85.5	83.9	82.2	86.7	
미지출액 (A-B)	1,035,369	1,086,999	1,197,286	1,477,938	1,238,461	4.6
	12.5	14.5	16.1	17.8	13.3	
다음연도 월	412,900	586,149	781,668	935,941	748,635	16.0
	5.0	7.8	10.5	11.2	8.0	
집행잔액 (불용액)	622,469	500,850	415,618	541,997	489,826	△5.8
	7.5	6.7	5.6	6.5	5.3	

### < 연도별 지출 및 이월액 추이 >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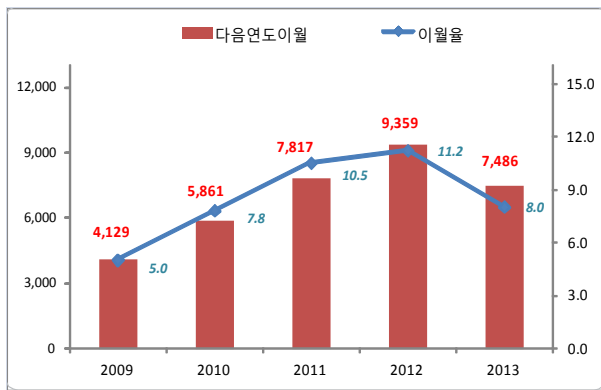


- 한편 예산현액 대비 미지출 비율은 다소 높은 4.6%의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2012회계연도 1조 4,779억원보다 16.2% 2,395억원이 감소한 1조 2,385억원으로 대폭 감소를 보이고 있음. 또한 전년도의 예산현액 대비 미지출액 비율이 17.8%인 반면, 2013회계연도에는 13.3%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다음연도 이월액은 2009회계연도에 5.0% 4,129억원에서 점차 증가하다가 2012회계연도에 예산현액의 11.2% 9,359억원으로 최고조에 달한뒤 2013회계연도에 8.0% 7,486억원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하지만 다음연도 이월 규모가 연평균 16.0% 달하고 있고 2013회계연도에도 전체 예산현액대비 8.0% 달하고 있음

- 이는 급속한 부채비율 증가로 재정위기단체 지정 위기에 처해있는 인천시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시급한 사업들을 적기에 시행하지 못하고 사업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sup>12)</sup>인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반한다고 할 수 있는바, 이월규모를 최소화하여 그 여유 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한편 집행잔액 규모는 2009회계연도에 7.5% 6,225억원 규모에서 2013회계연도에 5.3% 4,898억원으로 연평균 △5.8%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집행잔액 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볼수 있음
- 하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예산에 반영되어 주민 복리를 위한 사업으로 시의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비가 집행되지 못하고 매년 수천억원씩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가 미흡하다 할 수 있으므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사업 시작단계부터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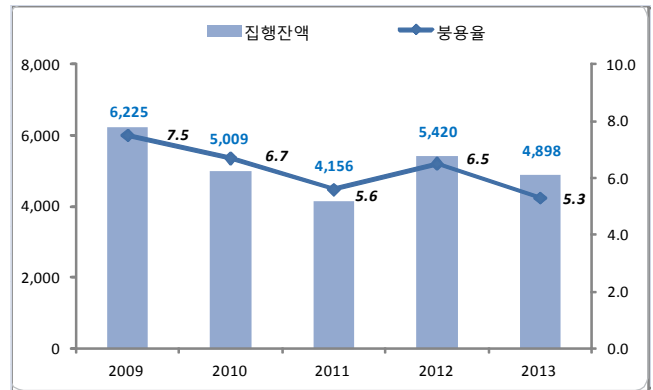
< 다음연도 이월액 추이 >

(단위 : 억원)



< 집행잔액(불용율) 추이 >

(단위 : 억원)



12)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 2013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입결산액(실제수납액)과 세출결산액(지출액)의 차액은 7,745억원이고 이중 이월액 5,455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4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sup>13)</sup>이 2,236억원으로 나타남
- 이중 일반회계는 886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187억원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는 162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함

### < 2013회계연도 결산 결과 및 다음연도 이월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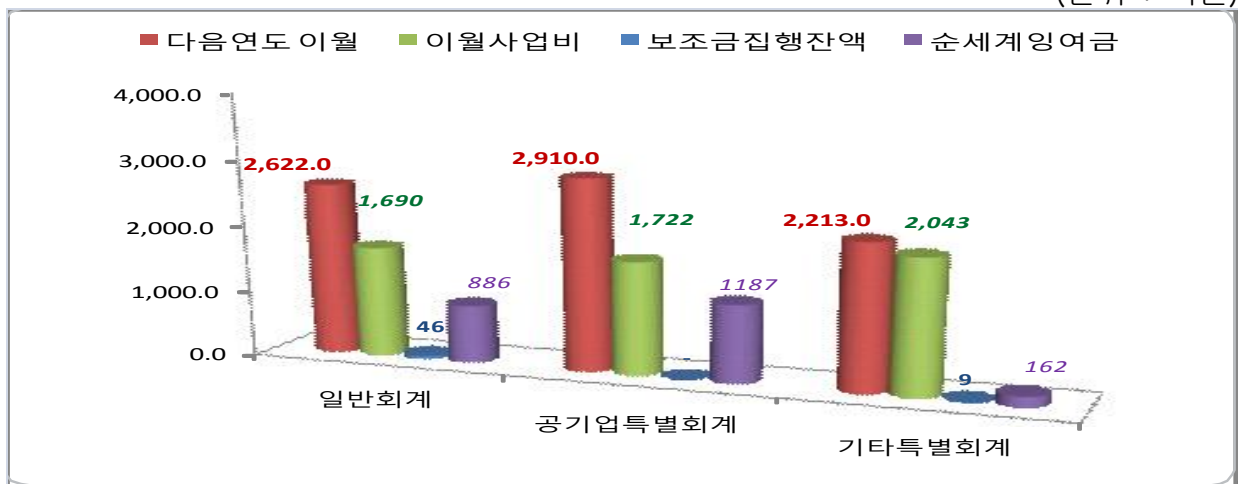
(단위 : 억원)

구분	예산현액	결산			다음연도 이월내역			
		세입	세출	차인잔액	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계	93,004	88,364	80,619	7,745	7,745 (2,032)	5,455 (2,032)	54	2,236
일반회계	58,528	58,709	56,087	2,622	2,622	1,690	46	886
특별회계	34,476	29,655	24,532	5,123	5,123 (2,032)	3,765 (2,032)	9	1,349
공기업	17,684	15,341	12,431	2,910	2,910 (197)	1,722 (197)	-	1,187
기타	16,792	14,315	12,101	2,213	2,213 (1,835)	2,043 (1,835)	8	162

※ 자금없는 이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 )로 별도 표시

### < 회계별 결산결과 및 다음연도 이월내역 >

(단위 : 억원)



13) 순세계잉여금 :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

-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0회계연도까지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오다 2011회계연도에 878억원 마이너스 결산된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3회계연도에는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순세계잉여금이 각각 886억원, 1,349억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연평균 증가율에서는 전체적으로 5.5%를 보이고 있으나 일반회계는 139.7%로 매우 높은 반면 특별회계는 △6.7%로 매우 불규칙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의 보다 정확한 예측으로 회계별로 순세계잉여금이 다소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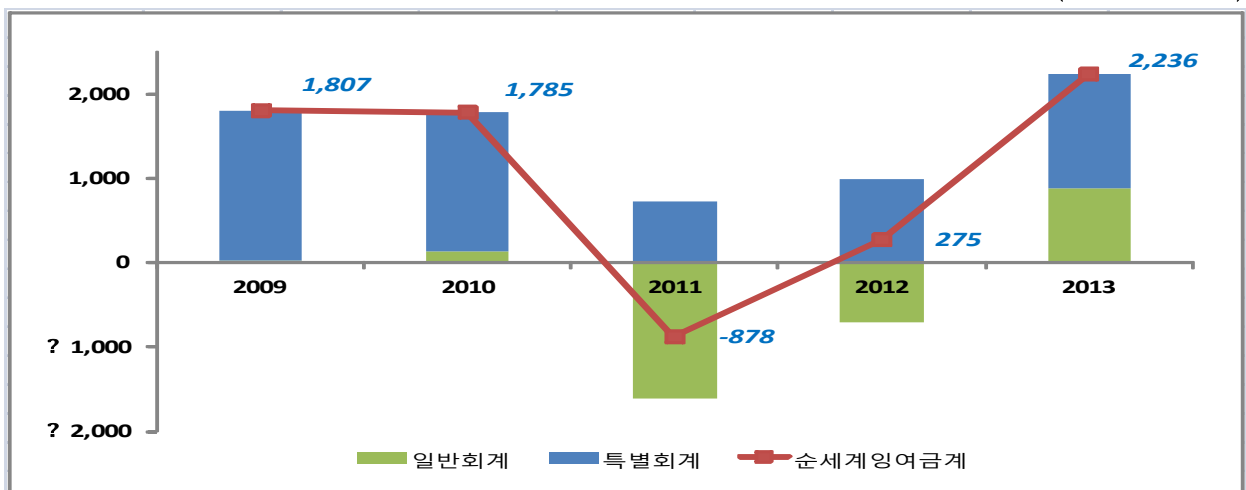
**<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평균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계	104,507	180,715	178,539	△87,818	27,505	223,592	5.5
일반회계	△25,444	2,685	13,587	△161,018	△71,125	88,649	139.7
특별회계	129,951	178,030	164,952	73,200	98,630	134,943	△6.7

**<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발생 추이 >**

(단위 : 억원)



### 3. 회계별 적자 결산

○ 2013회계연도의 경우 총괄적인 면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예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회계별로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아 적자가 발생한 특별회계들이 다수 발생하였음

#### < 순세계잉여금 적자 발생 특별회계 현황 >

(단위 : 억원 / %)

구 분	예산현액	결산		다음연도 이월내역 (예산현액 대비)			
		세입 (A)	세출 (B)	세계잉여금 <sup>14)</sup> (A-B)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특별회계	34,476	29,655	24,532	5,123 (14.9)	3,765 (10.9)	9 (0.0)	1,349 (3.9)
공 기 업	17,684	15,341	12,431	2,910 (16.5)	1,722 (9.7)	- (0.0)	1,187 (6.7)
경제자유 구역사업	9,306	6,818	6,685	133 (1.4)	1,356 (14.6)	- (0.0)	△1,223 (△13.1)
기 타	16,792	14,315	12,101	2,213 (13.2)	2,043 (12.2)	8 (0.0)	162 (1.0)
검단2지구	534	132	227	△95 (△17.8)	307 (57.5)	- (0.0)	△402 (△75.3)
원당지구	23	△13	2	△15 (△65.2)	18 (78.3)	- (0.0)	△33 (△143.5)
오류지구	75	△32	63	△94 (△125.3)	11 (14.7)	- (0.0)	△105 (△140.0)
마전지구	153	47	3	44 (28.8)	149 (97.4)	- (0.0)	△105 (△68.6)
아 시 아 경기대회	7,933	5,917	4,981	936 (11.8)	944 (11.9)	- (0.0)	△8 (△0.1)

14) 세계잉여금[지방재정법 제5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함  
 ∴ 세계잉여금 = 수납된 세입액 - 지출된 세출액 (결산상 잉여금을 의미함)  
 ∴ 순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 - (이월재원 + 보조금잔액)



- 공기업중에는 유일하게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가 세입에서 세출은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33억원 발생하였으나 1,356억원의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오히려 △1,223억원 적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 9,306억원의 13.1%에 달하는 규모로 재정운용에 심각한 오류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원인 파악과 그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기타특별회계에서도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중 검단2지구 △402억원, 원당지구 △33억원, 오류지구 △105억원, 마전지구 △105억원 등 4개 지구에서 2013회계연도에만 645억원의 적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침체로 청산에 따른 환지청산이나 용지 매각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환지청산이나 용지 매각에 있어서의 방법·금액 등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심사와 향후 대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결산 세입에서 세출을 뺀 세계잉여금이 적자인 검단2지구(△95억원), 원당지구(15억원), 오류지구(△94억원) 특별회계의 경우 수입이 없음에도 지출하였다고 나타나는 바, 발생사유와 더불어 적자분 충당·보전 방법뿐만아니라 향후 사업을 진행하는 것

2. 세계잉여금의 발생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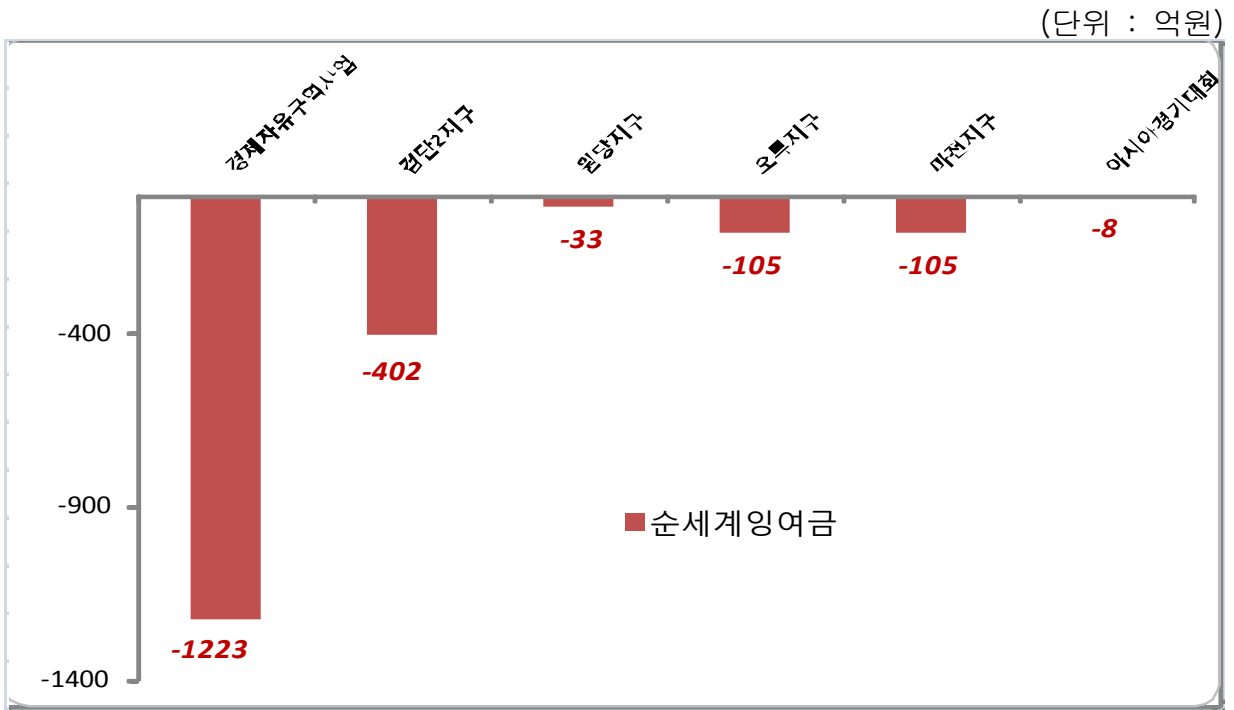
- ①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 즉 조세 등의 예산에 계획되지 않고 예산외에 수납된 수입액
- ② 세출예산중 지출되지 않은 것, 즉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말하며, 새로운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재원

3.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 가능

이 적절한 지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 한편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의 경우 대회준비가 세입부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8억원 적자가 발생한 것은 대회가 임박한 시점에서 대회준비에 차질이 없는지 등에 대한 시민들의 염려가 있을 수 있는 바, 아시안게임 준비 전반에 대한 재정지원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순세계잉여금 적자 발생 특별회계 >



\* 예결위 요구자료 : 순세계 잉여금 적자발생 회계결 현황(P733 ~ P745) 참조

#### 4. 자금없는 이월<sup>15)</sup>액

- 연도별 자금없는 이월액 발생 규모를 살펴보면 2009회계연도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2010회계연도에 1,773억원, 2011회계연도에 3,187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가 2013회계연도에는 다소 감소한 2,032억원이 발생하고 있음.
- 자금없는 이월의 발생사유는 사업추진 상황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 미교부 되거나 지방채 승인은 됐으나 발행 시기를 늦추는 등의 사유로 자금의 이월없이 예산만을 이월하는 사항으로 예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기는 했으나 2천억원이 넘는 자금이 2013회계연도에 사용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됨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는바, 사업별 적정한 이월이었던지, 국고보조금교부나 지방채 인수가 늦어짐으로써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는지 등 자금없는 이월액 발생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연도별 ‘자금없는 이월액’ 발생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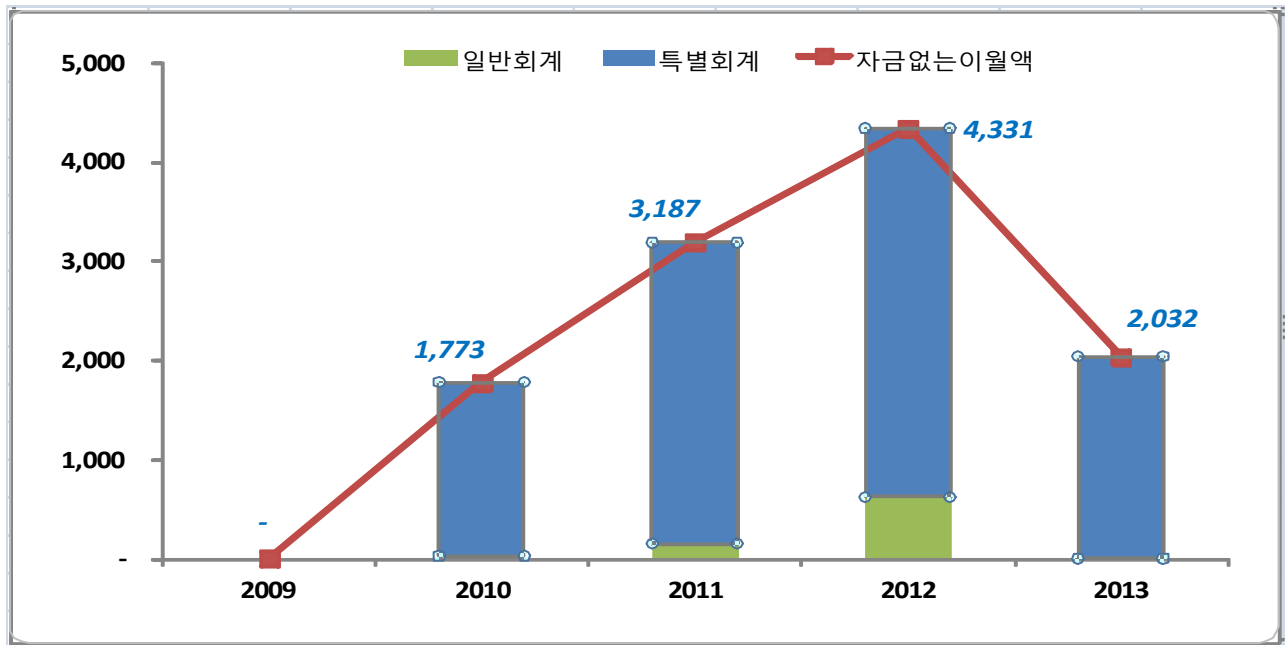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계	-	177,305	318,748	433,144	203,158	226,471
일반회계	-	2,112	14,600	61,800	-	15,702
특별회계	-	175,193	304,148	371,344	203,158	210,769

15) 자금없는 이월 :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해당 자금이 부득이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할 경우 해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자금의 이월 없이 세출예산을 이월처리

< 연도별 '자금없는 이월액' 발생 추이 >

(단위 : 억원)



\* 예결위 요구자료 : 자금없는 이월액 사업비 추진현황(P747 ~ P76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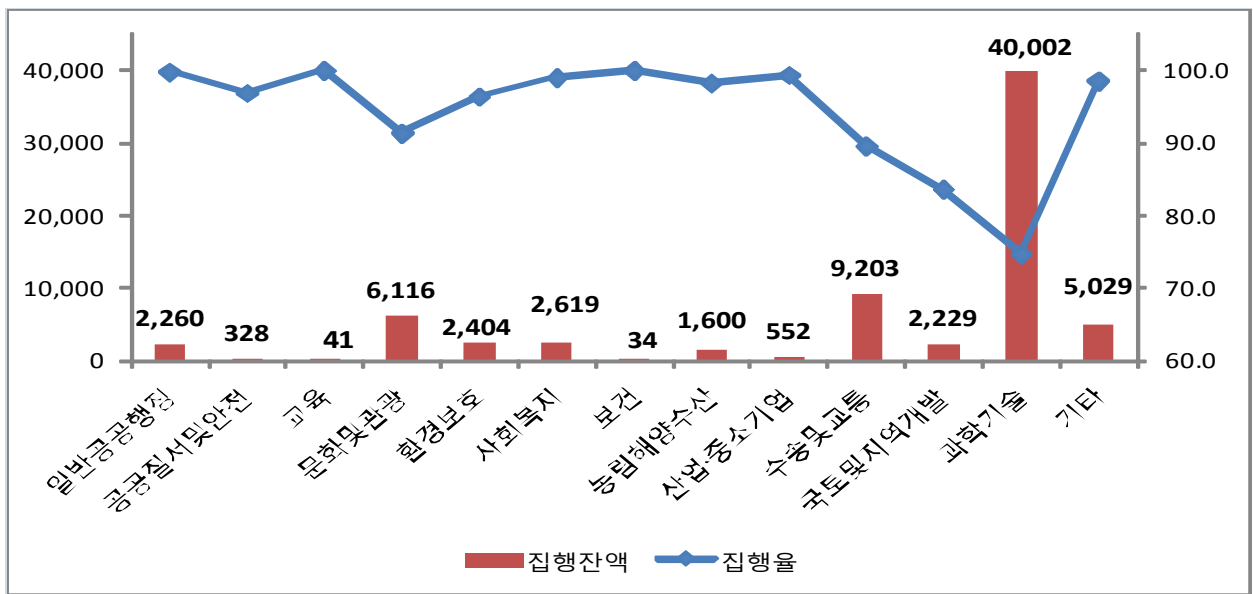
## 5. 다음연도이월 및 불용액

### 가) 일반회계

- 일반회계의 예산현액 5조 8,528억원중 지출액은 5조 6,087억원으로 지출비율은 95.8%로 나타남. 다음연도 이월은 2.9%, 1,690억원이 이월되었고, 나머지 1.3%인 752억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음
- 분야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90%이상의 집행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대규모 사업들이 주로 추진되고 있는 ‘수송및교통’분야와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각각 9.3%, 15.8%로 평균보다 3~5배가 넘는 다소 높은 이월비율로 인해 80%대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음
- 한편 과학기술분야는 불용율이 25.3%로, 이는 (재)인천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 1,406억원중 400억원이 미집행된 사항으로 일반회계 불용액의 53.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 대책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분야별 집행율 및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억원, %)



### < 일반회계 분야별 이월 및 불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분 야 별	예산현액 (구성비)	지출액 (집행율)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계	이월율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계	5,852,804 (100.0)	5,608,675 (95.8)	168,963	2.9	16,139	32,001	120,824	75,165	1.3
일반공공행정	1,383,706 (23.6)	1,381,247 (99.8)	200	0.0	200	-	-	2,260	0.2
공공질서및안전	37,426 (0.6)	36,270 (96.9)	828	2.2	115	713	-	328	0.9
교육	494,480 (8.4)	494,439 (100.0)	-	-	-	-	-	41	0.0
문화및관광	327,140 (5.6)	298,954 (91.4)	22,070	6.7	913	833	20,325	6,116	1.9
환경보호	139,808 (2.4)	134,814 (96.4)	2,590	1.9	2,176	414	-	2,404	1.7
사회복지	1,460,968 (25.0)	1,445,935 (99.0)	12,414	0.8	1,966	-	10,448	2,619	0.2
보건	111,350 (1.9)	111,315 (100.0)	-	-	-	-	-	34	0.0
농림해양수산	104,451 (1.8)	102,655 (98.3)	197	0.2	197	-	-	1,600	1.5
산업·중소기업	97,164 (1.7)	96,612 (99.4)	-	-	-	-	-	552	0.6
수송및교통	831,092 (14.2)	744,773 (89.6)	77,116	9.3	6,921	29,685	40,510	9,203	1.1
국토및지역개발	339,331 (5.8)	283,554 (83.6)	53,548	15.8	3,651	356	49,541	2,229	0.7
과학기술	158,221 (2.7)	118,219 (74.7)	-	-	-	-	-	40,002	25.3
예비비	2,749 (0.0)	- (0.0)	-	-	-	-	-	2,749	100.0
기타	364,917 (6.2)	359,888 (98.6)	-	-	-	-	-	5,029	1.4

- 조직별 불용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1% 미만의 불용율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평균보다 다소 높은 불용율을 보이고 있어, 불용액 발생은 예산집행과정에서 계획변경이나 낙찰차액 등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측면도 있으나 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헤칠 수 있는 바,
- 당초 무리한 예산확보나 과다편성은 없었는지, 사업계획 등 사전 준비가 철저하게 수립되었는지 등 불용액 발생원인을 철저히 재검토하여 향후에는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편성뿐 아니라 집행과정에 대해서도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또한 전체 집행잔액 752억원에 대한 발생 사유를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사유미발생 2.0% 15억원, 예산절감(유보액) 4.7% 35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9.7% 73억원 그리고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80.0%인 602억원을 차지하고 있음
  -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사업추진시 발생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세입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세출예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일반회계 조직별 불용액 발생 현황 >**

(단위 : 백만원, %)

조직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불용액) <sup>16)</sup>					
				계	불용율	계획변경등 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유보액)	집행잔액 (낙찰차액등)	보조금 집행잔액
계	5,852,804	5,608,675	168,963	75,165	1.3	1,473 (2.0)	3,526 (4.7)	60,158 (80.0)	7,258 (9.7)
의회사무처	10,893	10,495	0	398	3.7		1	397	
대변인실	9,547	9,504	0	43	0.5	2		41	
감사관실	388	383	0	5	1.3		2	3	
교육기획관실	497,973	497,927	0	47	0.0		29	18	
국제경기지원관실	636	633	0	4	0.6			4	
도시디자인추진단	5,468	5,425	40	4	0.1			4	
국제협력관실	9,728	8,977	0	752	7.7	500	7	245	
소통기획관실	697	515	0	182	26.1	175		7	
기획관리실	1,356,351	1,351,164	0	5,187	0.4		108	2,326	5
경제수도추진본부	341,678	300,246	0	41,432	12.1	1	72	40,594	762
안전행정국	160,683	159,078	200	1,405	0.9	75	205	1,117	8
보건복지국	585,231	582,378	1,640	1,213	0.2		21	502	690
여성가족국	889,568	878,517	10,448	603	0.1		8	286	309
건설교통국	687,770	607,173	72,061	8,537	1.2		59	6,233	2,245
문화관광체육국	220,930	192,957	22,070	5,903	2.7	419	2,088	3,282	114
도시계획국	192,332	151,915	39,650	768	0.4		223	69	476
환경녹지국	235,636	215,558	16,360	3,718	1.6		365	1,852	1,501
항만공항해양국	213,738	212,056	424	1,258	0.6		5	406	847
아시아경기지원본부	83,242	83,242	0	0	0.0				
소방안전본부	49,320	48,232	796	292	0.6	63		149	80
경제자유구역청	31,135	31,135	0	0	0.0				
인재개발원	5,420	5,250	0	170	3.1		24	146	
보건환경연구원	12,836	12,714	0	122	1.0		42	58	22
종합건설본부	50,430	44,836	4,796	798	1.6	211	49	538	
기타사업소 <sup>17)</sup>	201,173	198,370	479	2,324	1.2	29	218	1,880	197

16) 예비비 집행잔액(기획관리실 소관) 2,749백만원(3.6%)는 미포함



## 나) 특별회계

- 특별회계 예산현액 3조 4,476억원중 지출은 2조 4,532억원으로 집행율이 71.2%로 일반회계의 95.8%에 비해 매우 낮은 집행율을 보이고 있음
- 또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5,797억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6.8%로 일반회계 2.9%의 5배 넘는 높은 이월율을 보이고 있음
- 아울러 집행잔액은 4,147억원에 달하고 있어 일반회계 752억원의 5.5배가 넘는 규모로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이 12.0%로 나타나고 있음
- 특별회계의 경우 특정한 사업 운영을 위해 수입·지출을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특별회계<sup>18)</sup>의 경우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한다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나, 한해 예산의 30% 가까운 규모가 사용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처리 되는 것은 사업 추진에 이상은 없는지, 자금 운용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이월율이나 불용율이 과다한 특별회계의 경우 그 사유와 대책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날 경우 이에 대한 방지책 등 대책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7) 기타사업소 : 농업기술센터, 8개 지역소방서 및 소방안전학교, 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종합문화예술회관, 동부공원사업소, 서부공원사업소, 북부공원사업소, 미추홀도서관, 시립박물관,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수산자원연구소, 서울사무소, 수산사무소, 서부여성회관

18)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 특별회계 이월 및 불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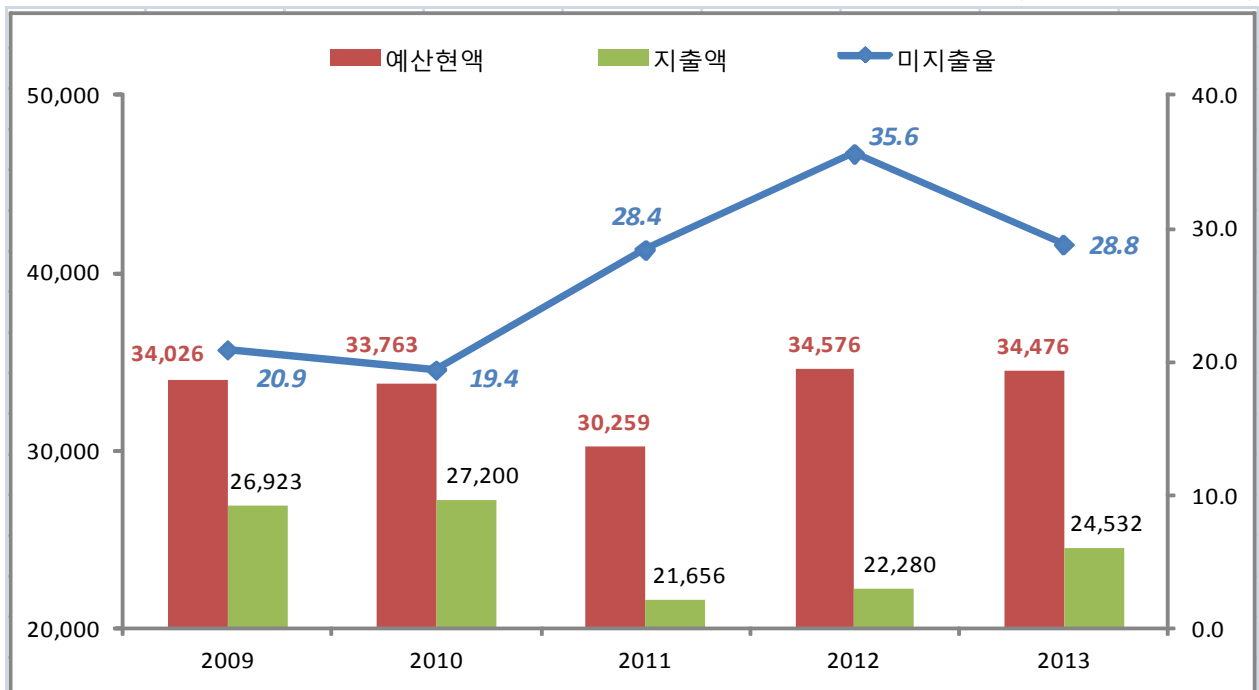
회계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계	이월율	명사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계	3,447,563	2,453,230	579,672	16.8	49,239	15,312	515,121	414,660	12.0
공기업특별회계	1768,363	1243,090	191,876	10.9	46,872	14,917	130,086	333,396	18.9
상수도사업	342,018	245,977	29,069	8.5	314	2,023	26,732	66,973	19.6
하수도사업	164,045	139,321	7,817	4.8	2,103	5,254	460	16,907	10.3
경제자유구역	930,642	668,549	154,990	16.7	44,456	7,640	102,894	107,103	11.5
지역개발기금	331,657	189,244	-	0.0	-	-	-	142,413	42.9
기타특별회계	1,679,200	1,210,140	387,796	23.1	2,367	395	385,035	81,264	4.8
학교용지부담금	16,033	5,588	-	0.0	-	-	-	10,445	65.1
인천대학교	4,951	4,220	-	0.0	-	-	-	731	14.8
의료급여기금	283,665	282,784	-	0.0	-	-	-	882	0.3
검단1지구	885	752	103	11.6	-	-	103	30	3.4
검단2지구	53,428	22,702	30,726	57.5	-	-	30,726	-	0.0
원당지구	2,252	232	1,810	80.4	-	-	1,810	210	9.3
당하지구	13,297	1,266	1,585	11.9	-	-	1,585	10,446	78.6
오류지구	7,547	6,258	1,124	14.9	-	-	1,124	165	2.2
마전지구	15,295	347	14,934	97.6	-	-	14,934	14	0.1
불로지구	5,531	2,517	2,433	44.0	-	-	2,433	581	10.5
도시교통사업	56,776	36,204	16,667	29.4	1,329	370	14,968	3,905	6.9
광역교통사업	48,468	37,339	-	0.0	-	-	-	11,128	23.0
도시철도사업	358,662	308,673	39,494	11.0	-	24	39,469	10,496	2.9
도시개발	5,736	926	350	6.1	350	-	-	4,460	77.8
장기미집행	966	-	688	71.2	688	-	-	278	28.8
기반시설	2,340	265	-	0.0	-	-	-	2,075	88.7
지하도상가	10,058	1,953	-	0.0	-	-	-	8,105	80.6
아시아경기대회	793,310	498,112	277,883	35.0	-	-	277,883	17,315	2.2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 한편 특별회계 연도별 예산현액 및 지출규모를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2009회계연도에 3조 4,026억원에서 2013회계연도에 3조 4,476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도 0.3%로 약간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지출액은 2009회계연도에 2조 6,923억원에서 2013회계연도에 2조 4,532억원으로 오히려 연평균 △2.3%의 감소를 보이고 있음
- 반면 미지출액은 2009회계연도에 7,103억원에서 2013회계연도에 9,943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도 8.8%로 지난 2012회계연도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매년 큰 폭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특히 미지출율도 2009회계연도에 20.9%에서 2013회계연도에 28.8%로 늘고 있어, 예산에 편성해 놓고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예산이 매년 큰 폭의 증가를 나타내는 원인파악 및 그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특별회계 연도별 지출액 및 미지출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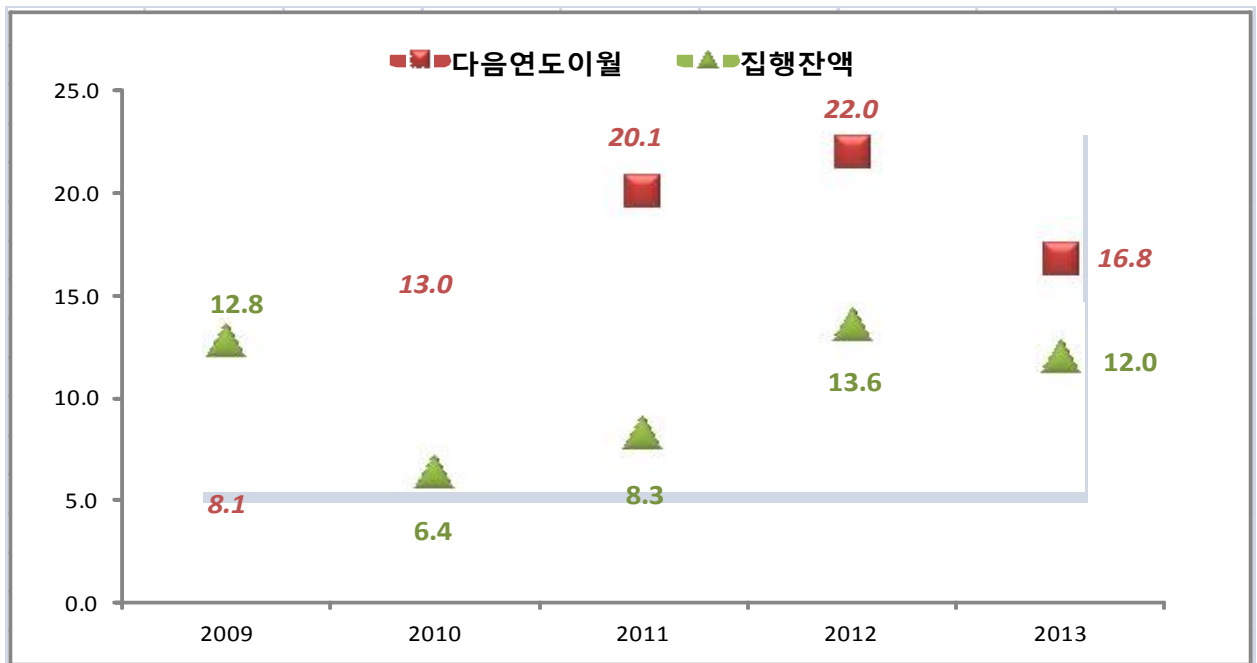
(단위 : 억원, %)



- 미지출액은 다음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으로 구분되는데, 특별회계의 연도별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살펴보면 집행잔액은 2009회계연도에 4,362억원에서 2013회계연도에 4,147억원으로 다소 감소한 반면,
- 다음연도 이월액은 2009회계연도에 2,741억원에서 2013회계연도에는 5,797억원으로 두배 넘게 증가하였고, 연평균 증가율도 20.6%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직전연도인 2012회계연도의 7,595억원보다는 다소 감소한 규모이지만 매년 5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당해 연도에 사용되지 못하고 매년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는 바,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이루어 졌는지, 자금 운용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 대규모로 발생되고 있는 이월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 및 집행잔액 추이 >

(단위 : %)



< 특별회계 연도별 지출액 및 미지출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평균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예산현액 (A)	3,342,011	3,402,615	3,376,348	3,025,921	3,457,606	3,447,563	0.3
지출액 (B)	2,451,809	2,692,314	2,719,983	2,165,568	2,227,952	2,453,230	△2.3
	73.4	79.1	80.6	71.6	64.6	71.2	
미지출액 (A-B)	890,201	710,301	656,365	860,353	1,229,654	994,333	8.8
	26.6	20.9	19.4	28.4	35.6	28.8	
다음연도 이	532,386	274,111	439,239	609,424	759,486	579,672	20.6
	15.9	8.1	13.0	20.1	22.0	16.8	
집행잔액 (불용액)	357,815	436,191	271,125	250,929	470,168	414,660	△1.3
	10.7	12.8	6.4	8.3	13.6	12.0	

## 6. 예산 이용·전용·이체

### < 일반회계 연도별 이용·전용·이체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평균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계	건수	285.6	504	289	241	198	197	△20.9
	금액	293,823	517,487	233,241	229,482	415,310	73,594	△38.6
예산 이용	건수	9.6	33	15	0	0	0	△100.0
	금액	143	659	58	0	0	0	△100.0
예산 전용	건수	31.6	30	36	21	47	24	△5.4
	금액	4,691	8,073	1,453	8,601	2,622	2,708	△23.9
예산 이체	건수	244.6	441	238	220	151	173	△20.9
	금액	288,988	508,755	231,730	220,881	412,688	70,886	△38.9

### 가) 예산 이용

-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인 정책사업 상호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19) 단서조항에 따라 당초 예산 심의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부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등에 대하여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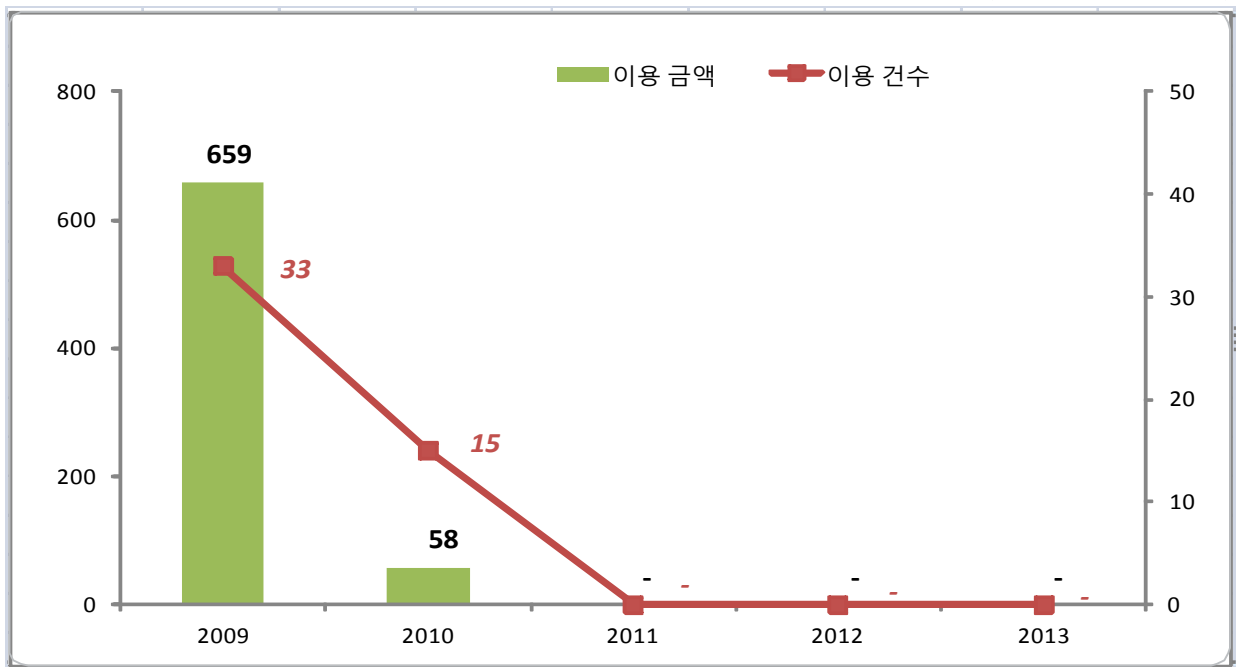
19)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 적절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2011회계연도 이후 단 한건의 예산도 이용하여 집행된 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있는바,
- 관련법에 따라 특정 항목의 예산부족 등에 신속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고, 의회의 예산안 심의시 기 의결된 사항으로 급변하는 지역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시에는 예산 이용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일반회계 연도별 예산 이용 현황 >

(단위 : 억원,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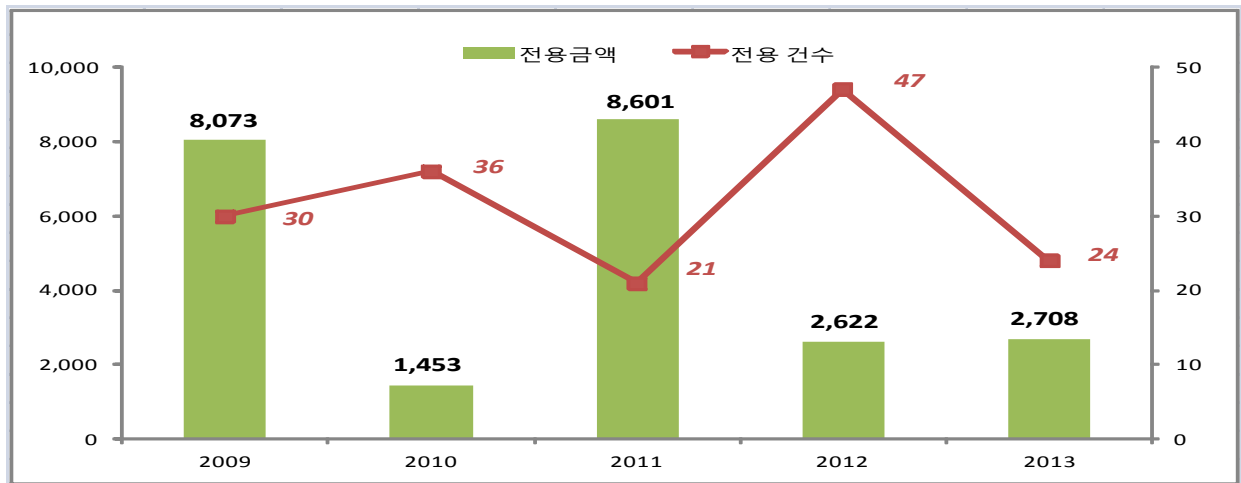


## 나) 예산 전용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sup>20)</sup> 제1항에 따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 동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sup>21)</sup> 규정에 따라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등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고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편성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회의 사전 심의나 보고 없이 예산을 변경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사후에 그 내용을 결산서에 명기토록 규정하고 있는 제도임

< 일반회계 연도별 예산 전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건)



### 20)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 2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1. 인건비
  2. 시설비와 부대비
  3.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 ②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 지난 2012회계연도 보다는 약간의 증가가 있었지만 연도별 전용 현황을 보면 2009회계연도에 30건에 81억원이 전용된 반면 2013 회계연도에는 24건에 27억원만 전용되는 등 연평균 △23.9%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전용 건수나 전용액이 2011회계연도 이후 대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당초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전용 발생 사유가 대폭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민속문화 시설관리」 사업의 경우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민간단체 위탁 결정이 관련 단체간 의견차로 인해 당초 편성된 민간위탁금으로 사용치 못하고 전용하여 사용하였다고는 하나,
- 2012회계연도에 186백만원을 전용한데 이어 2013회계연도에도 150백만원을 전용 사용하고, 특히 2013회계연도에만 동일한 사업에 대해, 동일한 과목으로 3회나 전용한 것은 무계획적인 예산집행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 대책 등 재발방지를 위해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민속문화 시설관리」 사업 전용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사업명	예산과목 (통계목)	예산액	전용액		전용사유
				감	증	
2012	민속문화 시설관리	민간위탁금	1,255,690	185,628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직영운영에 따른 변경
		사무관리비			32,182	
		공공운영비			87,037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46,609	
		자산및물품 취득비			19,800	
2013	"	민간위탁금	1,012,694	149,874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으로 변경 ① '13.1.23 - 36,847천원 ② '13.4.15 - 37,470천원 ③ '13.7.29 - 75,557천원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149,874	

※ 결산서 762쪽 참조

- 예산의 전용은 관련 법령에 의거 사업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없이 특정사업의 수행수단을 변경하여 예산집행에서 발생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이나
  - 예산전용이 의회의 승인대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향후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 전용, 이용, 이체 등 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에는 중앙정부<sup>22)</sup>와 같이 변경내역을 분기별로 제출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2013회계연도 전용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사 업 명	당초예산액	전용액		전용 승인일	전용사유
			감	증		
계	총 24건	150,361,546	2,708,194	2,708,194		
투자유치 담당관실	투자유치 홍보 활동 (행사운영비)	20,000	20,000		5.16	사업추진방식 변경
	투자유치 홍보 활동 (민간위탁금)			20,000		
총 무 과	미래지향적 복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10,190,500	8,638		10.29	친선체육대회 참가
	취미 동호회 지원 (사무관리비)	8,704		8,638		
총 무 과	미래지향적 복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10,181,862	13,365		10.29	친선체육대회 참가
	취미 동호회 지원 (국내여비)			13,362		
총 무 과	미래지향적 복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10,240,500	10,000		10.11	위탁교육비 부족
	국내 교육훈련 (사무관리비)	532,000		10,000		

22)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및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④ <중략> 전용, 이용 또는 이체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이용 또는 이체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사업명	당초예산 액	전용액		전용 승인일	전용사유
			감	증		
총 무 과	미래지향적 복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10,230,500	40,000		9.24	직접사업으로 전환
	국내 교육훈련 (공무원 교육여비)	443,900		40,000		
장애인복지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심사비용 지원(민간자본보조)	25,000	25,000		8.29	중증장애인자립 생활센터 시차체 지원
	장애인 단체활성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000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자립체험홈 설치 (자치단체자본보조)	130,000	10,000		8.29	중증장애인자립 생활센터 시차체 지원
	장애인 단체활성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000		10,000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차량 구입(자신맞춤폼취득비)	160,000	5,000		8.29	중증장애인자립 생활센터 시차체 지원
	장애인 단체활성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5,000		5,000		
보건정책과	공공보건 인력관리 (행사운영비)	1,400	616		2.25	교육비 시부담금 부족
	공공보건 인력관리 (민간위탁금)	5,000		616		
보건정책과	만성감염병 관리 (민간경상보조)	83,000	15,000		10.1	대한에이즈협회 인천지부 해체
	만성감염병 관리 (행사운영비)			18,000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모델 시범운영(자치단체경상보조금)	60,000	20,000		2.25	市 청소년수련 관 선정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모델 시범운영(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0,000		
문화예술과	독서문화활성화 (행사운영비)	53,000	35,500		3.12	사업추진방식 변경
	독서문화활성화 (민간경상보조)			35,500		
문화재과	민속문화시설 관리 (민간위탁금)	1,012,694	36,847		1.23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시설공단 대행사업 추진
	민속문화시설 관리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6,847		
문화재과	민속문화시설 관리 (민간위탁금)	938,377	75,557		7.29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시설공단 대행사업 추진
	민속문화시설 관리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74,317		75,557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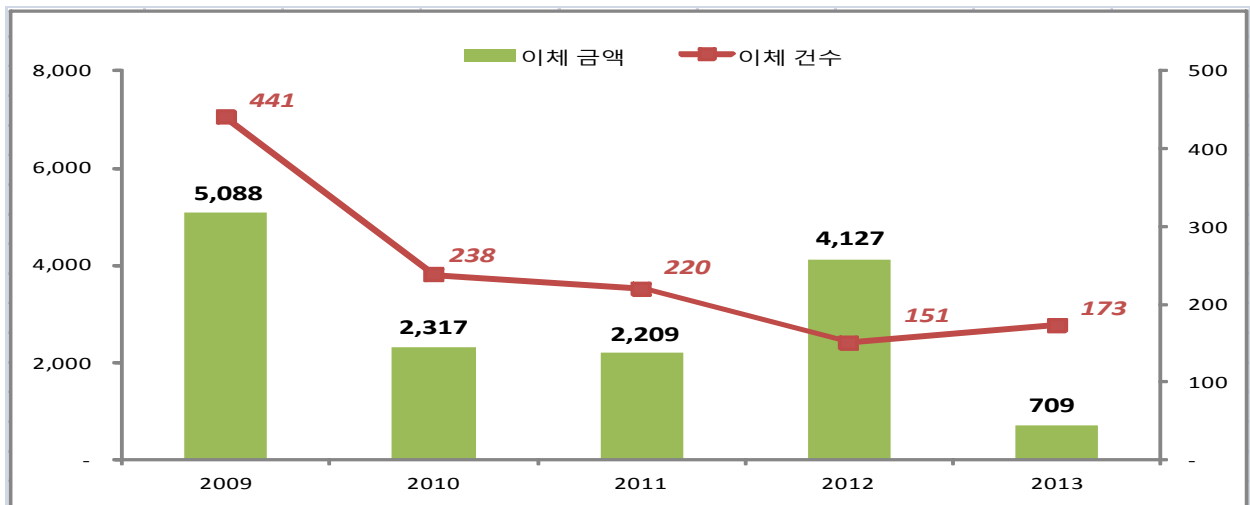
소관부서	사업명	당초예산 액	전용액		전용 승인일	전용사유
			감	증		
문화재과	민속문화시설 관리 (민간위탁금)	975,847	37,470		4.15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시설공단 대행사업 추진
	민속문화시설 관리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6,847		37,470		
문화재과	인천정명600년 기념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66,900	50,000		3.13	사업 수행단체 변경
	인천정명600년 기념사업 (민간경상보조)	369,000		50,000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위탁관리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4,410,812	1,433,773		7.31	박태환수영장 등 관리위탁 기관 변경
	체육시설 위탁관리 (민간위탁금)	8,014,138		1,433,773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위탁관리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2,977,039	288,418		10.16	남동력비경기장 위탁관리 운영 자 선정
	체육시설 위탁관리 (민간위탁금)	9,447,911		288,418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위탁관리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2,688,621	465,442		10.17	남동체육관 운영자 선정
	체육시설 위탁관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65,442		
전국체전 운영과	전국체전 준비운영 (행사운영비)	7,734,529	13,900		10.1	의료진 배치에 따른 보상금 지 급
	전국체전 준비운영 (행사실비보상금)	37,160		13,900		
농업기술센터	선도농가 경영(강소농) 육성 (행사실비보상금)	37,500	31,000		3.12	중앙부처 예산 편성 지침 변경
	선도농가 경영(강소농) 육성 (행사운영비)	32,500		31,000		
종합건설본부	설해예방대책 추진 (사무관리비)	342,400	14,000		9.24	배상금 지급 건 수 증가
	소송비용 부담 (배상금등)	80,000		14,000		
종합건설본부	인력운영비 (보수)	7,747,754	16,000		11.14	직급보조비 부 족
	인력운영비 (직급보조비)	280,560		16,000		
서부여성회관	청사시설유지관리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96,714	39,671		11.6	공공요금 부족
	청사시설유지관리 (공공운영비)	34,560		39,671		

## 다) 예산 이체

-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sup>23)</sup> 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서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제도임

< 일반회계 연도별 예산 이체 현황 >

(단위 : 억원, 건)



- 연도별 이체현황을 살펴보면 2009회계연도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난 2012회계연도 보다는 건수는 다소 증가했지만 이체금액은 대폭 감소하고 있음
- 이는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이체 사유가 줄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법령에 규정된 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으므로 사유 발생시에는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23)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과 예산 이체)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다.

## 7. 계속비 집행

-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에 진행된 계속비 사업은 39건으로 예산액은 1,771억원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 1,376억원과 예비비 사용액 12억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158억원임
- 2013회계연도중 지출총액은 예산현액의 58.6%인 1,851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8.4%인 1,212억원이고 집행잔액은 94억원으로 나타남
- 총 39건의 계속비 사업중 2013회계연도중 종료된 사업은 15.4%인 6건이고 나머지 84.6%인 33개의 사업은 계속 진행중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중 2009년 이전에 시작된 6차연도 이상된 사업은 15건으로 가장 많고 5차연도 4건, 4차연도 6건 등으로 나타남

### <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 시작연도 현황 >

(단위 : 건 / %)

구 분	계	'09 이전 (6차 이상)	2009년 (5차연도)	2010년 (4차연도)	2011년 (3차연도)	2012년 (2차연도)	2013년 (1차연도)
총 계	39 (100.0)	17 (43.6)	5 (12.8)	8 (20.5)	3 (7.7)	3 (7.7)	3 (7.7)
계속사업	33 (84.6)	15 (38.5)	4 (10.3)	6 (15.4)	3 (7.7)	2 (5.1)	3 (7.7)
종료사업	6 (15.4)	2 (5.1)	1 (2.6)	2 (5.1)	- (0.0)	1 (2.6)	- (0.0)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42조<sup>24)</sup> 규정에 의거 공사나 제도, 그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하지 않는 한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5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의 절반에 가까운 19건이 연한을 넘겨 계속 진행중에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는 계속비 사업이 적정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사업기간이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및 사업진행사항에 대한 검토로 문제점 도출 및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용종사거리 지하철도 건설 등 일부사업의 경우 2013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고사하고 전년도 이월사업비도 전액 지출하지 못하여 2012회계연도 보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오히려 늘어난 사업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바, 이는 2013연도에 신규로 편성된 예산을 전혀 지출하지 못하고 전액 이월됐다고도 할 수 있음
- 이는 부채 증가로 신규사업 추진이 거의 불가능한 시 재정상황에서 천억원이 넘는 자금이 매년 활용치 못하고 사장된다고 볼 수 있어 계속비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방법이나 문제점 및 지속추진 여부 등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24)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도,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당해년도 예산액보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큰 사업 현황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

소관부서	사업명	사업시작년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사업 비 (B)	예산현 액 (A+B)	지출 액 (C)	다음연 도이월 액 (A+B- C)	예산액대 비 이월율 [(A+B-C) /A]
계			23,938	44,060	67,998	30,843	37,489	156.6
						45.4	55.1	
도로과	용중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09년	310	11,221	11,531	8,415	3,116	1005.2
						73.0	27.0	
도로과	검단우회도로~오류지구간 도로개설	09년	2,308	7,901	10,209	3,754	6,456	279.7
						36.8	63.2	
공원 녹지과	연희공원 조성	09년	415	343	758	197	562	135.4
						26.0	74.1	
수질보전 하천과	남동유수지친수공간조성사업	2009	872	563	1,435	436	999	114.6
						30.4	69.6	
체육 진흥과	국제빙상경기장 건립	2010	9,764	10,669	20,433	6,796	13,969	143.1
						33.3	68.4	
노동 정책과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2단계)	2011	8,840	12,363	21,203	10,755	10,448	118.2
						50.7	49.3	
도로과	강화북단 대신~당산간 도로개설(접경권역)	2012	1,429	1,000	2,429	490	1,939	135.7
						20.2	79.8	



## <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 현황 >

2009년 이전사업    
  2013년중 종료사업    
 (단위 : 백만원 / %)

소관부 서	사 업 명	사업 시작 년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 액	지출액 (지출율)	다음연 도이월 액 (이월율)	집행 잔액
				전년도 이월사업비	예비비 사용				
계	총 39건		177,063	137,592	1,177	315,832	185,108 58.6	121,242 38.4	9,381
노 인 정 책 과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2단계)	2011	8,840	12,363		21,203	10,755 50.7	10,448 49.3	
교 통 기 획 과	백운역광장 조성사업	2010	2,304	260	1,177	3,741	3,518 94.0	0.0	222
도 로 과	인천 서구~김포산간 도로개설	09년	12,654	4,478		17,132	13,828 80.7	3,303 19.3	
도 로 과	초지대교~온수리간 도 로개설	09년		163		163	15 9.2	131 80.4	16
도 로 과	초지대교~인천간 도로 개설	09년	10,702	2,425		13,127	11,978 91.2	325 2.5	723
도 로 과	황창~인화간 도로개설 (4-1공구)	2011		739		739	229 31.0	510 69.0	
도 로 과	강화북단 대산~당산간 도 로개설(접경지역)	2012	1,429	1,000		2,429	490 20.2	1,939 79.8	
도 로 과	부안교차로 재건설	09년	9,248	3,969		13,217	12,206 92.4	0.0	1,011
도 로 과	신흥동 삼야파트~동국 재강간 도로개설	09년		510		510	1 0.2	509 99.8	
도 로 과	송현동 누리파트앞 도로 확장	09년		54		54	0.0	54 100.0	
도 로 과	용중거리 지하차도 건설	09년	310	11,221		11,531	8,415 73.0	3,116 27.0	
도 로 과	서부간선도로 도로개설	2010		302		302	0.0	302 100.0	
도 로 과	대한항공유류고~봉수대길 간 도로개설	2010		68		68	0.0	68 100.0	
도 로 과	가좌동 염곡길 도로확장	2010	29	33		62	29 46.8	33 53.2	
도 로 과	도림동 논개길 도로확장	2009	2,048	1,662		3,710	3,348 90.2	363 9.8	
도 로 과	도시철도2호선 204공구 일원 서쪽으로 확장	2012	2,000			2,000	26 1.3	1,974 98.7	
도 로 과	용암거리 지하차도 건설	09년	5	12,215		12,220	1,999 16.4	10,221 83.6	
도 로 과	북항교차로 건설	2009	6,594	4,509		11,103	6,338 57.1	4,765 42.9	
도 로 과	검단우회도로~오류지구간 도로개설	09년	2,308	7,901		10,209	3,754 36.8	6,456 63.2	

(단위 : 백만원 / %)

소관부 서	사 업 명	사업 시작 년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 액	지출 액	다음연 도이월 액	집행 잔액
				전년도 이월사업비	예비비 사용				
도 로 과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 도로간 도로확장	2010		274		274	0.0	274 100.0	
도 로 과	검단산업단지~검단 IC간 도로개설	2010		283		283	0.0	283 100.0	
도 로 과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 하차도 건설	2013		178		178	117 65.7	61 34.3	
도 로 과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 설 3차(1공구)	2009	8,800	2,506		11,306	5,787 51.2	5,519 48.8	
도 로 과	송도해안도로확장	09년		242		242	0.0	234 96.7	8
도 로 과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 축 사업	2010	1,290	5,857		7,147	860 12.0	0.0	6,287
도 로 과	서림학교 뒤편 도로구조 개선사업	09년		70		70	0.0	70 100.0	
도 로 과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 사업	2009	1,000	3,073		4,073	3,094 76.0	0.0	979
문화재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 립	09년	7,400	5,939		13,339	6,651 49.9	6,773 50.8	△85
체 육 진 흥 과	국제 방향장기장 건립	2010	9,764	10,669		20,433	6,796 33.3	13,969 68.4	△332
도 시 계 획 과	2020년 도시관리계획 정 비용역	2011	600	100		700	700 100.0	0.0	
지 역 개 발 과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09년	70,000	25,615		95,615	56,119 58.7	39,496 41.3	
수질보전 하 천 과	자연형하천조성사업	09년		944		944	69 7.3	875 92.7	
수질보전 하 천 과	남동유수지찬수공간조성사 업	09년	872	563		1,435	436 30.4	999 69.6	
수질보전 하 천 과	자방하천정비사업	09년	7,365	12,229		19,594	13,997 71.4	5,049 25.8	548
수질보전 하 천 과	선형천(2단계) 수행상습지 개선사업	2013	4,505			4,505	2,693 59.8	1,812 40.2	
공 원 녹 지 과	생활권 주변 녹화사업	2008	5,801	3,700		9,501	9,497 100.0	0.0	4
공 원 녹 지 과	소래습지생태공원 조성	2013	780			780	31 4.0	749 96.0	
공 원 녹 지 과	연희공원 조성	09년	415	343		758	197 26.0	562 74.1	
용유무의 개 발 과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	2012		1,135		1,135	1,135 100.0	0.0	

※ 2013회계연도 결산서 777~832쪽 참조

- 2013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총 34건으로 예산액 5,850억원과 이월액 5,559억원을 합해 예산현액은 1조 1,409억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65.3%인 7,456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3.7%인 3,850억원으로 나타남
- 특정 세입으로 특정사업을 운영하는 특별회계의 특수성상 계속비 사업이 많고 또한 장기간 진행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1회계연도 동안 지출이 전혀 없거나 있어도 미미한 사업들의 경우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13회계연도 특별회계 계속비 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 %)

회계명	사업명	사업 시작 년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지출율)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율)	집행 잔액
계	총 34건		584,994	555,988	1,140,982	745,598 65.3	385,080 33.7	10,310
감년자구	감년자구 기반시설 조성	09년		630	630	600 95.2		30
"	감년자구 환지청산	2013	255		255	152 59.6	103 40.4	
감년자구	감년자구 기반시설 조성	09년	289	107	396	98 24.7	298 75.3	
"	감년자구 환지청산	09년	29,346	23,499	52,845	22,427 42.4	30,418 57.6	
감년자구	감년자구 기반시설 관리	09년		9	9	02 16	9 98.4	
완당자구	완당자구 환지청산	09년		2,252	2,252	232 10.3	1,810 80.4	210
당하자구	당하자구 기반시설 조성	09년	816	800	1,676	602 35.9	1,074 64.1	
"	당하자구 환지청산	09년		1,050	1,050	540 51.4	511 48.7	
오류자구	오류자구 기반시설 조성	09년	6,717		6,717	5,674 84.5	1,042 15.5	1
"	오류자구 기반시설 관리	09년	155		155	18 11.6	76 49.0	61
"	오류자구 환지청산	2009	100		100	94 94.0	6 6.0	
마잔자구	마잔자구 기반시설 조성	09년		3,340	3,340	250 7.5	3,090 92.5	
"	마잔자구 환지청산	09년		11,041	11,041	2 0.0	11,039 100.0	
"	마잔자구 환지분	09년	315	210	525		525 100.0	

(단위 : 백만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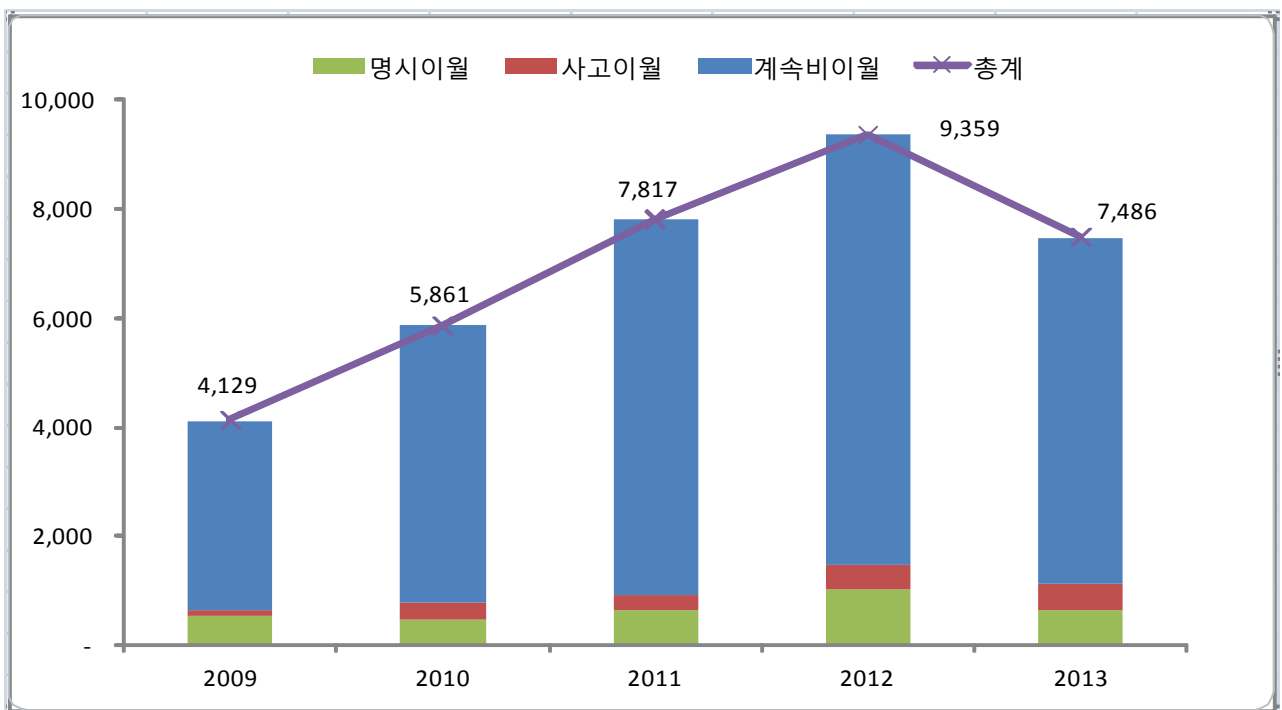
회계명	사업명	사업 시작 년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사업 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 도이월 액	집행 잔액
마전지구	마전지구 지적확정 측량 추진	09년		280	280		280 100.0	
불로지구	불로지구 기반시설 조성	09년		646	646	280 43.3	366 56.7	
"	불로지구 환지청산	09년		3,355	3,355	2,145 63.9	1,210 36.1	
"	불로지구 기반시설 관리	09년	857		857		857 100.0	
"	불로지구 지적확정측량 추 진	09년		86	86	37 43.0		49
도시교통 사업	남동권역 버스공영차고 지 조성사업	09년	2,400	6,945	9,345		9,345 100.0	
"	서북권역 버스공영차고 지 조성사업	2010	24	3,245	3,269		3,269 100.0	
"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 지 조성사업	2010	2,353		2,353		2,353 100.0	
도시철도 사업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건설공사)	09년	67	29,107	29,174	1,227 4.2	27,947 95.8	
"	인천도시철도2호선(건설 공사)	2009	182,500	12,078	194,578	190,783 98.0	3,795 2.0	
"	차량운행시스템 구축	09년	59,300	361	59,661	59,366 99.5	295 0.5	
"	서울지하철7호선 인천지 역 연장건설	09년	3,702	26,041	29,743	24,785 83.3		4,958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 남연장선 건설	2011	15,400	1,641	17,041	4,610 27.1	7,431 43.6	5,000
아시아 경기대회	대회관련 건설지원	2009	150	123	273	155 56.8	117 42.9	1
"	도로 등 교통망 확충	2011	12,019	73,199	85,218	40,480 47.5	44,738 52.5	
"	방송보도시설(MMC) 설치	2013	2,278		2,278	56 2.5	2,222 97.5	
"	실외경기장 건설	2013	9,998		9,998	67 0.7	9,931 99.3	
"	경기장 개보수 공사	2013	2,878		2,878	1,477 51.3	1,401 48.7	
"	왕산요트경기장 건설	2012	11,809		11,809	5,577 47.2	6,232 52.8	
"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	09년	241,266	355,833	597,099	383,859 64.3	213,240 35.7	

## 8. 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

- 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월 사유, 기간 및 의회 사전승인 여부 등에 따라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로 구분하고 있음
- 2013회계연도의 이월액은 직전년도인 2012회계연도 9,359억원보다 20.0%인 1,873억원이 감소된 7,486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하지만 연도별 이월액을 살펴보면 2009회계연도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연평균 증가율도 16.0%에 달하고 있음

< 연도별 이월액 추이 >

(단위 : 억원)



## < 연도별 이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평균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b>총 계</b>	693,058	412,899	586,149	781,668	935,941	748,635	16.0
명 시 이 월	67,485	55,539	47,807	64,123	104,578	65,378	4.2
사 고 이 월	31,310	8,670	30,612	27,855	42,101	47,313	52.8
계속비이월	594,263	348,690	507,730	689,690	789,262	635,944	16.2
<b>일 반 회 계</b>	160,672	138,789	146,910	172,244	176,455	168,963	5.0
명 시 이 월	13,914	12,326	21,937	8,941	10,229	16,138	7.0
사 고 이 월	17,734	1,704	6,649	16,797	31,521	32,001	108.2
계속비이월	129,024	124,759	118,324	146,506	134,705	120,824	△0.8
<b>특 별 회 계</b>	532,386	274,110	439,239	609,424	759,486	579,672	20.6
명 시 이 월	53,571	43,213	25,870	55,182	94,349	49,239	3.3
사 고 이 월	13,576	6,966	23,962	11,058	10,580	15,312	21.8
계속비이월	465,240	223,931	389,407	543,184	654,557	515,121	23.2

### 가) 명시이월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sup>25)</sup>에 근거하여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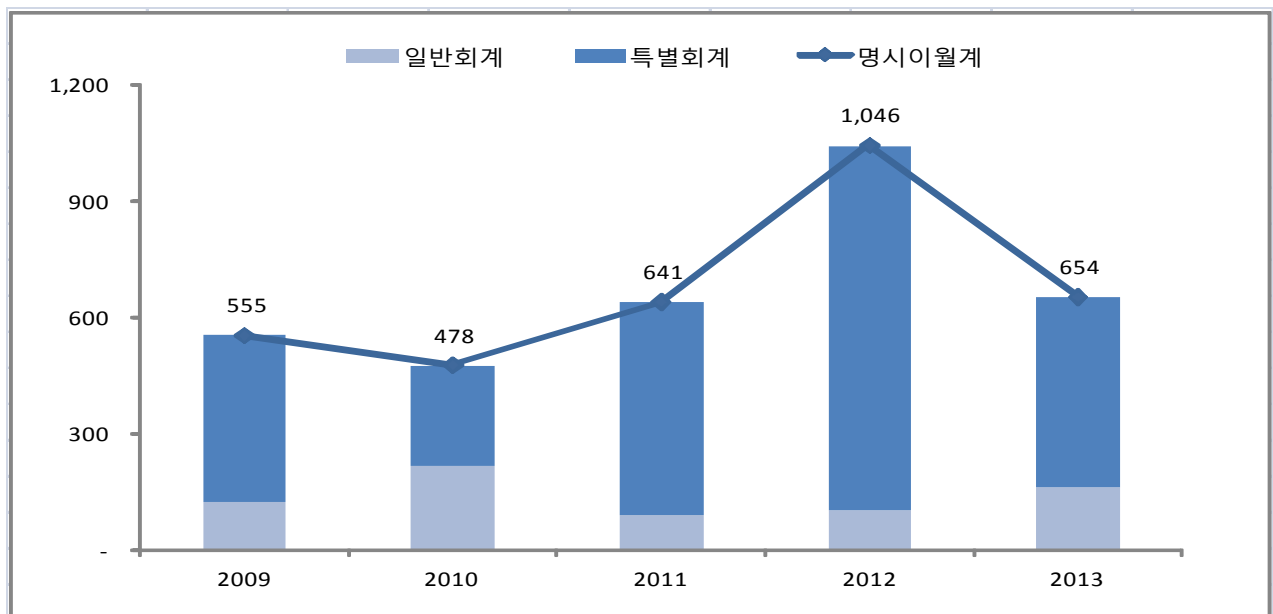
25)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명시이월 규모는 지난 2012회계연도의 1,046억원보다 큰폭인 37.5%, 392억원이 감소한 654억원을 이월했으며, 연평균 증가율도 4.2%로 증가폭이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음
- 하지만 명시이월 사업들의 이월사유가 대부분 행정절차 미이행, 절대공기 부족, 준공시기 미도래, 부지 미확보(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이는 당초 사업추진을 위해 계획수립시에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고 또한 사전에 각종 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예산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먼저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안일한 발상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고, 특히 확보된 예산이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전액 이월된 사업들의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해 이월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연도별 명시이월액 추이 >**

(단위 : 억원)



## < 2013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 현황 >

###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명시이월 액	이월사유
계		61,750,375	45,463,789	16,138,351	
도시디자인추진단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 개발	100,000	60,000	40,000	디자인설계용역('13.9~'14.1) 준공후 시범설치
자치행정과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 지원	200,000		200,000	특별법에 의한 국제기구 승인 미확정으로 사업시기 순연
보건정책과	구강보건 사업(수돗물불소농도 조정사업 여론조사 비용)	40,000		40,000	행정절차 기간소요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보건정책과	치매예방 관리 [노인치매병원(1시립) 확충]	1,600,000		1,600,000	공사시행주체 변경으로 사업시기 조정
교통기획과	첨단교통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ATMS)	496,320	405,989	90,331	장비성능 조정후 평가('14.1~'14.12)
교통기획과	광역교통정보기반 확충사업	4,213,578	2,036,689	2,176,889	UTIS단말기 공급물량 부족에 따른 지연
교통기획과	안전운행장치보급	2,887,000	942,750	1,944,250	사업기간 연장(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택시유류대 보조	29,100,000	28,177,413	922,587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의거 집행잔액 이월
버스정책과	버스유류대 보조	2,500,000	2,484,515	15,485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의거 집행잔액 이월
버스정책과	저상버스 구입 보조	4,667,476	4,567,476	100,000	운송업체의 정비시설 주문제작 기간 지연
버스정책과	버스정보관리센터(BIS/BMS)운영	517,000	290,949	226,051	준공시기미도래('13.8~'14.6)
버스정책과	버스정보관리시스템(BIS/BMS) 구축사업	2,183,000	997,701	1,185,059	준공시기미도래('13.8~'14.6)
문화예술과	서구마전도서관 건립	280,000		280,000	선행절차 지연(북항토지매각 지연)
문화재과	문화재 정밀실측 조사 및 실측도서 작성사업	250,000	17,500	232,500	준공시기미도래('13.10~'14.3)
체육진흥과	장애인 체육관 건립	400,000		400,000	행정절차 이행
도시계획과	2020년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751,637	715,491	36,146	준공시기 미도래('13.7~'14.5)
도시재생과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208,000	90,222	117,778	준공시기 미도래
환경정책과	환경행정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142,225		142,225	관련지침 개정지연(환경부)으로 공기 부족, 행정절차이행 중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명시이월 액	이월사유
환경정책과	교통소음 저감사업	500,000		500,000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기간 부족
자원순환과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	4,950,000	3,416,000	1,534,000	준공시기 미도래('13.4~'15.5)
수질보전 하천과	전국체전 실내무도 AG 대비 승기천 환경개선 사업	453,750		453,750	복합발효 효수소수 구입 지연
공원녹지과	학교숲 조성	3,010,800	7,200	3,003,600	행정절차 이행 중(보상협의)
공원녹지과	산지관리	287,000	91,200	75,800	준공시기 미도래('13.11~'14.5)
항만공항 정책과	도시 및 기업물류 프로세스 개선	536,300	276,300	260,000	국고보조사업 추경반영으로 절대공기 부족
119 특수 구조단	헬기 유지관리	271,917	178,178	83,218	사업기간부족(납품8개월소요) 헬기제작사(해외)구매품(19종 19점)
농업기술 센터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및 시설설치	217,143	117,142	100,000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행정절차 이행 후 용역추진
강화소방서	소방관서 신설	609,579	560,988	32,000	마니산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부지 무상임대 사용승인 지연
여성복지관	이동복지관 설치	326,000		326,000	국비의 하반기(11/2) 내시로 절대공기 부족
수산사무소	시험양식 사업	32,650	25,766	6,884	월동시험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13.6~'14.6)
수산사무소	위해생물구제 사업	9,000	1,023	7,977	국고보조금 교부시기 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
수산사무소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10,000	3,299	6,000	양식어가 사업 중도포기 및 배합사료 사용량 감소로 사업기간 부족

□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계명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명시이월 액	비고
계			4,388,254	1,501,640	2,366,798	
도시교통사업	교통기획과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1,776,724	1,309,993	256,849	
"	교통관리과	공영노외주차장 건설	1,320,530	91,747	1,071,849	
도시개발	도시재생과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 사업	450,000	99,900	350,100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도시계획과	매수청구 토지보상	841,000		688,000	

□ 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계명	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다음연도 명시이월 액	이월사유
계		77,949,022	23,738,936	46,872,412	
상수도 사업	길상정수장 배수지부지 매입	154,200		154,200	도시계획시설결정 미완료
"	길상정수장 지상탱크 300톤 설치	160,000		160,000	설치부지 미확보
하수도 사업	승기하수처리장 악취 개선 사업	500,000	76,298	423,702	준공시기 미도래
"	굴포천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2,179,000	500,000	1,679,000	사도장 선정지연 공시준공 기한연기('14.1→14.4)
경제자유구역 사업	IFEZEL자인 특화거리시범사업	1,005,000		1,005,000	사업대상지 선정 지연
"	I-Tower 홍보관 설치공사	2,622,740	98,200	2,524,540	준공시기 미도래
"	GCF 국제회의장 물품구입	150,480		150,480	회의장 인테리어 공사 완료 시기 연기
"	송도 유비쿼터스 시범도시 5단계 조성사업	1,140,753		1,140,753	준공시기 미도래
"	송도지구 자전거 코스개발	705,000	35,421	669,579	준공시기 미도래
"	송도7공구 전송설비 및 방범 CCTV 구축사업	735,499	290	735,209	준공시기 미도래
"	청라 BL 토지 매입	520,590		520,590	토지매입 협의 지연
"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사업	28,935,000	11,268,327	10,329,000	집행시기 미도래
"	송도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수립 용역	300,000		300,000	미매각토지 매각 활성화 대처방안 등 추가 변경 계획
"	경인지역 공동어업보상 분담금	6,500,000		6,500,000	어업보상 대상기관 및 사업확대에 따른 분담금
"	송도하수처리장~인천대간 도로건설공사	3,864,000	735,745	3,128,255	준공시기 미도래
"	광고물 지정(임시) 게시대 설치	50,000		50,000	경관시스템 구축용역 완료후 설치
"	제23호 근린공원 조성공사	20,240,000	9,820,892	10,419,108	준공시기 미도래
"	문화공원1지구 조성공사	7,789,000	1,196,263	6,592,737	준공시기 미도래
"	센트럴공원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397,760	7,500	390,260	준공시기 미도래

○ 일부 사업의 경우 2012회계연도에 이어 2013회계연도에도 명시이월되는 등 연례 반복적으로 이월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 이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지방재정에서 정하고 있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sup>26)</sup>’을 예외적으로 승인해주고 있는 명시이월 제도를 남용한다고도 할 수 있는 바, 매년 반복적으로 명시이월해야만 하는 사유와 개선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 명시이월 반복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회계구분	부서명	사업명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이월사유
계		6건		78,118,082	31,859,707	32,743,330	
일반회계	교 통 기획과	광역교통정보기반 확충사업	2012	1,000,000	70,707	929,293	준공시기 미도래
			2013	4,213,578	2,036,689	2,176,889	UTIS단말기 공급물량 부족에 따른 지연
	"	안전운행장치 보급	2012	1,160,000	806,800	353,200	사업대상 확정후 추진
			2013	2,887,000	942,750	1,944,250	사업기간 연장(국토교통부)
도시교통사업특별	교 통 기획과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2012	1,940,250	1,243,631	238,000	보상협의 지연
			2013	1,776,724	1,309,993	256,849	
	교 통 관리과	공영노외주차장 건설	2012	326,000	105,405	200,000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른 설계비 이월
			2013	1,320,530	91,747	1,071,849	
하 수 도업	하수과	골포천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2012	12,690,000	4,166,000	6,345,000	부천시 공정 지연
			2013	2,179,000	500,000	1,679,000	사토장 선정지연, 공사준공기한연기('14.1→'14.4)
경제자유구역사업	경 제 자 구 역 청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사업	2012	19,690,000	9,317,658	7,220,000	집행시기 미도래 및 시비부족
			2013	28,935,000	11,268,327	10,329,000	집행시기 미도래

※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액

26)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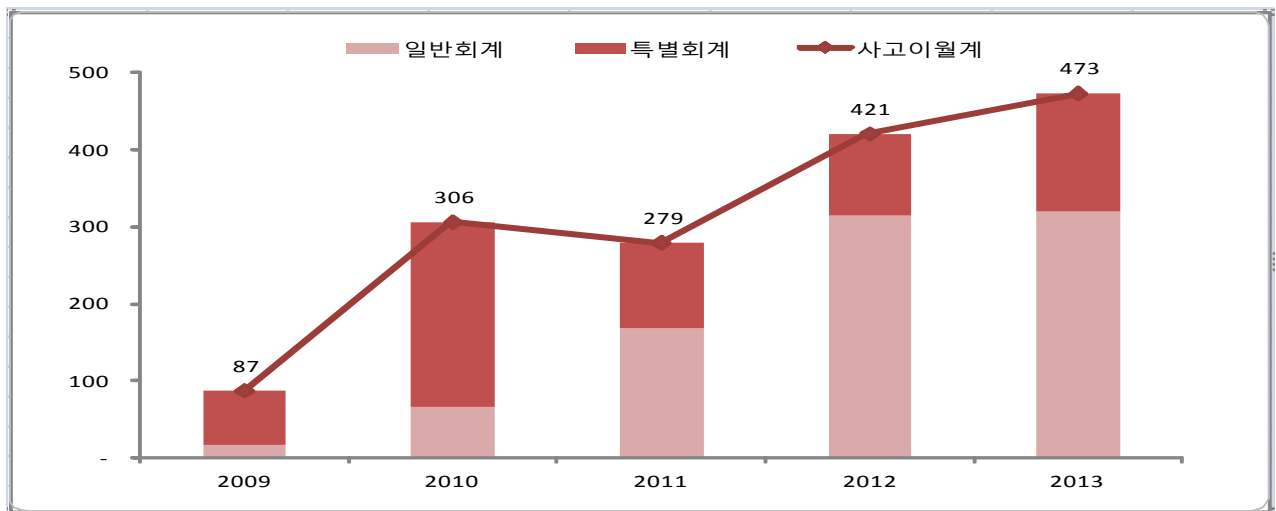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나) 사고이월

-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sup>27)</sup>에 근거하여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 2013회계연도의 사고이월 규모는 지난 2012회계연도의 421억원 보다 12.4%인 52억원이 증가한 473억원을 이월했으며, 2009회계연도의 87억원보다는 무려 5.5배에 이르고 있어 연평균 증가율도 52.8%로 매우 큰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연도별 사고이월액 추이 >

(단위 : 억원)



27)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특히 특별회계의 사고이월 규모는 153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도 21.8%인 반면, 일반회계는 320억원 규모이고 연평균 증가율은 108.2%에 달하고 있어 매년 배가 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시의 재정부담 해소차원에서 민자터널관련 불리한 계약조건을 변경을 위해 추진한 사업재구조화 지원으로 재정지원금 209억원이 사고이월 되는 등 부득이한 측면도 있으나 앞서 살펴본 명시이월 사유와 유사하게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동절기 공사중지, 준공시기 미도래,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 사업별 사고이월 사유를 충분히 검토하여 사고이월이 반복되는 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 2013회계연도 사고이월 사업 현황 >

###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사고이월 액	이월사유
계		55,244,172	18,235,341	32,000,983	
교통기획과	교통안전 도로시설물 확충	3,063,000	2,271,005	288,964	동절기 공사중지
"	역전광장 정비사업	960,000	209,929	519,589	동암역 광장 정비사업 시설비
버스정책과	시내버스 운송관리 자원시스템 운영	43,860	33,885	9,975	용역준공시기 미도래
"	버스정보관리센터(BIS/BMS) 운영	33,000	13,987	13,987	용역준공시기 미도래
도 로 과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사업	7,146,772	860,086	2,783,296	보상지연 및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이월
"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 사업	4,073,018	3,094,322	360,016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준공금 이월
"	민자터널운영 재정 지원	20,914,000		20,914,000	원적산, 민월산 터널 사업재구조화 지연에 따른 이월
체육진흥과	기본체육시설 건립	1,993,000	1,075,351	833,096	동절기 공사중단('13.10~'14.3)
자원순환과	송도자원환경센터 운영	113,332	28,333	84,999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용역 기간 연장
"	청리자원환경센터 운영	114,309	28,577	85,732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용역 기간 연장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연구 용역	157,938	78,960	78,977	대체매립지 추가 검토 등으로 용역기간 연장
공원녹지과	문학공원 조성	1,145,103	943,345	201,757	보상지연
"	계양산림 휴양공원 조성	350,000	153,868	153,875	용역기간 미도래
항만공항시설과	인천항 주변개선 사업	196,550		164,144	관계기관 이견으로 용역중지(준공지연)
소방행정과	소방장비 보강	1,978,365	1,512,982	464,338	구조버스 차체공급지연에 따른 제작기간 부족
대응구조구급과	119구조장비 확충	3,007,900	2,654,870	220,971	국고보조사업 예산배정 유보액 배정
119특수구조단	헬기 유지관리	490,747	370,435	27,540	계약상대사의 정밀분해 재생검사 및 납품 지연
종합건설부	교량 보수보강 공사	9,463,280	4,455,407	4,795,670	동절기 공사중지로 공사기간 연장

### □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계명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사고이월 액	비고
계			32,424,731	26,646,018	394,919	
도시교통사업	교통기획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3,357,174	3,010,035	204,804	
"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776,724	1,309,993	135,631	
"	"	공영노외주차장 건설	1,320,530	91,747	30,030	
도시철도사업	도시철도건설부	서울지하철7호선 인천지역 연장건설	25,970,303	22,234,243	24,454	

□ 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계명	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다음연도 사고이월 액	이월사유
계		27,257,015	10,619,675	14,916,966	
상수도사업	회계감사 용역 수수료	40,000	16,625	16,720	지급시기 미도래
"	수용가정보 및 민원처리시스템 유지보수	416,311	363,287	39,396	지급시기 미도래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3,644,000	2,591,317	1,052,668	준공시기 미도래
"	도로사업관련 배수관정비공사	936,320	776,206	131,500	준공시기 미도래
"	교통연육교 배수관 부설공사	3,800,000	3,016,923	782,806	준공시기 미도래
하수도사업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1,051,840	567,778	483,662	환경부 승인절차 이행중으로 용역공사시 집행예정
"	관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270,000	179,295	66,312	
"	가좌 하수처리장 악취 개선사업	630,000	135,641	316,516	준공시기 미도래
"	굴포천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부담금	5,076,000	688,249	4,387,751	사도장 선정지연 공사준공 기한연기('14.1→'14.4)
경제자유구역사	ifz경관시스템 구축	500,000		470,850	준공시기 미도래
"	송도 국제도시 지능형 교통체계(ITS) 확대구축	100,000		73,213	집행시기 미도래
"	송도국제도시 버스승강대 설치	94,160		80,223	집행시기 미도래
"	자전거이용 시설 보완사업	100,000	77,624	19,274	집행시기 미도래
"	투자유치 브로셔 제작비	65,000	8,300	52,247	집행시기 미도래
"	경제자유구역 특례사무 환원방안 연구용역	17,080		17,080	준공시기 미도래
"	송도지구 원터프린트 기본계획 및 개발 계획(변경) 수립 용역	1,800,000	732,556	757,069	준공시기 미도래
"	GCF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2,209,200	781,833	575,397	집행시기 미도래
"	제24호 근린공원 D지구 조성공사	3,910,000	205,078	3,608,584	군부대, 향민청협의 지연 공기 부족
"	송도센트럴공원 보행교 설치공사	961,227		958,933	집행시기 미도래
"	송도6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공사 기본계획 수립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100,000		94,963	집행시기 미도래
"	을왕간이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206,187	155,684	26,432	집행시기 미도래
"	용유무의지역 개발방안 수립용역	806,851	262,158	443,652	준공시기 미도래
"	남측~북측 유수지간 도로개설 토지보상비	522,839	61,121	461,718	집행시기 미도래

○ 명시이월과 마찬가지로 일부 사업의 경우 2012회계연도에 이어 2013회계연도에도 사고이월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하여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매년 동일한 사유로 인해 반복적으로 사고이월되는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 사고이월 반복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회계구분	부서명	사업명	회계연도	예산(천)액	지출액	다음연도 사고이월액	이월사유
계		5건		28,280,246	18,683,158	6,944,335	
일반회계	종합건설본부	교량 보수보강 공사	2012	6,068,208	4,646,076	1,404,980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2013	9,463,280	4,455,407	4,795,670	동절기 공사중지로 공사기간 연장
도시교통사업	교통기획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012	3,677,951	3,557,598	32,174	동절기 공사 중지
			2013	3,357,174	3,010,035	204,804	
	"	교통사고 잦는 곳 개선	2012	1,940,250	1,243,631	267,724	사업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
			2013	1,776,724	1,309,993	135,631	
	"	공영노외주차장 건설	2012	326,000	105,405	20,530	주민설명회 추가개최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
			2013	1,320,530	91,747	30,030	
경제자유구역사업	경자구역청	을왕간이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2012	143,942	107,582	26,360	준공시기 미도래
			2013	206,187	155,684	26,432	집행시기 미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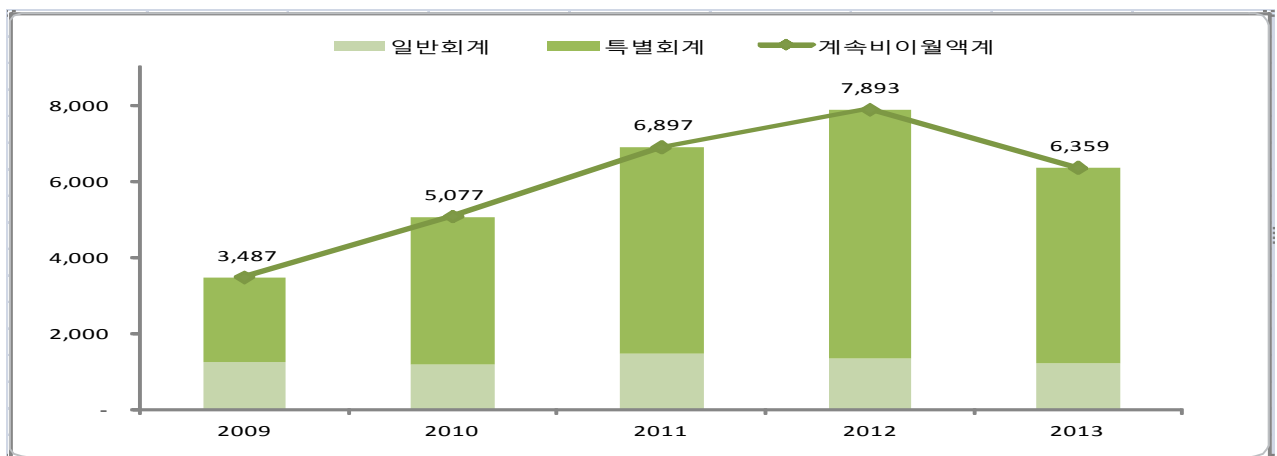


## 다) 계속비이월

- 계속비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3항<sup>28)</sup>에 근거하여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으로 연간부담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 계속비이월 규모는 지난 2012회계연도의 7,893억원보다 다소 큰 폭인 19.4%, 1,533억원이 감소한 6,359억원을 이월했으나, 2009회계연도부터 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16.2%로 다소 큰폭의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지난 2012회계연도와 비교할 경우 일반회계는 1,347억원에서 1,208억원으로 10.3%인 139억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도 2012회계연도에 6,546억원에서 2013회계연도에 5,151억원으로 21.3%인 1,394억원이 감소하여 계속비 이월규모는 다소 안정화되었다고 볼수 있을 것임

< 연도별 계속비이월액 추이 >

(단위 : 억원)



28)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9. 예비비 지출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 「지방자치법<sup>29)</sup>」 및 「지방재정법<sup>30)</sup>」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sup>31)</sup>에서는 예비비로 일반회계의 당초 예산규모(지방교육세는 제외)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연도별 예비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2회계연도보다는 건수는 13건에서 20건으로 증가했지만 집행액은 161억원에서 156억원으로 3.3%인 5억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 2009회계연도부터 연도별 증감현황을 보면 연평균 증가율이 18.0%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특별회계는 △24.2%로 감소하는 반면 일반회계는 33.0%로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29)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0)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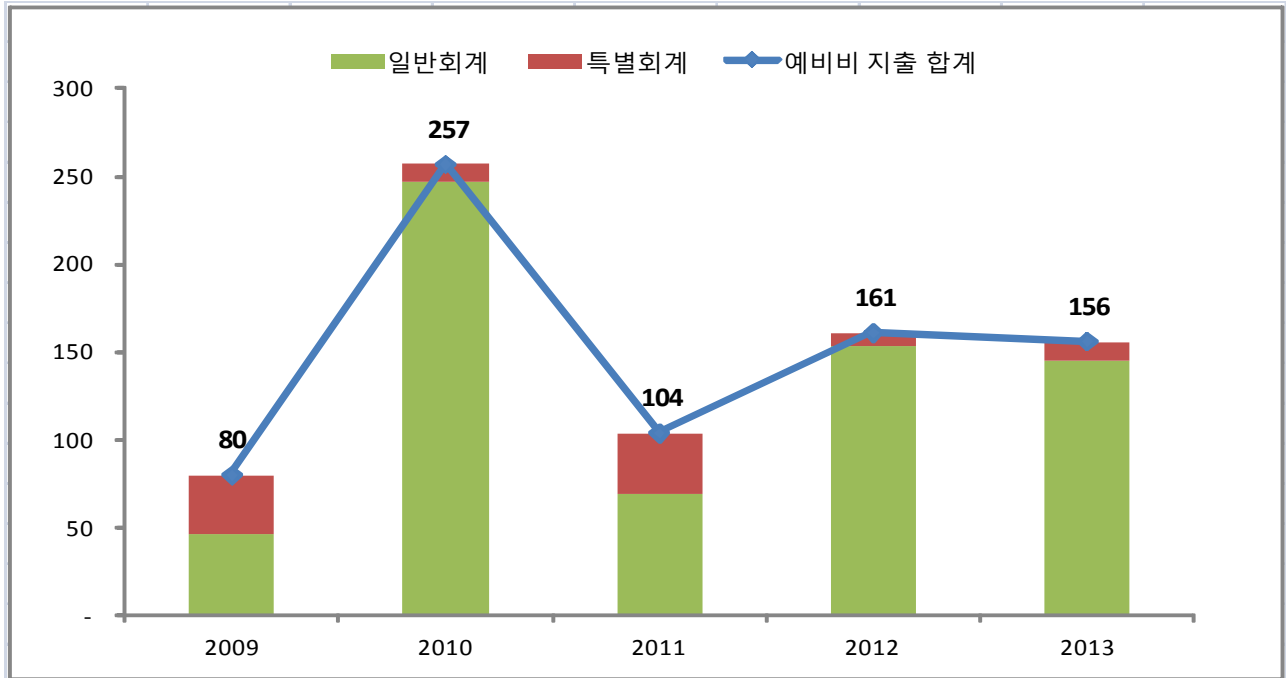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3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예비비)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당초 예산규모(지방교육세와 특별시분재산세 세입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 연도별 예비비 지출 추이 >

(단위 : 억원)



### < 연도별 예비비 지출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평균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계	건수	34.6	43	46	51	13	20	△17.4
	금액	15,178	8,046	25,715	10,371	16,149	15,610	18.0
일반회계	건수	24.0	27	37	35	10	11	△20.1
	금액	13,187	4,624	24,666	6,853	15,313	14,480	33.0
특별회계	건수	11.2	19	9	16	3	9	△17.0
	금액	1,991	3,422	1,049	3,518	836	1,130	△24.2

※ 2010회계연도의 경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이 갑자기 증가한 사유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안행부 지역상생 기금 출연금 납부 64억원, 연평도 폭탄투하 피해 긴급소요 15억원, 구제역 긴급방역 20억원 및 준공영제 확대운영 68억원 등 긴급한 사유 발생으로 일시적으로 증가

- 예비비는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원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지출토록 규정하고 있고 안전행정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예비비의 지출제한은 그 성격이나 제도설치의 취지라는 측면에서의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의 제약으로 구분하여 예비비에 대한 지출한계를 명시하고 있음
- 소송에 따른 판결이나 손해배상 발생 등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비용이 대부분이라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차입금 원리금 상환, 세금 누락분 납부, 보험 가입 등 당초 예산편성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였음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적게 편성하여 예비비를 사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별로 예비비 지출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예비비의 지출제한 >

<b>내재적 제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li> <li>②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li> <li>③ 다음 연도로의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됨</li> </ul>
<b>실정법상 제약</b> (지방재정법 시행령 48조32)	<p>업무추진비·보조금 등이 그 예로써 이들에 대해서도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음. 단,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는 집행이 가능</p>

3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  
 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

## 〈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부사업 현황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통계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집행잔액	처리일자		예비비 지출 사유
						지출결정	지출일	
계	총 11건		14,494	14,480	14			
정책기획관실	시정 추진방향 설정 및 계획수립	배상금등	3	3	-	7.12	7.24	손해배상 대위변제금 지급
세정과	세외수입 현실화 추진	가타 차입금이자상환	6,492	6,492	-	7.12	7.29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세정과	세정운영 지원 강화	배상금등	39	25	14	10.14	10.16	소송패소에 따른 자연이자 지급
회계과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공공운영비	653	653	-	1.25	1.25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분 납부
보육정책과	차입금 원금상환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	3,750	3,750	-	6.27	6.28	보육사업 공차기금 원리금 상환
"	차입금 이자상환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84	84	-	6.27	6.28	보육사업 공차기금 원리금 상환
교통기획과	백운역광장 조성 사업	시설비	1,177	1,177	-	8.8	8.12	소송패소에 따른 보상금 지출
주거환경정책관	동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배상금등	1	1	-	1.8	1.18	교통사고 구상금 지급
"	동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배상금등	9	9	-	5.23	6.3	손해배상 대위변제금 지출
하수과	침수해소사업(군구 관거 신증설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1,500	1,500	-	3.19	4.3	재난대비 서운동 우수암거 설치
119특수구조단	헬기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807	807	-	2.12	2.28	소방헬기 도입에 따른 보험 가입

※ 2013회계연도 결산서 836쪽 참조

## 〈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부사업 현황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계명	사업명	통계목	지출 결정액	지출 액	집행 잔액	처리일자		예비비 지출 사유
						지출결 정	지출일	
계	총 9건		1,214	1,130	84			
의료급여 기금	의료급여비용 예탁	배상금등	6	6	-	11.14	11.14	소송에 따른 판결 금 및 이자지급
아시 아 경기대회	대회재정 확보 및 관 리	사무관리비	214	146	68	1.15	1.17	지방채 발행에 따 른 수수료 지출
경제자유 구역사업	NSIC 1공구 토지 채 매입비	자산취득비 등	83	67	16	1.30	1.31	합의 지연으로 매 매대금 증가
"	갯벌타워 홍보관 화 재사고 손해배상 청 구	보전금	765	765	-	7.18	7.18	배상금 지급
"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따른 화해 판결금	배상금등	30	30	-	3.21	3.22	화해권고 결정금액
"	채무 부존재확인 소 송에 따른 판결금	배상금등	60	60	-	1.16	1.17	판결확정에 따른 판결금 지급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판결금	배상금등	43	43	-	6.25	6.27	판결확정에 따른 판결금 지급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판결금	배상금등	7	7	-	12.27	12.27	화해권고 판결금 지급
"	구상금소송에 따른 판결금	배상금등	6	6	-	12.27	12.27	판결확정에 따른 판결금 지급

## 다. 기금결산

### 1. 기금결산 총괄

-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조례」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과 필요에 따라 공공목적 사업에 용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하여 현재 총 14개 기금이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sup>33)</sup>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금은 특정한 사업 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하여 운용하는 제도로
- 인천시의 기금은 2013회계연도에 총 14개 기금이 운용되었으며 2012회계연도말 조성액 3,645억원중 2013회계연도중 조성액 1,136억원에서 사용액 537억원을 뺀 당해연도 증감액 600억원이 증가되어 2013회계연도말에는 총 4,244억원이 조성됨

3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연도별 기금 조성 규모를 살펴보면 2009회계연도 말에는 2,743억원에서 2013회계연도말에는 4,244억원으로 규모면에서 54.7%인 1,501억원이 증가되었고 연평균 증가율도 11.5%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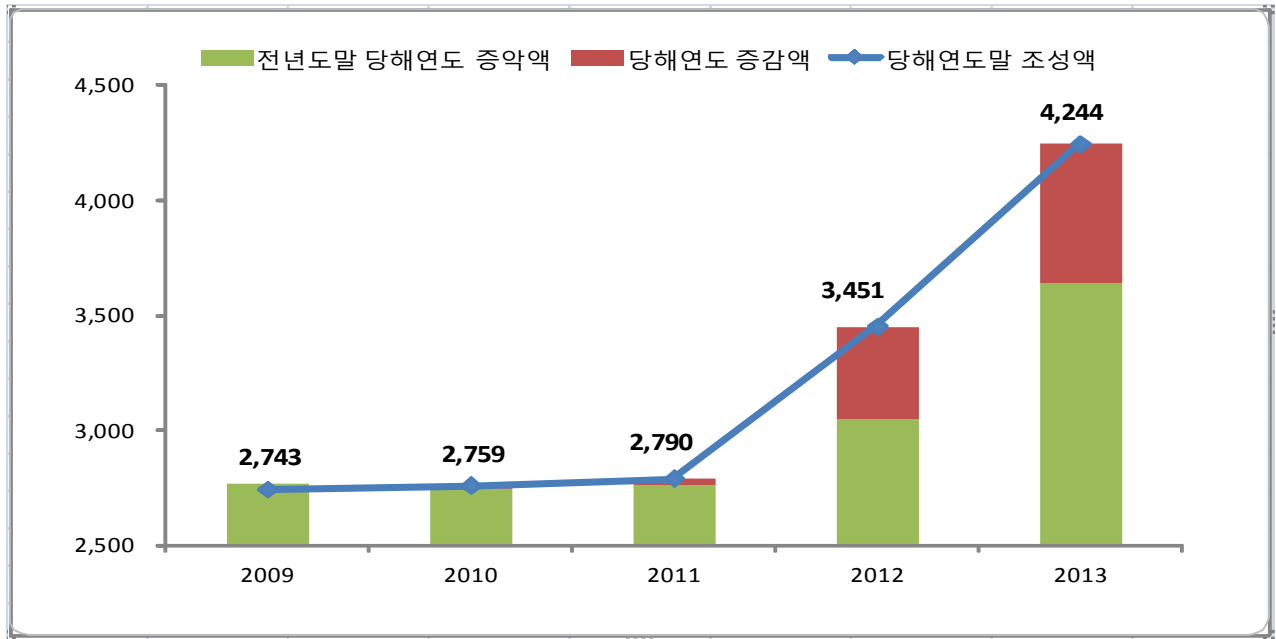
회계연도	평균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감율
전년도말 조성액	299,249	276,818	274,333	275,860	304,776	364,458	7.1
조성액	121,036	125,250	127,413	163,984	74,911	113,622	△2.4
사용액	100,540	127,735	125,886	160,860	34,570	53,651	△19.5
당해연도말 조성액	319,744	274,333	275,860	278,984	345,116	424,428	11.5

- 이는 기금 조성액은 2009회계연도에 1,253억원에서 2013회계연도에는 1,136억원으로 연평균 △2.4% 감소한 반면, 사용액은 2009회계연도에 1,277억원에서 537억원으로 절반이상 감소하였고 연평균 증가율도 △19.5%로 큰폭의 감소를 보여 연도말 조성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 이는 기금이 매년 일정액씩 적립만 되고 활용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어 현재 설치·운용되고 있는 기금들이 설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이 활용되지 못하고 적립만 되는 것은 아닌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여 활용할 필요가 없는지,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다만 폐지·통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등 기금 전반에 대한 심사 및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연도별 기금조성 추이 >

(단위 : 억원)



○ 연도별 기금현황중 2011회계연도말 조성액은 2,790억원인 반면, 2012회계년도 결산중 전년도말 조성액은 3,048억원으로 서로 258억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2012회계연도말 조성액은 3,451억원인 반면, 2013회계연도 결산중 전년도말 조성액은 3,645억원으로 193억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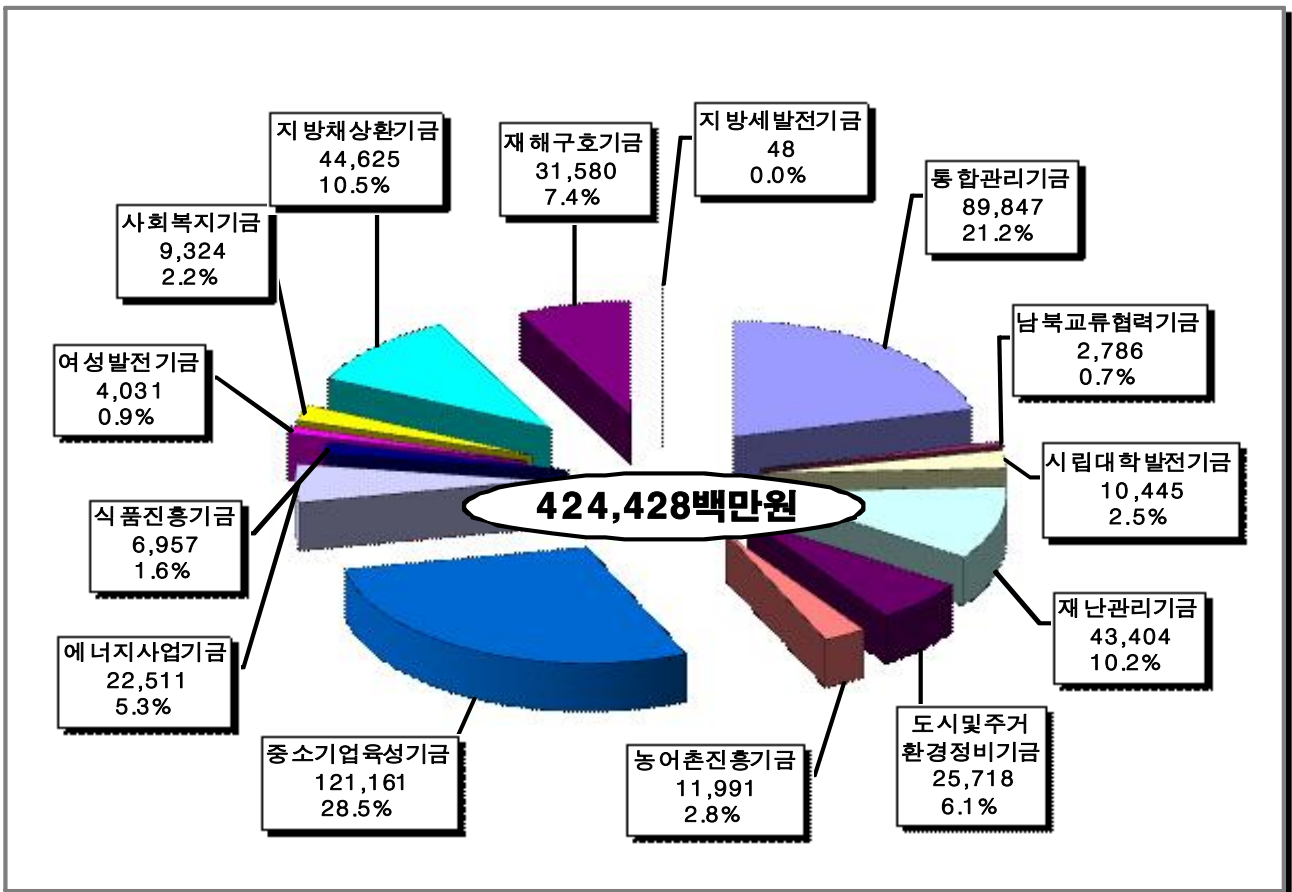
－ 이는 조성액중 일반회계와 기금간 내부거래로 수입·지출되는 예탁금 및 예수금은 당해연도 증감액에서 제외하여 작성하고 있어 당해연도 조성액과 사용액에서 일부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 지나, 이로 인해 매 회계연도 결산시마다 전년도말 조성액과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정확한 년도말 조성액 파악이 불가할 수 있어 기금운용의 왜곡이나 불확실성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2. 조성 규모 현황

- 2013연도말 기금 조성규모는 2012연도말 조성액 3,645억원 보다 16.5% 증가한 4,244억원 규모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통합관리기금 21.2%, 지방채상환기금 10.5%, 재난관리기금 10.2% 순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전년대비 85.6%로 큰폭의 증가를 보 인 반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2.1% 감소되는 등 기금별로 증감 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2013회계연도말 기금별 조성규모 >

(단위 : 백만원)



< 기금별 조성 세부명세 현황(당해연도말 현재액) >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2012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2013말 조성액	전년대비 증가율
			조성액	사용액	계		
계	14개	364,458	113,622	53,651	59,970	424,428	16.5
통합관리기금	2000	78,631	28,210	16,994	11,215	89,847	14.3
남북교류협력기금	2004	3,578	134	926	△792	2,786	△22.1
시립대학발전기금	1995	10,190	255		255	10,445	2.5
재난관리기금	1998	45,998	1,466	4,059	△2,593	43,404	△5.6
도시및주거환경 정비기금	1994	13,858	19,842	7,983	11,860	25,718	85.6
농어촌진흥기금	1998	11,135	1,363	506	856	11,991	7.7
중소기업육성기금	1993	83,258	52,660	14,757	37,903	121,161	45.5
에너지사업기금	1992	21,723	4,722	3,934	788	22,511	3.6
식품진흥기금	1989	6,872	1,635	1,550	85	6,957	1.2
여성발전기금	1997	4,017	98	84	14	4,031	0.3
사회복지기금	1994	9,403	388	468	△80	9,324	△0.8
지방채상환기금	1999	44,909	1,726	2,010	△284	44,625	△0.6
재해구호기금	2006	30,859	774	52	722	31,580	2.3
지방세발전기금	2011	26	350	327	23	48	84.6

### 3. 기금별 운용 현황

#### 가) 통합관리기금

- 근거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시에서 관리하는 개별기금중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공공목적사업에 용자

- 기금구성 세부명세

(단위 : 백만원)

설치 년도	재원조달	구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해연도 말구성액
		전년도 까지	당해 연도	계	사유	금액	
2000	관리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78,631	28,210	106,841	예수금원리금 상환	16,994	89,847

- 개별 기금들의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공공목적사업에 용자코자 설치된 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이 786억원에서 2013회계연도말에는 898억원으로 전년대비 14.3%, 112억원이 증가하고 있어

- 기금의 설치목적인 여유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부채증가로 인한 지방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회계 사업들로의 적극적인 용자로 시민들을 위해 추진코자 하는 공공목적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금활용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나) 남북교류협력기금

- 근거법규 :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 설치목적 :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 지원
- 기금조성 세부명세

(단위 : 백만원)

설치 년도	재원조달	조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해연도 말조성액
		전년도 까지	당해 연도	계	사유	금액	
2004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등	3,578	134	3,712	남북교류 협력 사업	926	2,786

- 기금의 용도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기금의 성격상 남북관계 등 국내외 상황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운 측면도 있으나
- 2013회계연도의 예산현액 2,825백만원중 지출은 926백만원으로 집행율이 32.8%에 불과하고 또한 집행내역을 보면 각종 포럼, 아카데미, 심포지엄, 기념식 등 행사나 책자발간 등이 대부분으로 직접적인 남북교류나 협력보다는 민간단체들에 대한 경상비 보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 금년에 개최되는 아시아경기대회의 대규모 북한선수단 참가 등을 계기로 좀 더 실질적인 협력사업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류방안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 시립대학발전기금

- 근거법규 : 인천광역시 시립대학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시립인천대학교의 발전에 기여
- 기금조성 세부명세

(단위 : 백만원)

설치 년도	재원조달	조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해연도 말조성액
		전년도 까지	당해 연도	계	사유	금액	
1995	시립대학 출연금, 기금의 운 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시 립대학 기본재산 관련 수익금	10,190	255	10,445	집행사유 미발생	-	10,445

- 지난 2013.1.18일 시행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립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금의 설치목적이었던 시립대학이 없어져 시립대학발전기금은 관련규정<sup>34)</sup>에 따라 통합하거나 폐지해야 함에도 1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어
- 조속한 시일내 관련 조례의 폐지 또는 개정절차를 이행하여 기금 폐지 시기 및 조성액 활용방안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3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도니 기금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라) 재난관리기금

- 근거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재난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응급복구

- 기금조성 세부명세

(단위 : 백만원)

설치 년도	재원조달	조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해연도 말조성액
		전년도 까지	당해 연도	계	사유	금액	
1998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 입금	45,998	1,465	47,463	재난예방 사업	4,059	43,404

- 재난, 재해의 예방, 응급조치 및 복구사업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당행연도 사용액 41억원중 절반에 가까운 20억원은 군구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21억원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사용되었는 바,
- 군구에 지원된 보조금의 경우는 전액 경상비로 보조되어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지원후 정산 등 집행결과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시에서 직접 추진한 사업의 경우 일반회계 사업과 구분되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 근거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2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4조의 2
- 설치목적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
- 기금조성 세부명세

(단위 : 백만원)

설치 년도	재원조달	조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해연도 말조성액
		전년도 까지	당해 연도	계	사유	금액	
199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	13,858	19,842	33,700	정비 계획 수립, 정비사업 지원	7,983	25,718

- 2013회계연도에 지출액 80억원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76억원이 전년도 이월액이고 이중 73억원이 팽이부리마을 임대주택건설사업 공사 준공비용으로 사용되고
-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조성된 257억원이 사용처 없어 적립만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조성된 기금의 향후 활용 계획 및 원도심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바) 농어촌진흥기금

- 근거법규 : 인천광역시 농어촌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득증대 사업 지원 등 농어촌의 발전을 도모
- 기금조성 세부명세

(단위 : 백만원)

설치 년도	재원조달	조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해연도 말조성액
		전년도 까지	당해 연도	계	사유	금액	
1998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수입, 기타수입금	11,135	1,363	12,498	비용자성 사업비 및 기본경비 지출	506	11,991

- 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나 사용처의 대부분이 해외시찰이나 수련대회 등 행사지원비나 신문구독료 지원 등 경상비 보조에 그치고 있어 농어업인의 경쟁력 제고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 개발이 절실하다고 판단되고,
- 아울러, 당해연도 조성액은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수입 등으로 14억원에 달하는 반면 사용액은 37.1%에 불과한 5억원에 그치고 있고, 전년도말 조성액 111억원과 비교하면 기금 사용율이 4.5%로 매우 저조하다고 할 수 있는 바, 적극적인 지원사업 발굴로 내년부터 쌀시장 전면 개방이 예정되는 등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농어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사) 중소기업육성기금

- 근거법규 :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중소기업 육성 및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기금조성 세부명세

(단위 : 백만원)

설치 년도	재원조달	조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해연도 말조성액
		전년도 까지	당해 연도	계	사유	금액	
1993	기금의 운용으로 생되는 수익금 등	83,258	52,660	135,918	중소기업 융자금 등	14,757	121,161

- 중소기업 육성 및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당해 연도 조성액은 527억원인 반면 사용액은 28.0%에 불과한 148억원에 그치고 있어 전년도말 조성액 833억원보다 379억원이 늘어 2013회계연도말 조성액이 1,212억원에 달하고 있음
- 최근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 또한 지난해 인천의 실업률은 4.4%로 전국 평균 3.6%보다 높고, 10년째 인천의 실업률이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혜택을 받는 관내기업들과 연계해서 실업률 제고 및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 참고 - 2014.7월 현재 고용동향 >

- 전국 평균 : 경제활동 참가율 63.2% / 고용률 61.1% / 실업률 3.4%
- 7대광역시 : 경제활동 참가율 61.9% / 고용률 59.6% / 실업률 3.6%
- 인 천 시 : 경제활동 참가율 65.0% / 고용률 62.1% / 실업률 4.4%

## 아) 에너지사업기금

- 근거법규 :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기후변화 대응관련 사업지원 및 도시가스보급 확대
- 기금구성 세부명세

(단위 : 백만원)

설치 년도	재원조달	구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해연도 말구성액
		전년도 까지	당해 연도	계	사유	금액	
1992	한국가스공사 주주 배당금	21,723	4,722	26,445	용자금 및 고유 목적사업 지출	3,934	22,511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보급 등을 위하여 설치·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 매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자금 용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013회계연도에도 37억원을 민간용자 한 바 있음
- 그러나 지출 내역중 당초 기금운용계획 심사시 지출계획에 없던 ‘에너지절약 교육 및 홍보’ 사업으로 220백만원이 행사 보조금 등 경상비로 사용된 바, 사업의 시급성, 사업추진 배경,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및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 식품진흥기금

- 근거법규 :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식품위생, 국민영양 향상 등 식품산업발전 사업 지원
- 기금조성 세부명세

(단위 : 백만원)

설치 년도	재원조달	조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해연도 말조성액
		전년도 까지	당해 연도	계	사유	금액	
1989	융자 및 기금운 용 수입금 등 과징금 수입	6,872	1,635	8,507	음식문화개선 사업지원, 식품안전 관리지원, 식품업소 용자지원 등	1,550	6,957

- 식품위생 및 국민영향의 수준향상을 위해 1989년부터 조성된 기금인 식품진흥기금은 그동안 모범음식점이나 외국인 이용 음식점의 활성화,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음
- 최근에 한류열풍에 힘입어 중국 관광객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바,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음식도 하나의 관광 콘텐츠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만큼 중구의 짜장면·닭강정, 동구의 냉면, 남구의 물텀병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인천만의 맛을 개발할 수 있게 다양한 기금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차) 여성발전기금

- 근거법규 : 여성발전기본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인천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 설치목적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한부모 가족과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 등 지원

- 기금조성 세부명세

(단위 : 백만원)

설치 년도	재원조달	조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해연도 말조성액
		전년도 까지	당해 연도	계	사유	금액	
1997	일반회계의 전입금, 관리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4,017	98	4,116	여성발전공모사업,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84	4,031

-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모·부자가정과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등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 2013년도에 추진한 사업이 여성발전 공모사업 지원 54백만원, 한부모가족 질병 치료비 지원 10백만원, 한부모가족 대학 입학금 지원 20백만원 등 연간 84백만원만 활용하고 남은 조성액 4,031백만원은 전액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 최근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출산율 하락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여성들의 사회 참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 개발하여 기금운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카) 사회복지기금

- 근거법규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사회복지사업 및 기초생활 보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 기금구성 세부명세

(단위 : 백만원)

설치 년도	재원조달	구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해연도 말조성액
		전년도 까지	당해 연도	계	사유	금액	
1994	관리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9,403	388	9,791	고유목적사업 추진	468	9,324

-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및 기초생활 보장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금으로
- 2013년도에 추진한 사업이 사회복지 분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200백만원과 홍보책자 제작 4백만원, 노인복지분야에는 대한노인회 시연합회 사업 지원 60백만원, 기초생활보장 분야로는 자활기업 전세점포 용자금 100백만원과 행복키움통장사업 보조금 104백만원 등 468백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남
- 조성된 기금을 활용함에 있어서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로 보여지고 또한 장학사업의 경우 우수 인재육성과 장학금 지원사업을 위해 설립한 (재)인천인재육성재단<sup>35)</sup> 등 관련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학금과 유사하거나 중복될 우려가 있어
- 사회복지기금만의 특성화된 사업발굴이나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5)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지원 시 출연금

- 2013년도 : 700백만원      - 2014년도 : 500백만원

## 타) 지방채상환기금

- 근거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인천광역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지방채원리금의 안정적 상환재원 확보

- 기금구성 세부명세

(단위 : 백만원)

설치 년도	재원조달	구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해연도 말조성액
		전년도 까지	당해 연도	계	사유	금액	
1999	기금운용으로 받 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44,909	1,726	46,635	고금리 지방채 차환 을 위한 이자 지출	2,010	44,625

- 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 2013회계연도에 사용된 20억원은 고금리인 공공자금운영기금 차입금의 차환을 위한 이자로 지출되는 등 시 재정 부담완화를 위해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 향후에도 부채감소를 위해 고금리 차입금의 차환뿐만 아니라 차입금 전반에 대한 조기상환으로 건전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기금활용이 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파) 재해구호기금

- 근거법규 : 재해구호법 제14조

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재해발생시 응급적인 구호사업 지원

- 기금조성 세부명세

(단위 : 백만원)

설치 년도	재원조달	조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해연도 말조성액
		전년도 까지	당해 연도	계	사유	금액	
2006	일반회계 출 연금 및 이자 수입	30,859	774	31,633	이재민 응급구호, 재해구호몰자 구입등	52	31,580

-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응급적인 구호를 행함으로써 이재민 보호, 재해복구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 매년 기금의 법정적립금을 확보될 수 있도록 「재해구호법」 제15조<sup>36)</sup>에 규정하고 있지만 시 재정 여건의 어려움으로 ‘13년 현재 적립률이 62%로 법정적립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하나
-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 재정을 감안하여 이재민 보호, 재해복구와 사회질서의 유지에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를 활용하기 보다는 300억원이 넘게 적립된 기금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36) 재해구호법 제15조(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

① 재해구호기금의 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하) 지방세발전기금

-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지방세 발전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

- 기금구성 세부명세

(단위 : 백만원)

설치 년도	재원조달	구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해연도 말조성액
		전년도 까지	당해 연도	계	사유	금액	
2011	일반회계전출금	26	350	37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 고유목적사업	327	48

- 지방세연구 기관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홍보,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 2013회계연도에 지출된 327백만원중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sup>37)</sup> 규정에 의거 출연한 268백만원외에 연구용역비 10백만원, 자동차 리스렌트 기업유치 추진관련 행사비 등으로 49백만원이 사용됨
- 지출액의 82.0%로 대부분을 자치하고 있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제외하면 지방세에 대한 연구나 조사 및 교육 등에 대한 목적사업비가 매우 낮은 편인바, 시의 재정악화 및 세수 개선을 위해 기금적립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37)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한다.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라. 채권·채무 결산

### 1. 채권 결산

- 2013회계연도말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조 3,266억원에서 당해연도에 1조 1,483억원이 발생하고 7,850억원이 소멸하여 2013년현재액은 1조 6,899억원으로 큰 폭인 27.4%, 3,633억원 증가하였음
- 특히 특별회계는 34.2%로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기금은 △25.5% 대폭 감소함

#### < 2013회계연도 채권 현재액 현황 >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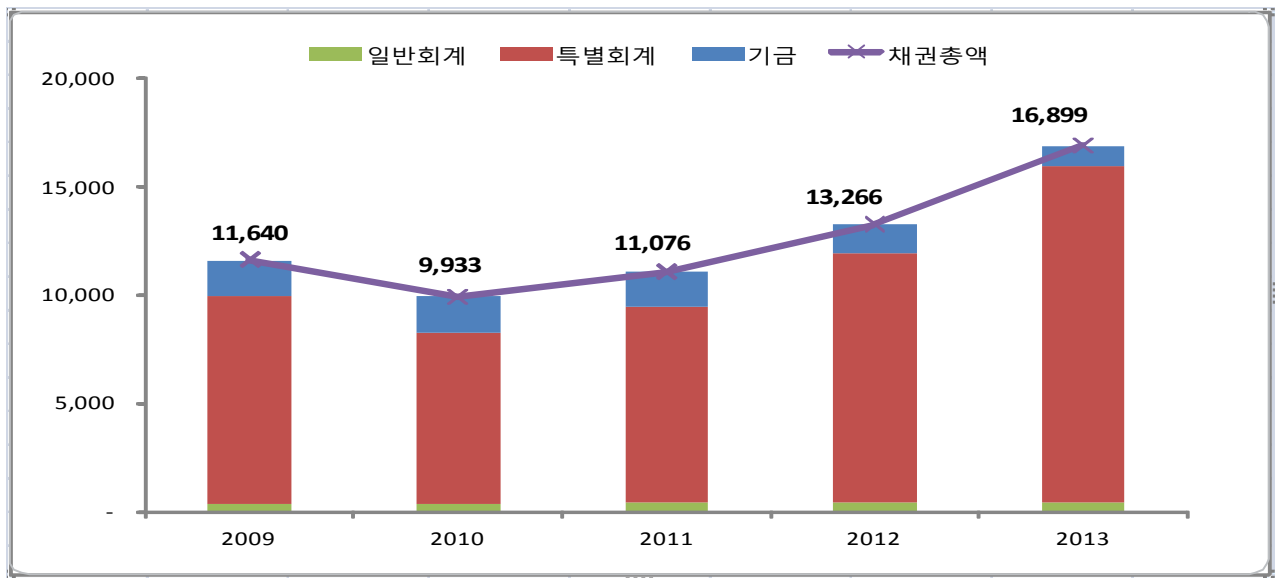
구 분	2012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2013년도말 현재액	증가율
		발생액	소멸액	증감액		
합 계	13,266	11,483	7,850	3,633	16,899	27.4
일반회계	404	28	13	15	418	3.5
특별회계	11,557	11,298	7,347	3,951	15,508	34.2
기 금	1,306	158	490	△332	973	△25.5

- 시의 연도별 채권 현재액을 살펴보면 2009회계연도에는 1조 1,604억원 규모에서 2013회계연도에는 1조 6,899억원으로 연평균 9.9%의 다소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일반회계는 연평균 5.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기금은 오히려 △12.2%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 반면, 특별회계는 12.7%로 큰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시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고 특히 부채 증가로 인한 건전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로서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채권액에 대하여 적극적인 채권 회수 등으로 균형예산을 위한 채권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연도별 채권 현재액 추이 >

(단위 : 억원)



< 연도별 채권 연도말 현재액 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합계	11,604	9,933	11,076	13,266	16,899	9.9
일반회계	342	374	414	404	418	5.1
특별회계	9,626	7,865	9,048	11,557	15,508	12.7
기금	1,637	1,693	1,615	1,306	973	△12.2

## 2. 채무 결산

- 시가 값아야할 채무에 대한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09회계연도에는 2조3,484억원 규모에서 2013회계연도에는 3조 1,587억원으로 연평균 7.7%의 다소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일반회계는 연평균  $\Delta 2.8\%$ 로 다소 감소세를 나타낸 반면, 특별회계는 17.0%로 큰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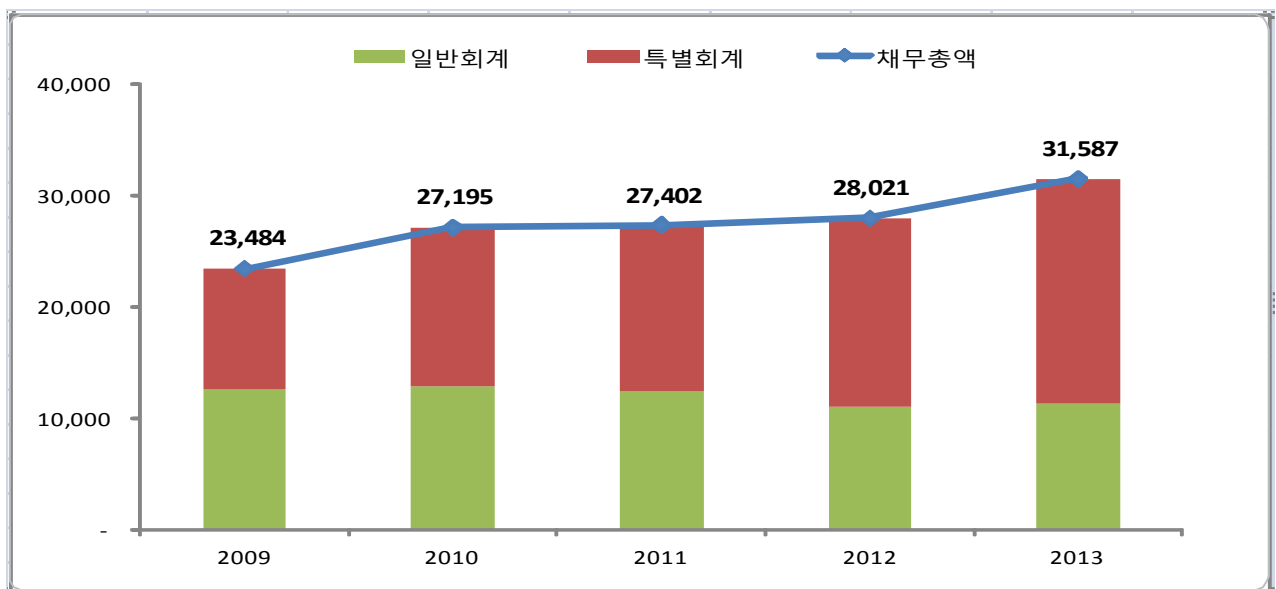
< 연도별 채무 연도말 현재액 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합계	23,484	27,195	27,402	28,021	31,587	7.7
일반회계	12,639	12,872	12,472	11,110	11,296	$\Delta 2.8$
특별회계	10,844	14,323	14,930	16,911	20,291	17.0
기금	-	-	-	-	-	-

< 연도별 채무 현재액 추이 >

(단위 : 억원)



- 2013회계연도말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조 8,021억원에서 당해연도에 1조 3,760억원이 발생하고 1조 193억원이 소멸하여 2013년 현재액은 3조 1,587억원으로 다소 큰 폭인 12.7%, 3,566억원 증가하였음
- 특히, 최근 수년간 특별회계에서의 채무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신설 마무리 및 도시철도2호선 건설공사로 인해 대규모 재정투입으로 인해 부득이한 측면도 있으나 시의 부채규모 증가로 인한 재정운영의 커다란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효율적인 채무관리 및 상환계획 마련으로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 2013회계연도 채무 현재액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12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2013년도말 현재액	증가율
		발생액	소멸액	증감액		
합 계	28,021	13760	10193	3566	31,587	12.7
일반회계	11,110	8728	8542	186	11,296	1.7
특별회계	16,911	5,032	1,651	3,380	20,291	20.0
기 금	-	-	-	-	-	

## 마.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 1. 공유재산 증감 현황

- 2013회계연도말 공유재산은 28조 7,914억원으로 전년도 28조 4,468억원보다 1.2%, 3,446억원 증가하였으며, 행정재산은 △ 1.8% 감소한 반면 일반재산은 10.8% 증가하였음
- 2013년도중 공유재산은 아시안게임 및 도로개설공사 등에 따른 토지 매입 등으로 1조 9,156억원이 증가하였고, 반면 일반재산 매각 및 기초단체 및 국립인천대 양여 등으로 1조 5,711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일정 규모 이상의 공유재산<sup>38)</sup>의 경우 기준가격을 명시하여 의회의 의결<sup>39)</sup>을 받고 취득 또는 처분토록 하고 있는 바, 매년 수조원에 달하는 재산이 매입하고 처분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유재산이 관리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5천제곱미터

3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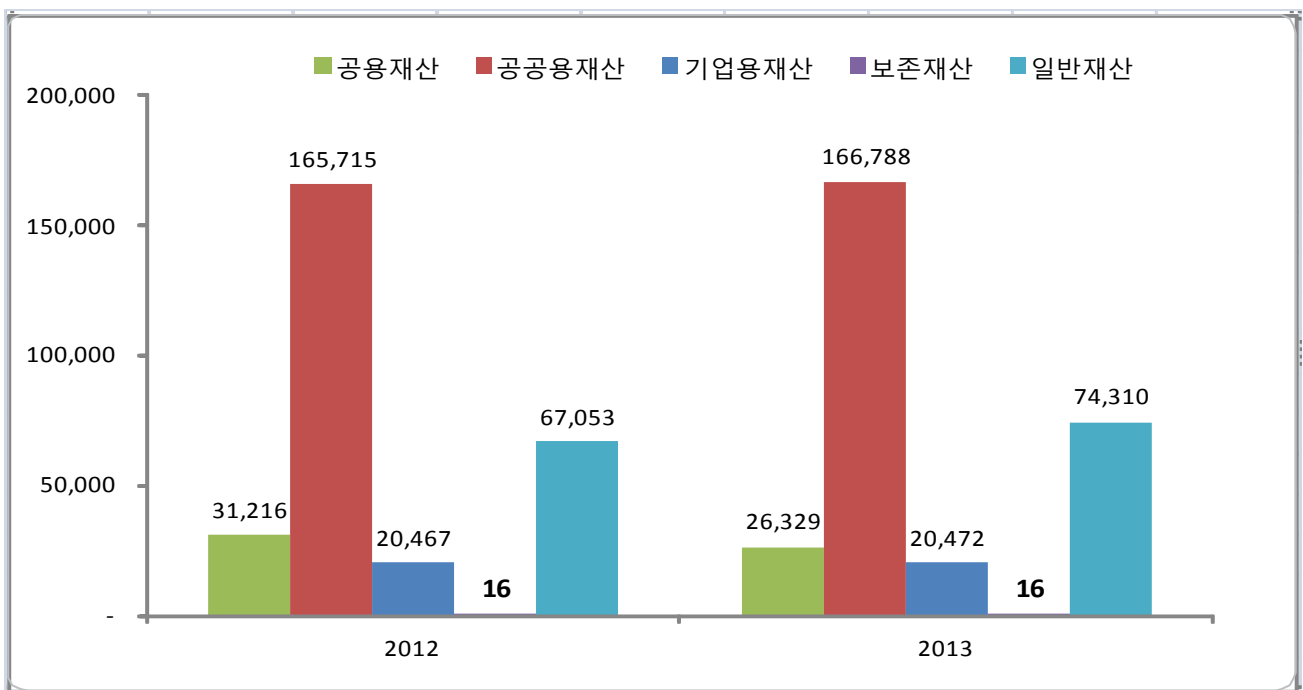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말 현재	2013년도 증감		2013년말 현재	증감율	
		증	감			
합 계	28,446,801	1,915,638	1,571,053	28,791,386	1.2	
행정 재산	소 계	21,741,461	598,530	979,556	21,360,435	△1.8
	공 용 재 산	3,121,648	284,908	773,685	2,632,871	△15.7
	공공용재산	16,571,474	313,060	205,769	16,678,765	0.6
	기업용재산	2,046,705	563	79	2,047,189	0.0
	보 존 재 산	1,634	-	23	1,611	△1.4
일 반 재 산	6,705,340	1,317,108	591,497	7,430,951	10.8	

\* 세입·세출 결산서(1,267~1,269쪽)

< 종류별 공유재산 증감 현황 >

(단위 : 억원)



## 2. 물품 증감 현황

- 2013회계연도말 물품은 5,302개에 495억원 규모로 전년도 5,160개, 487억원 보다 1.7%인 142개, 8억원 증가하였음.
- 차량 등 31개에 달하는 정수관리대상물품의 물품의 취득 및 처분 등 변동사항에 관해서는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어 매년 수십억원의 물품이 구매, 매각, 관리전환, 양여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개별 물품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사용되고 있는지, 필요 이상의 물품을 신규 취득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개,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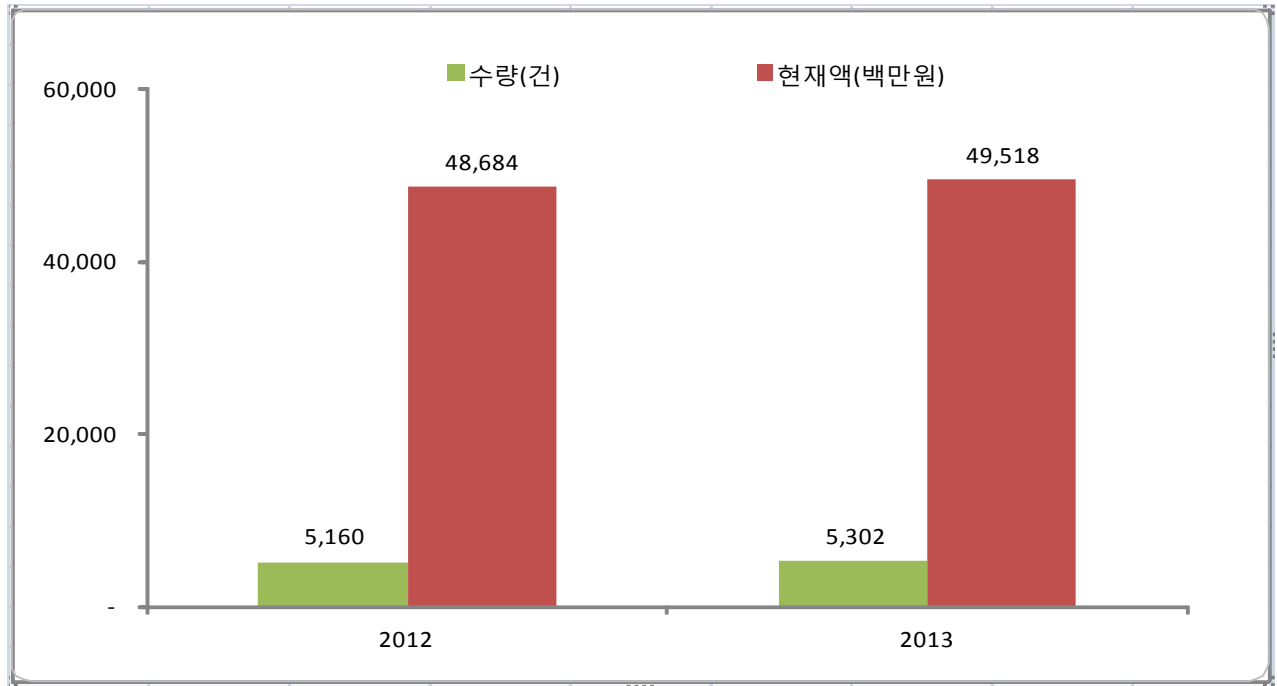
구분	2012년말 현재		2013년도 증감						2013년말 현재	
	수량	금액	증		감		증·감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5,160	48,684	245	2,535	103	1,702	142	833	5,302	49,518
구매/매각			99	1,318	22	629	77	689		
관리 전환, 양여, 기타			146	1,217	81	1,072	65	145		

\* 세입·세출 결산서(1,273~1,277쪽)



< 종류별 공유재산 증감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 가. 중점심사내용

- (주)DCRE관련 체납액은 적극적인 세원발굴로 인해 체납액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지방교부세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및 개선방안 마련 요청
-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금년에 지방채까지 발행할 계획을 세우는 등 재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 적자결산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 구획정리사업지구은 사업이 종료된 것은 아닌지, 향후 절차 및 수년째 적자 결산이 지속되고 있는데 체비지 매각 방법 변경 등 대책마련 촉구
-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은 사업추진상황을 고려해 예산편성이 필요하며 15년도 예산편성시 사업진척도 반영 요망
-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부터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지방세중 주민세의 최초 징수 시점은 언제인지, 그동안 인상이 있었는지 및 현재 주민세 인상 필요성은 없는지
- 출산장려금 지급 근거 및 대상, 금액 등 현황 및 관련 조례를 먼저 개정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바람
- 남북협력기금의 주요 사업, 기금 조성 방법 및 기금 감소 사유는 무엇인지 등
- 지방채중 금융기관채의 금리 수준과 고금리에 대한 차환채 금리 비교 및 부채관리 철저 요망

- MRG(최소운영수익보장)관련 현황 및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문학터널의 진행상황 및 대책은 무엇인지
- 그동안 조성한 자전거도로 현황 및 향후 개설 계획은 무엇인지
- 불용액 발생사업은 연말에 있는 정리추경에서 조정하여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이월사업도 줄이기 바람
- 지방세 미수납액의 증가 사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및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 철저 요망
- 국립대학으로 바뀐 인천대에 시에서 지원하는 재정규모 및 시립 인천대 발전기금의 조성주체는 누구이며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진행 상황 및 명시이월후 사고이월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관리 철저 요망
- 불량식품문제 해결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적극 활용하기 바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인천만의 맛을 알리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주기 바람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의 경우 2013회계연도에는 예산집행이 전혀 없는데 사유와 14년도 계획은 무엇인지
-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추진현황 및 지하화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 민자터널 추정통행량 산정방법과 터널 이용에 따른 이익에 대해 적극 홍보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강구 요망
- 과오납반환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자부담 등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버스 준공영제관련 버스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그 이자를 지원한 사유와 의무적 경비의 예산은 당초예산에 적정하게 편성 바람
- 결산보고 요약서에 결산검사 업체에서 적정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지

## 나. 토론요지

- 찬성 : 황인성, 최석정, 김정현, 김진규, 손철운, 유제홍, 이영훈, 임정빈, 허준 위원
- 반대 : 없음.

## 다. 심사결과 : 원안승인 (재석위원 전원 찬성 : 9명)

- 다음과 같이 시정을 촉구하면서 원안승인 가결하였음.

- 1) 지방세 징수율은 매년 감소(연평균 증가율  $\Delta 1.7$ )하고 있는 반면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연평균 7.3%) 및 다음연도 이월액(22.0%)은 큰 폭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어 시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 2) 지방세와 더불어 시 자주재원의 하나인 세외수입은 시의 세수부족으로 인해 공유재산 매각 등으로 인해 최근 수년사이에 큰 폭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향후에는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시 재정운용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신규 세원 발굴뿐만 아니라 누락되는 세외수입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3) 국고보조금과 달리 재원의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보통교부세의 경우, 인천이 타시도에 비해 지원규모가 낮은 것이 현실인바,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측정단위, 산정방식 등에 대한 개선으로 인천시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기 바람

- 4) 국고보조금은 매년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국고보조금의 미교부 및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바, 국비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바라며, 한편 국고보조사업의 무분별한 유치로 시비 매칭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사전에 사업추진에 따른 실익을 판단하여 국고보조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바람
- 5) 재정수입의 부족을 메우기 위한 발행한 지방채는 그동안 AG준비, 도시철도2호선 등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인해 급격한 증가를 보였으나 향후에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6) 급속한 부채비율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매년 다음연도로 지출을 이월하는 이월액은 지난 2012회계연도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2009 회계연도 이후 연평균 16.0%로 대폭 증가하고 있어,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시 재정악화를 가중시키고 있는바, 이월 규모를 최소화 시킬 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7) 특별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적자가 발생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수년간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득이한 측면도 있으나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수년째 적자발생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바, 적자 해소를 위한 사업방식 재검토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 8) 세출예산은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과 지방의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산집행의 신속성과 효과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예산 이용·전용·이체 제도의 경우 무분별하거나 동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지만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활용도 필요한바, 필요시에는 적극 활용토록 하여 주기 바람

9) 공로나 제조 등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은 계속비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있고 연한은 5년 이내로 하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5년 이상된 계속비 사업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또한 당해연도 예산액보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더 큰 사업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계속비 사업의 적정성 및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계속비 사업 전반에 대한 지속 추진여부를 재검토후 추진하여 주기 바람

10) 결산검사의견서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향후 재발 방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

## **라.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